추가감사

감 사 보 고 서

– 전남도립대학교 추가감사 –

2022. 11.

전라남도
JeollaNamdo
(감사관실)

Ⅰ. 감사실시 개요

○ 감사기간 : 2022. 9. 26.(월) ~ 10. 5.(수)

○ 감사인원 : 9명

○ 감사범위 : 2018. 1월 ~ 2022. 10월

Ⅱ. 감사결과

(단위 : 건/ 백만원)

총계 (가:라)	신분상 처분				행정상 처분											모범사례 (다)	사전컨설팅 (라)
	합계 (가)	징계	경고	주의	합계 (나 =A:E)	시 정						주의 (B)	개선 (C)	통보 (D)	기관경고 (E)		
						계 (A =a+b)	재정상 처분(백만원)										
							소계 (a)	회수	추징	감액	기타	재정상 처분외 시정 (b)					
20	6 (17명)	2 (3)	2 (3)	2 (11)	14	1	- (-)	- (-)	- (-)	- (-)	- (-)	1	6	2	4	1	-	-

Ⅲ. 주요 처분요구

1 학과평가 및 학과구조조정 업무 부당 처리

□ 도립대는 「학과평가규정」, 「학과구조조정규정」에 따라 ’19년부터 ’22. 3월까지 3차례 학과 명칭 및 정원 조정에 대해 교육부의 승인을 받음

< 도립대학교 학과 명칭 및 정원 조정 현황(’19.1월~’22.3월) >

교육부 승인일	승인내용	정원 조정		
		당초(A)	조정(B)	증감(B-A)
’20.04.23.	▸ ’21학년도 명칭 변경 (사회복지교육과→사회복지과 등 5개학과)	705	705	0
’21.03.23.	▸ ’22학년도 명칭 변경 (보건의료정보과→보건의료과) ▸ ’22학년도 정원조정 (보건의료정보과 △5명 등 8개 학과 △60명)	705	645	△60
’22.03.31.	▸ ’23학년도 명칭 변경 (사회복지과→사회복지보육과) ▸ ’23학년도 정원조정 (○○○○과, ○○○○과 등 4개 폐과 등 △195명)	645	450	△195

1. 폐과승인을 받은 학과(○○○○○○○○○과)를 구조조정학과로 부당 편입

○ 「학과구조조정규정」 제3조 등에 학과평가 결과 2개년 연속 하위 3개 학과(B등급 이상 학과 당해연도 유예)등은 평가연도에 구조조정 결정하도록 규정

○ 한편 ‘19. 1. 11. ’18학년도 18개 학과를 평가한 결과* 최하위인 ○○○○○○○○○과는 폐과승인(‘18. 2월 ○○부)을 받았다는 사유로 제외하고 하위 3개 학과로 ○○○○과 등(○○○○과, ○○○○○○과)를 지정하여 학과평가위원회에 상정함

* (’18학년도 평가 최하위 順) ①○○○○○○○○○과 ②○○○○과 ③○○○○과 ④○○○○○○과

- 그런데 도립대(교무기획처)는 ‘10. 0. 00. 학과평가위원회에서 상정 안과 다르게 폐과 승인(‘18. 2월 ○○부)받은 ○○○○○○○○○과 등(○○○○과, ○○○○과)을 하위 3개 학과로지정하면서 ○○○○○○과를 제외하도록 의결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음

- 또한 ‘10. 0월 ○○부로부터 폐과 승인을 받은 ○○○○○○○○○과를 구조조정 학과로 부적정 관리하면서, ○○○○○○과를 구조조정 제외되도록 방치

2. 학과평가에 편제미완성 학과(○○○○과) 부당 평가

○ 「학과평가규정」 제4조 등에 신설학과 또는 편제미완성 학과*는 학과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학과평가 결과는 학과구조조정 등에 적용하도록 규정

* 편제는 학교 수업연한을 의미하며, 전문대학 편제(수업연한)는 2~3년제며 수업연한 변경(2년제→3년제) 등으로 모든 학년 정원이 완성되지 않은 학과임

○ 또한 「학과구조조정규정」 제3조 등에 학과평가 결과 2개년 연속 하위 3개 학과(B등급 이상 학과 당해연도 유예)등은 평가연도에 구조조정 결정하도록 규정

○ '20. 1. 17. '19학년도 ○○(○○○) 부당 지시*로 편제미완성 학과(○○○○과) 등 18개 학과를 평가**하도록 하였고 ○○○○과 등(○○○○○○○○과, ○○○○○○○과)을 하위 3개 학과로 지정하여 ○○ 결재 후 학과평가위원회에 상정함

* '20. 0. 00. 교무위원회 회의 시 ○○○○팀장이 제안설명을 하면서 ○○(○○○) 지시로 공연음악과를 학과평가에 포함하여 평가 결과를 상정하게 됨을 설명, ○○(○○○)도 지시한 사실 인정

** ('19학년도 평가 최하위 順) ①○○○○과 ②○○○○○○○과 ③○○○○○○과 ④○○○○○○과

- 그런데 도립대(교무기획처)는 '20년에 ○○ 지시에 따라 규정을 위반하여 편제미완성 학과(○○○○○과)를 제외하지 않고 평가한 후, ○○○○○과 등(○○○○○○○○○○○○과, ○○○○○○○과)을 하위 3개 학과로 지정하면서 하위 4번째 ○○○○○○○과를 제외하여 학과평가위원회에 부당 상정

- 또한 '20. 0. 00. 학과평가위원회에서는 상정된 안대로 편제미완성 학과인 ○○○○○과 등(○○○○○○○○○○○○○과, ○○○○○○○과)을 하위 3개 학과로 지정하면서, 하위 4번째 ○○○○○과가 제외되도록 의결함

3. 신입생 충원율 70%미만 학과(○○○○○과)에 대한 학과구조조정 부당 처리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 5항에 공립대학 정원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에는 지자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

○ 또한 「학과구조조정규정」 제3조 등에 신입생 충원율 70%미만 학과('18.11.16.개정, 부칙에 '18.11.30.부터 시행) 등은 평가연도에 구조조정 결정하도록 규정

- 그런데 도립대(교무기획처)는 '18. 11. 29. ○○○ 결재를 받으면서 '18학년도 ○○○○○과 신입생 충원율 65%로 '19년 구조조정 학과라는 내용을 누락한 채 구조조정 없이 현행 유지하는 내용으로 보고 후 ○○부에 제출함

○ ‘18. 0. 00. ’18학년도 ○○○○○과 신입생 충원율 70%미만이나 ‘18. 11. 16. 규정 개정되어 ○○○○○과의 폐과유예하는 내용으로 ○○ 결재를 받아 학과평가위원회에 상정함

- 그런데 도립대(교무기획처)는 부칙에 따라 ‘18.11.30.부터 위 규정을 시행해야 하는데도, 규정을 위반하여 ‘18.11.16. 규정 개정되었다는 사유로 ○○○○○과 폐과 유예하는 내용으로 ○○ 결재를 받아 학과평가위원회에 부당 상정함

- 또한 ‘18. 0. 00. 학과평가위원회에서는 상정된 심의 안대로 ’18. 11. 16. 개정된 규정(신입생 충원율 70% 미만)을 ○○○○○과에 소급 적용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한 후, ○○○○○과의 구조조정을 유예시킴

○ 그 결과 ‘19년에 ○○○○○과(40명), ’20년에 ○○○○○○○과(45명), ’21년에 ○○○○○○○과(35명)가 구조조정 대상인데도 적시에 검토되지 못한 채 ’22년에 ○○○○○과, ○○○○○○○과를 폐지승인(○○부)받았고 ○○○○○○○과는 검토조차 되지 않음

- 도립대 신입생 충원율 하락(’19년 95%→’21년 83%)로 낮아져 ○○부의 ‘21년 기본역량 평가에 탈락되어 국비 지원을 못 받음

< 학과평가 및 학과구조조정 부당 처리 현황(’19년~’21년) >

평가연월	도립대의 부적정 평가	정당한 평가	부당 사유
’19. 1.	○○○○○○○○○과 ○○○○○과 ○○○○○과	○○○○○과 ○○○○○과 ○○○○○○○과(B등급)	- 신입생 충원률 70%미만인 ○○○○○과 폐지대상 - ’18년 폐과승인 받은 ○○○○○○○○○과를 구조조정 대상으로 지정 - 하위 3개학과 변경(○○○○○○○과 제외됨)
’20. 1.	○○○○○과 ○○○○○○○○과 ○○○○○○○과(C등급)	○○○○○○○○과(B등급) ○○○○○○○과 ○○○○○○○과(B등급)	- ○○○○○과(편제미완성 학과)를 부당 평가 - 하위 3개학과 변경(○○○○○○○과 제외됨) - ○○○○○○○과 폐지 대상
’21. 2.	○○○○○○○과(C등급) ○○○○○○○○과(B등급) ○○○○○과		- ○○○○○○○과 폐지 대상

☞ ’19학년도 학과평가 규정을 위반하여 편제미완성 학과인 ○○○○**과를 평가에 포함**하도록 **부당 지시**하여 적시에 ○○○○○○○과에 대한 학과구조조정이 검토되지 못하게 한 점과 학과구조조정을 적시에 하지 못하여 신입생 충원율이 하락되어 교육부의 ’21년 기본역량 평가에 탈락한 책임에 대하여 前 ○○(○○○) **“경징계 요구”** 조치

☞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학과평가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 요구”** 조치

※ 前 ○○○○○○장 ○○○는 1, 3, 5, 7번을 통합하여 1건으로 **“경징계 요구”** 조치

2 교원업적 평가 업무처리 부적정

□ 도립대는 ’19년부터 ’22. 2월까지 교원 연구활동 등 전반적인 실적*을 교원업적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승진임용, 재임용 및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이하 “교연비”) 지급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

* 교육활동(37점), 연구활동(24점), 봉사활동(14점), 수범활동(5점), 대학발전(20점), 가·감점(-9점~+5점)

1. 교원의 연구활동 평가 부적정

○ 「교원업적평가규정」 제9조 등에 연구활동 중 논문실적은 논문실적시스템(KRIMS)**에 등록하고, 논문표절검사결과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수탁연구보고서는 6개월 이상 지자체·공공기관으로부터 수탁받은 연구라고 규정

** ○○○○재단에서 운영하는 한국연구자정보 사이트(www.kri.go.kr)로, ○○부의 대학정보공시와 연동

○ 한편 도립대는 ’18년부터 ’22. 2월까지 KRIMS에 논문 194편, 저서 36편으로 총 230편이 등록되어 있음

- 그런데 도립대(교무기획처)는 ‘19년부터 ’22. 2월까지 교원으로 제출받은 연구활동 자료 중에서 KRIMS에 미등록된 논문 12편을 제외하지 않은 채 부적정 평가

- 또한 논문표절검사결과확인서를 미제출한 논문 104편을 임의 평가하였으며, ○○○○부의 ○○○○사업 ○ ○○○○제 사업 등 재정지원사업 30건을 수탁연구보고서로 포함한 채 부적정 평가

- 그로 인하여 규정을 위반한 채 논문실적시스템에 미등록된 논문 등이 연구실적으로 평가되어 연구활동이 과대 평가되는 결과 초래

○ 「교원업적평가규정」 제10조 [별표 3]에 연구활동*** 중 연구실적률 50% 미만은 12점을 부여하되, 논문표절검사 결과확인서 등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실적으로 불인정하도록 규정

*** (연구활동) 100%이상(24점), 75%~100%미만(20점), 50%~75미만(16점), 50%미만(12점)

○ 또한 「교원업적평가규정」 제13조에 평가결과는 교원의 승진임용, 재임용, 정년보장 임용 및 교연비 지급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한다고 규정

○ 그리고 교육부의 「대학회계예산편성지침」 3. 교연비 가이드라인에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최하위 등급을 부여하지 않도록 규정

- 그런데 도립대(교무기획처)는 ’19년부터 ’22. 2월까지 유아교육과 ○○○ 교수 등 13명이 연구활동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아 연구활동 평가에 제외하여야 하는데도, 최하위 등급(연구실적률 50% 미만)인 12점을 부당 부여

- 그로 인하여 교원의 연구활동이 과다 평가되는 결과 초래

2. 교원업적평가위원회 구성 부적정

○ 「교원업적평가규정」 제6조 등에 교원업적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교무기획처장을 포함한 교원 5~11인으로 구성하되, 실적심사대상 교원은 위원으로 선임할 수 없다고 규정

- 그런데 도립대(교무기획처)는 ’19년부터 ’22. 2월까지 4차례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교원 모두가 교원업적 평가대상에 해당되어 교원을 위원으로 선임할 수 없는데도, 매년 약 11명의 교원을 평가위원으로 부적정 선임

- 그로 인하여 교원업적 평가 대상인 교원이 위원으로 선임되어 평가하여 공정성을 저해하는 결과 초래

☞ 교원업적 평가 시 **「교원업적평가규정」**을 **준수**하여 **논문실적**은 **논문실적시스템에 등록**되어 있고 **논문표절검사 결과확인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만 평가하도록 하며,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점수가 부여되지 않게 하는 등 교원업적 평가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 요구”** 조치

☞ **「교원업적평가규정」 제6조를 개정**하여 평가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직원,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교원업적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원업적 평가업무가 공정하게 이루어질수 있도록 **“제도상 개선 요구”** 조치

3 교육부의 2021년 일반재정지원대학 선정에 대한 소극 대응

□ 도립대는 교육부의 '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등에 탈락하여 '22년부터 '24년까지 대학혁신지원사업비 등 국비 최대 000억, 최소 000억원을 지원 못 받음

1. 교육부의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 대한 소극 대응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에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 업무행태로 지자체에 재정상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라고 규정

○ 교육부는 '19. 8. 13. '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계획을 통보하면서 평가대상 기간은 '21년 기준으로 최근 3년간이고 전임교원 확보율 배점 상향('18년 7점→'21년 15점), 신입생·재학생 충원율 비중 확대('18년 8점→'21년 20점) 등을 알리면서 '21. 4월까지 진단 지표*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함

* 정량지표(55점)는 교원확보율(15점), 학생충원율(20점), 졸업생취업률(10점) 등이며, 정성지표(43점)는 교육과정 운영(18점), 산학협력활동(4점) 등으로 총 98점으로 평가

- 그런데 도립대(교무기획처)는 '19. 8. 13.부터 '20. 7. 21.까지 약 11개월 동안 업무를 방치하다가, '20. 7. 22.에서야 평가 대비를 목적으로 자체진단위원회(위원장 ○○○)를 구성 후 위원회를 단 1회도 미개최하는 등 관련 업무 태만

- 이후 '21. 3. 16. 자체진단위원회(위원장 ○○○)를 재구성하였으나, 교원수 및 학생수 조정** 등 정량분야 등 계획을 전혀 수립하지 않는 등 업무를 태만히 함

** 진단에서 탈락 후 '22. 3. 31.에서야 대학 기본역량 평가 중 정량지표에 해당하는 전임교원 배정정원 감원(53명→45명) 및 신입생 정원(705명→645명)을 조정함

- 또한 '21년 ○○도립대 등 6개 도립대의 평균 입학경쟁률은 1:4.2이며, 신입생 충원율은 97.8%인 반면 도립대의 입학경쟁률은 1:2.2, 신입생 충원율은 83%에 불과한데도 입학생·재학생 충원을 위한 특별대책을 마련하지 않음

< '20년~'21년 전국 도립대 입학경쟁률, 신입생충원율 등 현황 >

학 교	'20년				'21년			
	입학정원	**입학** 경쟁률	**신입생** 충원율(%)	**재학생** 충원율(%)	입학정원	**입학** 경쟁률	**신입생** 충원율(%)	**재학생** 충원율(%)
전남도립대	705	3.3	91.8	77.3	705	2.2	83.0	71.4
6개 도립대 평균		6.1	99.9	88.9		4.2	97.8	83.9

- 그 결과 적시에 전임교원 배정정원, 신입생 정원조정을 하지 않아 선정대학 권역평균 00.000점(정량00.000, 정성 00.000) 대비 도립대는 00.000점(정량 00.000, 정성 00.000)으로 정량에서 0.000점을 낮게 받아 탈락됨

- 특히 도립대는 전국 미지원 대학 52개교(285개교 중 233개교 지원) 포함되었고 7개 도립대 중 유일하게 '22년부터 '24년까지 국비 000억원 지원 배제

2. 교육부의 2021년 일반재정지원 대학 추가선정에 대한 소극 대응

○ 교육부는 '22. 1. 27. '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미선정 대학을 대상으로 재정지원 추가 선정계획을 통보하여 '22. 3월까지 평가 자료 제출요구

○ 또한 '18년부터 '21년까지 정량지표(60점)*와 '22년부터 '24년까지 정성지표(40점)**로 평가를 받음

* 정량지표(60점) : 학생충원율(28점), 교원확보율(17점), 졸업생취업률(10점) 등

** 정성지표(40점) : 현장중심의 전공교육과정 혁신(18점), 대학교육 혁신 방향과 전략(12점) 등

- 그런데 도립대(교무기획처)는 '22. 1. 27.부터 3. 7.까지 약 2개월간 업무를 방치하다가 '22. 3. 8.에서야 교육혁신위원회(위원장 ○○○)를 구성 후 약 35일만에 평가 자료를 작성하여 '22. 4. 20. 제출하였으나 탈락

- 특히 평가단으로부터 정성지표 평가자료 준비 미흡이라는 지적 받음

< 일반재정지원 추가 선정 평가단 정성지표 종합의견(요약) >

정성지표(00.000점/40점)	지표평가단 종합의견
대학교육 혁신 방향과 전략 (00.000점 / 12점)	생 략
직업기초 및 교양교육과정 혁신 (0.000점 / 10점)	생 략
현장 중심의 전공교육과정 혁신 (00.000점 / 18점)	생 략

- 그로 인하여 정성지표 평가에 대한 준비 미흡이라는 지적을 받는 등 정성지표 소극 대응으로 인하여 추가 선정에서도 탈락되어 ’22년부터 ‘24년까지 국비 000억원 지원 배제

☞ 교육부의「대학 기본역량 진단」등 재정적인 지원을 받는 평가에서 평가 항목을 세밀히 분석하여 사전에 적극적인 대비가 필요한데도 소홀히 하여 전국 도립대 중 유일하게 국비지원을 받지 못한 ㅇㅇㅇㅇㅇ에 **“기관경고”** 조치

※ ㅇㅇㅇㅇㅇ장 ㅇㅇㅇ는 1, 3, 5, 7번을 통합하여 1건으로 **“경징계 요구”** 조치

※ ㅇㅇㅇㅇㅇ장 ㅇㅇㅇ은 3, 7번을 통합하여 1건으로 **“경징계 요구”** 조치

4 책임시수 미달 교원 징계 및 부당 전보

1. 징계 등 제재 미조치

□ 도립대는 ’00년 0학기 수강신청 학생 미달로 과목이 폐강되어 책임시수*를 미준수한 교수 ○○○(이하 “○○○”)을 ’20. 00. 00. 징계 상정하였으나 부결

* 교수가 1학기 동안 의무적으로 강의하여야 하는 시간으로 도립대는 주 9시간, 1학기 135시간

○ 「책임시수 미준수 전임교원 제재 지침」 제2조에 폐강 등의 사유로 책임시수 미달 교원은 책임시수 보충계획을 수립하여 총장에게 제출하고 다음 학년도까지 미달 시간을 보충하도록 규정

○ 또한 같은 지침 [별표 1]에서 책임시수 미달 시간이 90시간을 초과하는 전임교원에 대해 징계하도록 규정

- 그런데 도립대(교무기획처)는 ’21. 11. 1. ○○○이 책임시수 보충계획을 제출할 당시 제출일보다 먼저 수료한 수료증* 등 3건을 포함한 부당한 계획서를 제출하였는데도 검토 소홀 및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음

* ’21. 5. 13.부터 10. 22.까지 수료한 ○○○○○○○○협의회 주관 인터넷 강의

- 또한 ’00. 00. 00.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책임시수를 미준수한 ○○○에 대한 징계(안)을 상정할 당시, 징계심의 유보 또는 연기하거나 수사와 별개로 징계절차 심의가 가능하다는 설명을 하지 않은 채 ○○○이 학생들을 고소하여 수사 중에 있다는 사유로 이를 부결

※ 행정벌과 형사벌은 별개로 사안으로 징계심의 유보 등 설명 필요

- 그리고 ’21. 11. 1. ○○○이 제출한 책임시수 보충계획에 대하여 ’22. 9. 20. 감사일 현재까지 준수여·부를 미확인한 채 방치

○ 그로 인하여 책임시수를 미준수한 교원에 대하여 수사 중이라는 사유로 실효성 있는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아 교원 자질이 저해되는 결과 초래

2. ○○○○○부로 전보 부적정

□ 도립대는 ’00. 00. 00. 책임시수를 미준수한 ○○○을 ○○○○○과에서 교무기획처 ○○○○○부로 전보함

○ 「학과구조조정규정」 제5조에 총장은 매년 실시하는 학과평가결과에 따라 학과구조조정(폐지)을 확정한 경우 전임교원을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공 유사학과 또는 교무기획처 등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규정

- 그런데 도립대(교무기획처)는 ’21년 ○○○○○과*가 학과 폐지대상에 해당하지도 않는데도, 책임시수를 미준수한 ○○○을 ’21. 11. 18. ○○○○○과에서 교무기획처 ○○○○○부로 부당하게 전보

* ○○○○○과는 '00학년도에 폐과 ('00.03.31. 교육부 승인)

○ 그로 인하여 책임시수를 미준수한 교원에 대해 규정을 위반한 채 ○○○○부로 부적정하게 전보하여 인사상 특혜를 주었고 ○○○○○부 교육의 질을 저하하는 결과 초래

3. 산학협력중점교원 임명 부적정

□ 도립대는 ’22. 2. 25. 책임시수를 미준수하고 ○○○○○부로 부당 전보한 ○○○○을 ’22. 3. 1.부터 ’22. 8. 31.까지 산학협력중점교수로 지정

○ 「산학협력중점교원 운영 규정」 제2조 등에 지정형 산학협력중점교원을 희망하는 전임교원은 매 학년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신청서류를 교무기획처에 제출하도록 규정

○ 또한 같은 규정 제7조에 지정형 산학협력중점교원을 지정할 시에는 산학협력 활동계획의 적정성, 교원 운영의 적정성 등을 참조하도록 규정

○ 그리고 「학칙시행세칙」 제20조에 전임교원의 주당 책임시수는 9시간으로 하고, 산학협력중점교원의 주당 책임시수는 3시간으로 규정

○ 한편 ’21. 11. 1. ’21. 2학기 책임시수를 미준수한 ㅇㅇㅇ으로부터 ’22. 1학기에 주 15시간(총 225시간)의 책임시수 보충계획서를 제출받음

- 그런데 도립대(교무기획처)는 ’22. 1학기 산학협력중점교원 희망 교원은 ’21. 11월까지 신청하여야 하는데도 36일이 도과한 ’22. 1. 6.에서야 신청한 ㅇㅇㅇ을 규정을 위반한 채 산학협력중점교원으로 부당 임명

- 또한 ’22. 3월부터 8월까지 산학협력 활동실적이 전혀 없는데도 산학협력활동 이행 독려 등을 하지 않는 등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음

○ 그로 인하여 책임시수를 미준수한 교원을 책임시수가 적은 보직으로 임명하여 ’22년 0학기 총 000시간의 책임시수를 미충족하여 효율적인 학사관리 저해

< ㅇㅇㅇ의 책임시수 보충 계획 대비 실적현황>

구분	당초 책임시수 보충계획		산학협력중점교원 임명 후 책임시수		미충족 시간 (A-B)
	책임시수	시간(A)	책임시수	시간(B)	
2022년 0학기	15	225	0	00	000시간

☞ 부적절한 책임시수 보충 계획서를 제출하고 규정에서 정한 책임시수를 달성하지 못한 ㅇㅇㅇ을 **“경고”** 조치

5 「교원업적평가규정」 부당 운영 및 제규정 관리 부적정

1.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등급·지급율 등 규정 개정 부적정

□ 도립대는 「규정류 관리 규정」에 따라 제규정 제·개정 등을 운영·관리하고, 「국립대학회계법」에 따라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이하 "교연비") 영역별 지급액 등 관련 사항은 도지사와 협의하여 정하여야 함

○ 「규정류 관리 규정」 제6조 등에 제규정의 제·개정에 대한 입안은 규정별 소관부서에서 작성하고, 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포·시행하도록 규정

○ 「국립대학회계법」 제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등에 도립대는 교연비 지급에 따른 실적 인정방법, 영역별 지급액 등 세부사항을 도지사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규정

○ '18. 11. 29. 도립대학교 구조개편 방안으로 교연비 ①등급을 다등급화(3→5등급), ②등급간 차등 지급율 확대(5%→22%), ③개인별 취업·입시지도 결과를 20% 신설 반영하는 내용으로 ○○○ 결재를 받음

○ '18. 11. 16. 「교원업적평가규정」 제13조의2에 교연비 지급은 5개 등급(S,A,B,C,D)으로 구분하고, 등급별 차는 20%~25% 범위내로 한다고 개정

○ 한편 도립대는 '19. 5. 13. '19년 제2차 교수회에 「교원업적평가규정」 제13조의2 교연비 지급 등급별 차를 (1안)5%범위내로, (2안)2.5%범위내로 하는 2개 안 중에서 변경·심의하도록 ○○ 결재후 상정하고, 2.5%로 의결

- 그런데 도립대(교무기획처)는 '19년 제2차 교수회에서 교연비 지급 등급별 차를 2.5%로 의결한 후 「교원업적평가규정」 개정(안) 입안, 교무위원회 심의, 공포 등 규정 개정에 따른 절차를 미준수한 채 등급별 차를 2.5%로 부당 변경

- 또한 '18. 11. 29. ○○○와 협의된 교연비 등급 지급율 22%를 변경 시 법령에 따라 ○○○와 협의하여야 하는데도, '20. 0. 0. ○○○와 협의없이 교연비 등급 지급율 2.5%로 지급계획을 수립하여 업무처리 부당

○ 또한 '21. 8. 26. 「교원업적평가규정」 제13조의2에 교연비 지급은 4개 등급(S,A,B,C)으로 구분하고, 등급별 차는 5% 범위내로 한다고 부당하게 개정

※ '20. 0. 0. '19학년도 교연비 실적 제출 공문 통보시 교연비 등급별 지급율을 2.5%로 변경

- 그리고 ’18. 11. 29. 이후 ○○○에게 일절 보고없이 ’21. 8. 17. 교무위원회에 교연비 등급을 5등급에서 4등급으로, 지급액을 등급별 20～ 25%범위에서 5% 범위로 축소하는 안을 상정·의결 후 ’21. 8. 26. 규정 개정

※ (등급) 5등급(S,A,B,C,D)→4등급(S,A,B,C) / (등급간 지급율) 20%~25%범위→5%범위

○ ’18. 11. 16.「교연비 지급규정」제8조 제2항 단서에 취업·입시 교원별 개인실적 영역은 반드시 20%이상 반영한다고 규정 개정

○ 한편 ’22. 4. 13. 교무위원회에 교연비 지급규정 제8조 취업·입시 교원별 개인실적 영역은 반드시 20% 이상 반영하여야 한다는 단서조항 삭제 안을 상정하여 의결 후, 단서를 삭제하도록 ’22. 4. 25. 규정 개정

- 그런데 도립대(교무기획처)는 교연비 지급에 따른 실적 인정방법 등 평가방법을 ○○○와 협의해야 되는데도, ’22. 4. 25. ○○○와 협의없이 평가방법을 개정

- 그로 인하여 법령을 준수하지 않은 채 임의로 규정을 개정하여 대학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 초래

2. 교수수업 평가 규정 부적정

□ 도립대는 교원의 교수방법 개선과 양질의 교육풍토 조성을 위하여 매년 교수의 강의 및 실험·실습에 대한 평가를 추진

○「도립대 교수수업 평가에 관한 운영규정」제2조 등에 강의평가는 교수 자체평가와 학생에 의한 평가를 하고, 외래교원은 강의평가 결과 평균 60점에 미달하는 경우 다음 학기 강의에서 배제하도록 규정

○ 한편「○○○○○대 강의평가 운영규정」제8조에 총장은 매학기 강의평가 결과 하위 10%를 받은 교원(환산점수 75점 미만)에 대해 강의개선 계획서를 제출받고, 교수학습 교육이수하도록 규정

○ 또한「○○○○○대 강의평가 운영규정」제7조에 총장은 매학기 강의평가 결과 하위 10%를 받은 교원(환산점수 80점 미만)에 대해 강의개선 계획서를 제출받고, 교수학습 교육이수하도록 규정

- 그런데 도립대(교무기획처)는 강의평가 결과가 낮은 외래교원만 다음 학기 강의에서 배제되는 반면 전임교원에 대한 불이익 조치가 없어, 강의평가 결과 일정 점수 이하의 전임교원에 대한 제재방안 규정 마련 필요

- 그로 인하여 강의평가 낮은 전임교원에 대한 제재 방법이 없어 교육의 질적 향상이 될 수 없는 결과 초래

3. 대학회계직원 근무성적평정 규정 운영 부적정

□ 도립대는 '19. 5. 20. 교무위원회에서 대학회계직원 근무성적은 부서장이 평정하도록 하면서 총장이 확인하는 절차를 삭제

○ 「도립대 대학회계직원 규정」 제14조에 대학회계직원의 근무성적은 부서장이 평정하고, 평정결과는 승진임용 및 성과상여금 자료로 활용하도록 규정

○ 또한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5조에 평정자는 대상 공무원의 바로 위 상급·상위 감독자 또는 차상급·차상위 감독자 중에서, 확인자는 평정자의 바로 위 상급·상위 감독자 또는 차상급·차상위 감독자 중 임용권자가 지정하도록 규정

○ 한편 「ㅇㅇㅇㅇ대 대학회계직원 근무성적 평정에 관한 규정」 제3조에 평정자는 처·국·단의 주무과장(팀장)이고 확인자는 처·국·단장으로 규정

○ 또한 「ㅇㅇㅇㅇ대 대학회계직원 규정」 제21조에 평정자는 소속 부서장이고 확인자는 총장으로 규정

- 그런데 도립대(사무국)는 대학회계직원 근무성적을 교수들로 임명된 처장, 센터장, 단장 등 부서장만이 평정하도록 되어 있고, 확인자가 없어 부서장의 평가로만 대학회계직원의 승진임용 등이 결정되고 있음

- 그로 인하여 교수들로 임명된 부서장이 대학회계직원들의 인사권을 장악하여 직원을 통제할 수 있는 우려를 초래

☞ 교연비 지급 등급 및 등급간 지급율을 도지사와 협의없이 규정을 개정한 現 ㅇㅇ(ㅇㅇㅇ)을 **"주의"** 조치

☞ 강의평가 결과 점수가 낮은 전임교원에 대하여 실효성 있는 징계 방안을 강구하고, 외부심사위원 등을 포함하여 투명하고 객관적인 강의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며, 대학회계직원의 근무성적 평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대책을 수립하도록 **"통보"** 조치

※ ㅇㅇㅇㅇㅇ장 ㅇㅇㅇ는 1, 3, 5, 7번을 통합하여 1건으로 **"경징계 요구"** 조치

6 교수회 및 대학평의원회 운영 부적정

□ 도립대는 「도립대 학칙」에 따라 학칙의 제·개정 등 주요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 등을 위하여 교수회, 대학평의원회 등을 운영

1. 교수회 운영 부적정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에 교수회가 있는 경우는 그 사항을 학칙에 기재하고, 「학칙」 제68조에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교수회를 구성하여 학칙의 신설·변경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도록 규정

○ 「고등교육법」 제19조2에 학칙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

○ 「학칙」 제67조에 학교는 교직원·학생 등으로 구성되는 대학평의원회를 설치·운영하고, 학칙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규정

○ 한편 ○○○○○대 등 4개 대학은 교수회의 학칙 제·개정 권한은 없고, ○○○○○○○대와 ○○○○○대의 교수회에서 심의만 하도록 규정

< 전국 ○○○○○ 학칙 제·개정 심의·의결 권한 >

구분	대학평의원회	교수회	비고
전남도립대	○	심의·의결(신설·변경)	교수회 최종 의결
○○○○○대	○	×	대학평의원회 최종 권한
○○○○○○○대	○	×	대학평의원회 최종 권한
○○○○○○○대	○	심의(변경사항)	대학평의원회 최종 권한
○○○○○대	○	×	대학평의원회 최종 권한
○○○○○대	○	심의(제·개정)	대학평의원회 최종 권한
○○○○○대	○	×	대학평의원회 최종 권한

※ ○ : 심의 또는 실질적 의결 권한 부여 / × : 근거 조항 없음

- 그런데 도립대(교무기획처)는 학칙 제·개정을 추진하면서 법령에 심의 권한이 없는 교수회에서 심의·의결을 받은 후,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평의원회에서는 원안 심의만을 받도록 하고 있어 부적정 운영

○ 그로 인하여 교수회에 과도한 권한이 부여되어 법령에 따라 설치된 대학평의원회 운영이 무력화되어 도립대 발전을 저해

2. 대학평의원회 운영 부적정

○ 「도립대 학칙」 제67조에 대학평의원회는 전임교원 5명, 직원 2명, 조교·

재학생·졸업생은 각 1명씩, 道 ○○○○○○○○장 등 11명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이며, 회의록을 작성·보존하고 공개하도록 규정

○ 한편 전국 도립대 평의원회는 많게는 16명으로 구성되고 ○○○○대와 ○○○○대는 대학의 구성단위인 직원, 조교, 학생은 각 2명 이상으로 구성

< 타 ○○ ○○○○교 대학평의원회 구성 현황 >

구분	총원	교원	직원	조교	학생	기타
전남도립대	11	**5 (45.5%)**	2	1	1	2
○○○○대	12	**5 (41.6%)**	2	**2**	**3**	-
○○○○○○○대	**16**	**7 (43.7%)**	3	1	**2**	3(총장 1)
○○○○○○○대	11	**4 (36.3%)**	2	1	**2**	2
○○○○대	13	**5 (38.4%)**	3	1	**3**	1
○○○○대	11	**4 (36.3%)**	2	**2**	**2**	1
○○○○대	11	**5(45.5%)**	3	1	1	1

- 그런데 도립대(교무기획처)는 대학평의원회 구성할 때 교수 45.5%(5명)을 차지하고 있어 ○○○○대 등 5개 도립대의 경우 교수비율이 최소 36.3%, 최대 43.7%로 타 시도 도립대보다 교수 비율이 높음

- 또한 조교, 학생 등이 각 1명으로 구성되어 있어 불참 시 해당 구성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없고, 직원 대표 박○○등 6명은 '19년부터 '22. 10. 5. 감사일 현재까지 임기 2년을 초과하였는데 방치

- 그리고 '19년부터 '22. 10. 5. 감사일 현재까지 11건 중 5건의 회의록을 미공개하고 있다가 감사 지적 후 '22. 10. 5. 홈페이지에 공개

○ 그로 인하여 다양한 구성원들이 대학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여 대학의 공공성, 투명성, 민주성 확대를 저해

☞ ○ ○○대와 같이 교수회의 학칙 제·개정에 대한 심의·의결 사항은 교수평의원회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대학평의원회 구성원의 비율 등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 조치

☞ 관련 규정에 따라 대학평의원회 회의록을 공개하고, 임기 만료된 대학평의원회의 위원은 교체 위촉하도록 **"시정요구"** 조치

7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지급 평가 업무 부당 처리

□ 도립대는 '18년부터 '21년까지 교원을 대상으로 교육, 연구, 학생지도, 취업·입시 분야로 실적을 평가한 후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이하 "교연비") 16억원을 지급

1.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평가 지표 운영 부적정

○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지급규정」 제10조 등에 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계획서 및 성과물은 「교원업적평가규정」 제13조의2의 등급분포 비율 기준에 따라 지급하도록 규정

○ 교육부 「대학회계예산편성지침」 3. 가이드라인에 교직원에게 동일 기준·동일 비용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통상적 업무수행은 인정 불가하도록 규정

○ 「교원업적평가규정」 제3조에 연구활동은 논문, 저서, 역저, 편저, 보고서, 단행본, 학회활동, 학술강연, 창작활동, 발표 및 전시회, 특허 등으로 규정

○ 또한 「학칙 시행세칙」 제20조 등에 전임교원의 책임시수는 9시간이고, 보직교수인 도서관장, 생활관장은 6시간이고, 교무기획처장, 입학학생처장, 취업지원센터장, 산학협력단장은 3시간으로 규정

- 그런데 도립대(교무기획처)는 '18년부터 '21년까지 ○○에 대하여 ○○부 지침과 달리 별도로 지표 설정 및 비용지급기준을 설정, 부당하게 지표를 적용·운영

- 또한 교원에 대하여 평균 수업시수, 법정의무교육 이수 등 통상업무 수행을 실적으로 인정, 교수 개인별 신입생 충원율 실적을 학과별 신입생 충원율 실적과 중복으로 인정, 보직교수에게 가점을 중복 부여하는 등 부당하게 지표를 운영

< 교육부 지침·교원업적평가규정 대비 도립대 부적정 평가 지표 >

구분	도립대 부적정 평가 지표		교육부 지침 등
총장	- 학생지도영역(신입생 등록률, 취업률 등) 1개분야 별도지표 설정 - 별도 지급기준 적용(예시 : '21년 S등급 ○○ 10백만원, A등급 9.75백만원 등)		특정인(총장·보직자)과 별도지표 설정 불가, 동일 비용 지급 원칙
교원	교육	- 주당 평균 수업 시수(부족한 책임 시수를 4~6점 인정) - 강의계획서 제출, 1학기 시험실시, 법정의무교육 이수 등	통상의 업무수행 인정불가, 책임시수 미달은 감점 지표
	연구	- 교육부 인정 공공기관 전공 관련 120시간 이상 연수 후 보고서 - 전공관련 산업체 6개월 이상 현장 연수 보고서 - 학회 및 협회 회장, 부회장 이사 활동, 학회 참가 등	연구활동과 무관, 단순학회 참가는 인정불가 (좌장, 논문발표는 인정)
	학생지도 / 취업·입시	- 학과 신입생 충원율 실적, 학과 재학생 취업률 등 인정 - 개인별 신입생 충원율 실적, 취업률 실적 등 인정	개인별 실적 인정과 학과별 인정은 중복, 실적없는 교수 점수 부여 불가
	공통	- ○○○○○장, ○○○○○장 등 3~10점×3개 분야(중복) - ○○○장, ○○○장 등 2~5점×3개 분야(중복)	직접적인 실적 외에는 인정 불가, 보직자 특혜 불가

- 그로 인하여 교원업무실적이 과대하게 부풀려지고 교원평가 시 보직교수에게 특혜를 부여하는 등 투명한 평가가 되지 않은 결과 초래

2.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지급 등 부당

가.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지급 계획 협의 부적정

○ 「국립대학회계법 시행규칙」 제22조, 「대학회계 예산편성지침」 등에 도립대는 교연비 지급에 따른 실적 인정기간 및 방법, 영역별 지급액 등 세부사항을 ○○○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규정

- 그런데 도립대(교무기획처)는 '18년부터 '22년까지 한 번도 ○○○의 협의 없이 자체적으로 교연비 지급 계획을 수립하여 부당하게 시행

나.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지급 부적정

○ 「교원업적평가규정」 제13조의2에 교연비 지급은 5개 등급(S,A,B,C,D)으로 구분하고, 등급별 차는 20%~25% 범위내로 한다고 개정('18.11.16.)

○ 또한 '18. 11. 29. 도립대학교 구조개편 방안으로 교연비 ①등급을 다등급화(3→5등급), ②등급간 차등 지급율 확대(5%→22%), ③개인별 취업·입시지도 결과를 20% 신설 반영하는 내용으로 ○○○ 결재를 받음

- 그런데 도립대(교무기획처)는 '18. 11. 29. ○○○ 결재 후 일절 협의없이 '18년부터 '22년까지 등급간 차등 지급율을 22%로 적용하지 않은 채 2.5%로 부당 적용하여 부적정 지급

- 그로 인하여 '18. 11. 29. ○○○와 협의된 교연비 등급간 차등 지급율 22%를 미적용한 채 임의적으로 2.5%로 축소하여 급여 보조성 경비로 지급되는 결과 초래

○ 「교원업적평가규정」 제13조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지급에 따른 등급간 차등 지급율 20~25% 범위를 5%로 범위로 하도록 규정 개정('21. 8. 26.)

- 그런데 도립대(교무기획처)는 '18. 11. 30. 이후에는 차등 지급율을 22%로 지급하도록 하여야 하는데도 ○○○와 협의없이 자의적으로 '21. 8. 26. 차등 지급율을 5% 범위내로 부당하게 규정 개정

○ 「교연비 지급규정」 제8조 취업·입시 교원별 개인실적 영역은 반드시 20% 이상 반영하는 조항을 삭제하도록 개정('22. 4. 25.)

- 그런데 도립대(교무기획처)는 ’18. 11. 29. ○○○와 협의 후 교원별 취업·입시지도 결과를 20% 반영하도록 하였는데도 ○○○와 협의없이 ‘22. 4. 13. 교무위원회에서 조항을 삭제하도록 의결한 후 부당 삭제

○ 「국립대학회계법 시행규칙」 제22조에 총장은 교연비를 부당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환수조치 등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

○ 「대학회계 예산편성지침」 3. 가이드라인에 통상업무 수행 등은 실적으로 미인정하고 실적없는 경우는 단가를 산정하지 않도록 하며, 법령, 가이드라인 등을 위반하여 지급한 비용은 환수방안을 마련·시행하도록 규정

○ 한편 교육부는 「2022년 대학회계예산집행지침」 교연비 가이드라인에 ○○이 법령 및 가이드라인을 위반하여 규정 및 계획 운영시 차년도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예산의 5%를 삭감한다는 규정 마련

- 그런데 도립대(교무기획처)는 ’18년부터 ’21년까지 관련 법령 및 ○○부 가이드라인을 위반하여 지급기준을 부적정하게 설정하고 36명에게 ○억 ○,○○○만원을 과다 지급

- 또한 ’22년에도 관련 법령을 위반한 계획을 수립하여 교직원 44명에게 교연비 선급금 ○억 ○,○○○만원을 부적정하게 지급

- 그 결과 관련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법령을 위반하여 교연비 ○억 ○,○○○만원 과다 지급

3.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부적정

○ 「국립대학회계법」 제8조에 교연비 지급 심의 등을 위한 재정위원회는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당연직·일반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일반직 위원은 해당 대학의 재직 교원, 직원, 재학생을 각각 2명 이상 포함하도록 규정

○ 「국립대학회계예산편성지침」 3. 가이드라인에 교연비 지급의 공정한 심사를 위해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동일 직종만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다고 규정

- 그런데 도립대(교무기획처)는 ’18년부터 ’21년 심사 대상자인 도립대 재

직 교수로만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부적정하게 심사

- 그로 인하여 투명하고 객관적인 실적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 초래

4. 자체점검 체크리스트 활용·점검·보완 부적정

○ 「국립대학회계예산편성지침」 3. 가이드라인에 별첨 4의 자체점검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교연비 지급계획을 수정·보완하도록 규정

- 그런데 도립대(교무기획처)는 ’18년부터 ’21년 자체점검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점검 및 보완업무를 한 차례도 하지 않고 부적정하게 방치

- 그로 인하여 교연비 지급을 위한 타당한 지표 설정이 되지 않은 결과 초래

☞ 앞으로 교연비는 사전에 ㅇㅇㅇ와 협의하는 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시행하도록 **“주의 요구” 조치**

☞ ㅇㅇㅇㅇ육성과에는 「’22년 국립대학회계 예산집행 지침」에 따라 총장이 법령 및 가이드라인을 위반하여 규정 및 계획 운영 시 **차년도 교연비 예산을 5% 삭감**하고, 자체점검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관련 법령 및 교육부 가이드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는 방안 마련하도록 **“통보”** 조치

※ ㅇㅇㅇㅇㅇ장 ㅇㅇㅇ는 1, 3, 5, 7번을 통합하여 1건으로 **“경징계 요구”** 조치

※ ㅇㅇㅇㅇㅇ장 ㅇㅇㅇ은 3, 7번을 통합하여 1건으로 **“경징계 요구”** 조치

8 전임교원 겸직 및 외부강의등 복무관리 부적정

1. 전임교원 겸직 허가 관리 부적정

□ 도립대는 소속 교원의 겸직활동 등의 복무관리를 하고 있음

○ 「지방공무원법」 제56조에 공무원은 공무 외 영리 목적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도록 규정

○ 또한 「道 공무원 겸직허가 운영 지침」 Ⅴ. 겸직허가 세부기준에 겸직허가 대상이 1개월을 초과하여 지속적으로 출강할 때 겸직허가 대상으로 규정

○ 그리고 「교육공무원법」 제19조의2에 교수는 총장의 허가를 받아 영리 목적 겸직을 할 수 있고 해당 사기업체로부터 받은 보수 전부를 총장에게 다음 해 1월 31일까지 보고하도록 규정

- 그런데 도립대(교무기획처)는 '18. 11월부터 '22. 10. 5. 감사일 현재까지 ○ ○ ○ ○ ○ 등 3명의 전임교원이 겸직허가없이 1개월을 초과하여 타 교에 출강하는 등 복무규정을 위반하고 있는데도 관리 부적정

- 또한 ○ ○ ○ ○ ○ ○는 겸직허가 후 ○ ○ ○(주)로부터 '19년 1월부터 '22년 3월까지 받은 보수(0,000만원)를 '22. 10. 5. 감사일 현재까지 미보고하여 법령 위반

< 전임교원 겸직허가 부적정 현황('18.1.~'22.10 5.) >

성명	직급	학과명	겸직허가	겸직기관	겸직활동	겸직기간	보수(천원)
○ ○ ○	○ ○	○ ○ ○ ○ ○과	×	○ ○대	출강	'22.06.07.~'22.07.22.	00,000
○ ○ ○	○ ○	○ ○ ○ ○ ○ ○ ○과	×	○ ○ ○ ○ ○대	출강	'20.09.01.~'20.12.31.	미신고
○ ○ ○	○ ○ ○	○ ○ ○ ○ ○ ○ ○과	×	○ ○ ○ ○ ○ ○ ○ ○ ○ ○ ○ ○ ○센터	센터장	'19.01.01.~'22.10.5.현재	00,000
○ ○ ○	○ ○	○ ○ ○ ○ ○과	○	○ ○ ○(주)	사외이사	'18.01.01.~'22.03.31.	00,000

2. 전임교원 외부강의 등 신고에 대한 관리 부적정

□ 도립대는 소속 교원의 외부강의 등 신고에 대하여 관리 중

○ 「청탁금지법」 제10조 등에 공직자 등은 외부강의 등을 할 때는 외부강의 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규정

* ’20. 6. 4. 이전에는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 신고하도록 규정

- 그런데 도립대(교무기획처)는 ’18년부터 ’22. 6월까지 교수 ○○○ 등 7명(28건)이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초과(또는 2일 초과)하여 지연 신고하는 등 법령을 위반하고 있는데도 관리 부적정

3. 연구년제 교원 관리 부적정

□ 도립대는 ’18년부터 ’22년까지 ○○ ○○ 등 9명이 일정기간(6개월) 동안 강의부담 없이 연구에 전념하게 하는 연구년제 운영

○ 「연구년제 운영규정」 제8조 등에 연구 종료된 교원은 종료 다음날로부터 30일 이내 결과보고서와 논문, 저서 등을 제출하고 미제출 시 교원비 연구영역 평가에 반영하도록 규정

- 그런데 도립대(교무기획처)는 교수 ○○이 ’20. 0. 00. 연구년제를 종료하고 ’21. 9. 6. 도립대논문집 등에 논문*을 수록 예정으로 결과보고서 제출한 후 ’22. 10. 5. 감사일 현재까지 도립대논문집 등에 미수록하였는데도 방치

* (논문명) ○○○○○ ○○○ ○○ ○○ ○○ ○○

☞ **겸직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한 **전임교원**(3명) 및 겸직허가 후 겸직기관으로부터 받은 **보수를 미보고**한 **전임교원(**1명)을 **“주의 요구”** 조치

☞ **외부강의 등 신고**를 **지연**한 **전임교원**(5명)을 **“주의 요구”** 조치

☞ 연구년제 결과보고서에 제출된 논문을 논문집에 미수록한 **전임교원**(1명) **“주의 요구”** 조치

9 ㅇ ㅇㅇ 병행사업 성과평가 업무처리 부적정

□ 도립대(산학협력단)는 ‘21. 6월부터 7월까지 ㅇ ㅇㅇ ㅇㅇ사업 성과 평가를 하면서 성과급으로 ㅇㅇㅇ 교수 등 15명에게 총 9,500만원을 지급

< 일 학습 병행사업 성과평가에 따른 성과급 지급 현황 >

(단위 : 천원)

사업명	대상자	직 책	등급	지급액	사업명	대상자	직 책	등급	지급액
계		15명		95,000	소계		9명		44,000
ㅇㅇ ㅇㅇ 사업	소계	8명		51,000	ㅇㅇㅇ ㅇㅇㅇ 단계	ㅇㅇㅇ	ㅇㅇㅇㅇ	A+	00,000
	ㅇㅇㅇ	ㅇㅇㅇㅇ	S	00,000		ㅇㅇㅇ	ㅇㅇㅇㅇㅇㅇ	A+	00,000
	ㅇㅇㅇ	ㅇㅇㅇㅇㅇㅇ	S	00,000		ㅇㅇㅇ	ㅇㅇㅇㅇ	C+	0,000
	ㅇㅇㅇ	ㅇㅇㅇㅇ	C	0,000		ㅇㅇㅇ	ㅇㅇㅇㅇ	C+	0,000
	ㅇㅇㅇ	ㅇㅇㅇㅇ	C	0,000		ㅇㅇㅇ	ㅇㅇㅇㅇ	D+	0,000
	ㅇㅇㅇ	ㅇㅇㅇㅇ	D	0,000		ㅇㅇㅇ	ㅇㅇㅇㅇㅇ	D+	0,000
	ㅇㅇㅇ	ㅇㅇㅇㅇㅇ	C	0,000		ㅇㅇㅇ	ㅇㅇㅇ	D+	0,000
	ㅇㅇ	ㅇㅇㅇ	D	0,000		ㅇㅇㅇ	ㅇㅇㅇ	D+	0,000
	ㅇㅇㅇ	ㅇㅇㅇ	D	0,000		ㅇㅇㅇ	ㅇㅇㅇ	D+	0,000

○ 「전라남도 공무원 행동강령」(이하 “행동강령”) 제5조 등에 공무원은 학연·직연(직장인연) 등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직무관련자인 경우에 도지사에게 신고하고, 행동강령책임관(道감사관)에게 상담하여 적정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

○ 또한 「행동강령」 제11조 등에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혈연·학연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

1. ㅇㅇ·ㅇㅇㅇ ㅇㅇㅇㅇ사업(ㅇㅇㅇㅇ*) 분야 성과평가 업무처리 부적정

- 그런데 도립대(산학협력단)는 ’21. 7월경 ㅇㅇㅇㅇ*분야 성과평가시 평가자(ㅇㅇㅇ, ㅇㅇㅇ)가 본인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상담하여 조치해야 하는데도 상담 조치없이 성과평가하여 “S”등급 성과급을 지급받았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음

* ㅇㅇㅇㅇㅇ에서 지원하는 ㅇㅇㅇㅇㅇ ㅇㅇ·ㅇㅇㅇ ㅇㅇㅇㅇ ㅇㅇ사업

- 또한 평가자(ㅇㅇㅇ 등 2명)은 평가대상자(6명)에게 평가를 위한 증빙자료 제출요구 없이 본인이 관련 업무를 잘 안다는 사유로 임의판단하여 “C”부터 “D” 등급으로 성과 평가를 함

- 그로 인하여 본인이 본인을 평가하는 등 성과평가가 공정하지 못하게 처리되는 결과 초래

2. ○ ○○ ○○사업 ○○○ ○○○ ○○ ○○ 성과평가 업무처리 부적정

- 그런데 도립대(산학협력단)는 '21. 7월경 위 사업 성과평가시 평가대상자(○○○, ○○○)가 평가자(○○○, ○○○)와 같은 운영위원회 동료 사이로,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상담하여 조치해야 하는데도 상담 조치없이 성과평가하여 "A+"등급의 성과급을 지급받았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음

- 또한 평가자(○○○ 등 4명)은 평가대상자(9명)에게 평가를 위한 증빙자료를 제출받지도 않고 서면회의**를 통해 임의판단하여 부적정하게 성과평가함

** 코로나로 인한 대면 회의가 어렵다는 사유 등으로 서면회의 개최

- 그로 인하여 본인이 본인을 평가하는 등 성과평가가 공정하지 못하게 처리되는 결과 초래

☞ 행동강령을 준수하지 않고 성과평가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 및 ○○○ 교수에 대하여 **"경고 요구"** 조치

☞ 공무원 성과기준 등을 참고하여 합리적인 성과평가 기준을 마련하도록 산학협력단에 **"통보"** 조치

⑩ ○○실습실 구축공사 계약 업무처리 부적정

□ 도립대(산학협력단)는 ‘20. 0. 00. 도립대 ○○실습실 구축공사를 ㈜○○○○○와 20,388만원에 1인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0. 00. 완료

1. 전기·소방공사 무자격업체 설계 용역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등에 계약담당자는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와 계약하되, 건축공사는 전기・소방공사와 분리발주 하도록 규정

- 그런데 도립대(산학협력단)는 ’00. 00. 0. 위 공사 설계를 발주하면서 건축공사와 전기·소방공사는 분리 발주하여야 하는데도 실내건축공사업을 주로 하는 ㈜○○○○○로부터 전기·소방을 포함하여 일괄 납품받음

○ 행안부 「지자체 예산편성기준」 5. 시설부대경비 편성기준에 실시설계시 건축부문 요율은 4.84%, 전기 4.38%, 소방 8.38%를 적용하도록 규정

- 그런데 도립대(산학협력단)는 위 공사 설계를 발주하면서 관련 규정에 따른 용역 단가*를 미산정하고 ㈜○○○○○로부터 4.5백만원에 설계용역을 제공받음

  * 정당한 설계용역 산정 단가 : 약 37백만원

2. 과도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으로 계약체결 부적정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 등에 재공고 입찰로 유찰시 수의계약 가능하되, 재공고는 기한을 제외하고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

○ 또한 「계약집행기준」에 7억원 이하 전문공사는 지역제한 가능하고, 지역제한과 실적제한은 동시에 하지 못하며, 금액제한은 추정가격 1배를 초과하지 못하고, 실적제한은 최근 10년 이내로 하며, 현장설명 참가자에 투찰 제한하는 사례는 금지하도록 규정

- 그런데 도립대(산학협력단)는 ’00. 00. 00. 입찰 공고하면서 지역제한(전남)과 1년 이내 3억원, 3년 이내 10억원으로 과도하게 실적을 제한하여 유찰

- 또한 1차 유찰된 후 ’00. 0. 0. 재공고를 하면서 같은 조건으로 공고해야 하는데도 지역제한(전남)을 삭제하고 1차와 동일하게 실적제한을 하여 ○○소재 ㈜○○○○○만 입찰에 참여

- 그리고 입찰 공고문에 금지사항인 ‘00. 0. 0.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업체만 투찰 가능하도록 하였고, 실적은 최근 10년 이내가 아닌 1년이내 3억원, 3년이내 10억원을 충족하는 업체로 부당하게 제한

- 더욱이 2회 유찰로 인한 수의계약을 하려면 1차 공고조건문과 동일하게 지역+실적제한으로 2회 유찰된 경우인데도 이를 무시하고 부당하게 수의계약 체결

○ 그로 인하여 전남지역에 ㅇㅇㅇㅇ공사업 면허업체가 000여개 이상인데도 과도한 실적제한으로 전남지역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ㅇㅇㅇㅇ와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

3.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 업무처리 부적정

○ 「지방계약법」 제18조 등에 계약담당자는 공사 등 계약 추진 시 공사감독관을 지정하고, 준공검사자는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여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그 대가를 지급하도록 규정

- 그런데 도립대(산학협력단)는 ’00. 0. 00. 위 공사 준공계를 제출하였는데도 준공검사자 지정 및 준공검사조서 작성도 없이 공사감독인 ㅇㅇㅇ ㅇㅇ 날인만 받고 같은 해 2. 25. 대가를 지급하는 등 계약업무 부적정

☞ 앞으로 「지방계약법」에 따라 계약 및 준공검사 등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산학협력단에 **“주의요구”** 조치

11 출장명령 없이 외부강의 등 근무지 이탈

□ 도립대 소속 교원은 외부강의 등 출장 시 「전임교원복무규정」 등에 따라 사전에 출장명령을 득한 후 출장을 하고 있음

○ 「전임교원복무규정」 제22조에 교원이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사전에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총장의 명을 받도록 규정

- 그런데 도립대(교무기획처)는 ○○ ○○○ 등 11명이 '21. 4. 25.*부터 '22. 8. 30.까지 기간 중 총 66차례에 걸쳐 외부강의 등을 하면서 개인별로 최소 1차례부터 최대 31차례에 걸쳐 사전에 출장명령을 받지 않은 채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하였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음

< 출장명령 없이 외부강의 등 출장 부적정 현황('21. 4. 25.~'22. 8. 30) >

직위	성 명	외부강의 등 출장 건수	사전 출장명령 결재 여부
	11명	66	×
○○	○○○, ○○○, ○○○, ○○○, ○○, ○○○, ○○○,	7(각 1회)	×
○○	○○○	4	×
○○	○○○	15	×
○○	○○○	31	×
○○	○○○	9	×

* '21. 4. 25. 복무관리시스템이 개편(학사행정시스템→대학홈페이지 복무관리시스템)되어 기존 시스템으로는 출장 확인이 불가

☞ 앞으로 외부강의 등이 공무에 해당할 시 사전에 출장명령을 득한 후 출장하도록 교무기획처에 "**주의요구**" 조치

⑫ 연구사업 회의비 및 연구수당 지급 부적정

1. 연구사업 회의비 지급 부적정

□ 도립대(산학협력단)는 ’00년도 ○○○○○○○○ ○○○○ ○○○○ 지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총 5차례 회의에 따른 식대 명목으로 622천원을 지급

○ 「○○○○○○○○ ○○○○ ○○ ○○ ○○지침」 제14조의1에 내부직원만 참여하는 경우 회의 관련 비용을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

- 그런데 도립대(산학협력단)는 위 사업과 관련한 ‘00. 0. 00. 등 5차례에 걸친 회의에 내부 직원만 참석하여 회의비 지급이 어려워지자

- 위 참석자 명단에 외부기관 2명(○○○ ○ ○○ ○○○ 등)이 참석한 것처럼 회의비 지급요건을 충족시킨 후 식대비로 622천원을 부적정 지급

2. 연구수당 지급 부적정

□ 도립대(산학협력단)는 ‘00. 0. 0.부터 같은 해 00. 00.까지 ○○○○○ ○○○○○ ○○○○○○○ ○○사업을 추진하면서 2차례에 걸쳐 참여연구원 2명에게 연구수당 5,282천원을 지급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6조에 참여연구자가 2명 이상인 경우 1인의 참여연구자에게 연구수당 총액의 70%를 초과하여 연구수당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규정

- 그런데 도립대(산학협력단)는 과제책임자 ○○ ○○○에게 연구수당 총액 6,282천원의 70%에 해당하는 4,397천원에서 591천원이 초과된 4,988천원을 지급

☞ 앞으로 연구사업 관련 회의비는 부당하게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연구수당은 관련 기준에 맞게 지급하도록 산학협력단에 "**주의요구**" 조치

13 자격증 취득자에 대한 장학금 지급 업무 처리 부적정

□ 도립대(입학학생처)는 ‘19년부터 ’22. 6월까지 재학생이 자격증을 취득할 경우 총 647명에게 약 141백만원의 자격취득 장학금 지급

○ 「고등교육법」 제4조에 학교의 장은 장학금 지급 등 학생에 대한 재정 보조에 대한 사항을 학칙에 기재하도록 규정

○ 또한 「장학금지급규정」 제11조 등에 자격증 취득에 따른 장학금 지급 시 자격증 취득기준은 장학위원회에서 지정한 자격증* 취득자로 규정

* (1등급) 산업기사 이상 300천원, (2등급) 기능사 이상 200천원, (3등급) 위원회 결정 100천원

○ 한편 ○○○○○대학교 등 전국 4개 도립대학교는 자격증 취득 시 장학금 지급기준을 학칙에 기재하여 지급하고 있음

대학명	학칙에 명시된 자격취득 장학금 지급기준	비 고
○○○○○대	전공관련 자격취득, 어학점수 우수자 등	
○○○○○○○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 [별표 2]에 해당하는 자격증 중 기술·기능분야 산업기사 이상 또는 서비스 분야 1급 취득 시 단, 전산회계운용사는 2급 이상 취득 시	
○○○○○○○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 [별표 2]에 해당하는 전공관련 자격증 중 기술·기능분야 산업기사 이상 또는 서비스 분야 1급 취득시	
○○○○○대	자격증 취득자 및 외국어 능력 우수자, 전국규모대회 입상자 등 (연 4개로 제한)	대학 홈페이지에 자격증의 종류 세부기준 안내

- 그런데 도립대(입학학생처)는 장학위원회를 개최시마다 국가공인자격증 및 위원회가 정하는 자격증 기준만 정하고 취득 자격증의 전공관련 여부 등 세부 기준없이 신청하는 모든 자격증*에 장학금 지급

* (예시)○○○ ○○○○○ 1급, ○○○○○○○ 등 민간자격증

○ 그로 인하여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 없이 장학위원회의 판단만으로 자격증 취득 장학금을 지급하는 결과 초래

☞ 자격증 취득 장학금의 지급기준을 「장학금지급규정」에 명시하도록 **“제도상 개선요구”** 조치

Ⅳ. 처분요구서

목 차

① 학과평가 및 학과구조조정 업무 부당 처리(징계,경고,주의) ····· 32

② 교원업적 평가 업무처리 부적정(주의,개선) ····· 47

③ 교육부의 2021년 일반재정지원대학 선정에 대한 소극 대응(기관경고,경고) ····· 55

④ 책임시수 미달 교원 징계 및 부당 전보(경고) ····· 68

⑤「교원업적평가규정」부당 운영 및 제규정 관리 부적정(징계,주의,통보) ····· 74

⑥ 교수회 및 대학평의원회 운영 부적정(시정,통보) ····· 87

⑦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지급 평가 업무 부당 처리(징계,경고,주의,통보) ····· 94

⑧ 전임교원 겸직 및 외부강의등 복무관리 부적정(주의) ····· 112

⑨ ㅇ ㅇㅇ 병행사업 성과평가 업무처리 부적정(경고,통보) ····· 119

⑩ ㅇㅇ실습실 구축공사 계약 업무처리 부적정(주의) ····· 125

⑪ 출장명령 없이 외부강의등 근무지 이탈(주의) ····· 131

⑫ 연구사업 회의비 및 연구수당 지급 부적정(주의) ····· 134

⑬ 자격증 취득자에 대한 장학금 지급 업무 처리 부적정(개선) ····· 140

전 라 남 도

징계·경고·주의요구

제 목 학과평가 및 학과구조조정 업무 부당 처리

관계기관(부서) 전남도립대학교(교무기획처)

징 계 대 상 자 전남도립대학교 ○○ ○○○

징 계 의 종 류 경징계

경 고 대 상 자 전남도립대학교 ○○○○○○○과 ○○ ○○○

내 용

1. 업무개요

전남도립대학교(이하 “도립대학교”라고 한다)는 「학과평가규정」, 「학과구조조정규정」에 따라 학과를 평가하고 2019. 1월부터 2022. 3월까지 3회에 걸쳐 [표 1] “도립대학교 학생정원 조정 결과 현황”과 같이 도립대학교 학과 명칭 변경 및 정원 조정에 대하여 교육부의 승인을 받았다.

[표 1] 도립대학교 학생정원 조정 결과 현황(2019.1월~2022.3월)

교육부승인일	승 인 내 용	정원수 조정(명)		
		당초 (A)	조정 (B)	증감 (B-A)
-	▸ 2020학년도 교육부 승인사항 없음 - 도립대학교에서 2020학년도 학생정원 조정 계획 없음으로 제출[1]	705	705	0
2020.04.23.[2]	▸ 2021학년도 학과 명칭 변경 - 사회복지교육과→사회복지과, 호텔항공관광과→항공호텔관광과, 기계융합학과→드론기계학과, 자동차학과→미래자동차학과, 스마트에너지정보통신과→인공지능드론학과	705	705	0

교육부승인일	승 인 내 용	정원수 조정(명)		
		당초 (A)	조정 (B)	증감 (B-A)
2021.03.23.[3]	▸ 2022학년도 학과 명칭 변경 : 보건의료정보과→보건의료과 ▸ 2022학년도 정원조정(△60명) - 보건의료정보과(△5명), 경찰경호과(△10명), 사회복지과(△5명), 유아교육과(△10명), 인공지능드론과(△5명), 신재생에너지전기과(△10명), 미래자동차학과(△10명), 호텔조리제빵과(△5명)	705	645	△60
2022.03.31.[4]	▸ 2023학년도 학과 명칭 변경 : 사회복지과→사회복지보육과 ▸ 2023학년도 정원 조정(△195명) - (신설) 웰니스6차산업학과(+25명) - (폐지) ○○○○과(△45명), ○○○○과(△30명), ○○○○과(△30명), ○○○○○과(△25명) - (정원조정) 사회복지보육과(△15명), 항공호텔관광과(△5명), 드론기계학과(△5명), 소방안전관리과(△15명), 인공지능드론학과(△5명), 신재생에너지전기과(△5명), 미래자동차학과(△15명), (토목환경과(야, △5명), 한옥건축과(△5명), 호텔조리제빵과(△10명) 공연음악과(△5명)	645	450	△195

자료 : 도립대학교 제출자료 재구성

○○ ○○○은 0000. 0. 0.부터 2021. 4. 4.까지 도립대학교 ○○으로 재직하였고, 교수 ○○○는 2019. 3. 1.부터 2020. 2. 28.까지 도립대학교 ○○○○○장(現 ○○○○○장)으로 근무하였다.

1. 폐과승인을 받은 학과(○○○○○○○○과)를 구조조정학과로 부당 편입

가. 관계법령(판단근거)

「학과구조조정규정」 제2조에 따르면 이 규정은 학과의 폐지 및 통·폐합, 입학정원 조정, 교원 재배치 및 전공전환, 교원 명예퇴직 등의 사항에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학과구조조정규정」 제3조 제2항에 따르면 신입생 충원율이 70% 미만인 경우, 상대평가결과 2개년 연속 하위 3개 학과 포함된 학과(B등급 이상 학과 당해 연도 유예[5])인 경우에는 평가연도에 구조조정 결정을 원칙으로 하도록 되

1) 도립대학교 ○○○○○-0000(2000.00.00.), 2000학년도 ○○○○ ○○ ○○ ○○ 제출
2) ○○부 ○○○○○○과-0000(2000.0.00.), 2000학년도 ○○○○ ○○ ○○ 통보(전남도립대학교)
3) ○○부 ○○○○○○과-0000(2000.0.00.), 2000학년도 ○○○○ ○○ ○○ 통보(전남도립대)
4) ○○부 ○○○○○○과-0000(2000.0.00.), 2000학년도 ○○○○ ○○ ○○ 통보(전남도립대)
5) (학과평가 지표 및 반영비율) 취업률 40%+재학생 충원율 25%+신입생 충원율 35%
- (A등급) 80점이상 (B등급) 70점~80점미만 (C등급) 60점~70점미만 (D등급) 60점 미만

어 있다.

그리고 「학과구조조정규정」 (별표 1)에 따르면 평가결과 하위 3개 학과는 구조조정 대상학과로 구분하고, 평가결과 하위 3개 학과인 경우는 1차년도 학과 경쟁력 강화 계획서를 제출받고 2개년 연속 하위 3개 학과인 경우에는 학과 구조조정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학과평가규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본 대학 학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는 교무기획처장, 입학생처장, 취업지원센터장, 교수협의회의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구성인원은 9인 이상 11인 이내로 하며 위원장은 교무기획처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에 따르면 위원장은 학과평가 결과를 지체없이 총장에게 보고한 후 해당학과에 결과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도립대학교는 2000. 00. 00. ○○○○○○○과를 폐과하는 내용으로 2019학년도 전남도립대학교 학생정원 조정 신청서를 ○○부에 제출하였고, 2000. 0. 00. ○○부로부터 ○○○○○○○○○과에 대하여 2019학년도부터 신입생을 모집하지 않고 학과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통보[6]를 받았으며 ○○○○○○○○○과에 대한 학과구조조정을 완료하였다.

따라서 도립대학교는 「학과구조조정규정」에 따라 학과 평가 결과에 따라 하위 3개 학과를 지정하여 구조조정 학과를 결정할 시에는 폐과승인을 받은 학과는 학과 구조조정이 완료된 학과에 해당되어 학과의 폐지 및 통·폐합 등 학과구조조정을 시행할 수 없으므로 구조조정 학과로 선정·관리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한편 도립대학교는 2019. 1. 11. 2018학년도 학과평가 결과에 대하여 2019학년도 제1차 위원회에 심의하는 안을 수립하면서 [표 2] “2019년 학과평가 결과 현황(2018학년도 평가)”과 같이 2018. 2. 12. 교육부로부터 폐과 승인[7]을 받은 ○○○○○○○○○과에 대하여 2019학년도 구조조정 완료 학과로 관리하면서 상

6) ○○부 ○○○○○○○과-0000(2000.0.00.), 2000학년도 ○○○○ ○○○○ 통보(전남도립대)
7) ○○부 ○○○○○○○과-0000(2000.0.00.), 2000학년도 ○○○○ ○○○○ 통보(전남도립대)

대평가 하위 3개 학과에서 제외하고 ㅇㅇㅇㅇ과, ㅇㅇㅇㅇ과, ㅇㅇㅇㅇㅇㅇ과를 하위 3개 학과 지정 및 학과 구조조정 대상으로 관리하면서 1차년도 학과 경쟁력 강화 계획서를 제출받도록 하는 내용으로 총장 결재를 받아 위원회에 상정[8] 하였다.

[표 2] 2019년 학과평가 결과 현황(2018학년도 평가)

학과	평가 결과	순위 (내림차순)	지표점수				조치사항
			합계	취업률 (40%)	신입생 충원율 (35%)	재학생 충원율 (25%)	
ㅇㅇㅇㅇ과	A	1	91.1	31.1	35	25.0	
ㅇㅇㅇㅇㅇㅇ과	A	2	90.0	36.0	35	19.0	
ㅇㅇㅇㅇㅇ과	A	3	89.9	32.4	35	22.5	
ㅇㅇㅇㅇ과	A	4	89.3	29.3	35	25.0	
ㅇㅇㅇㅇ과	A	5	84.7	26.7	35	23.0	
ㅇㅇㅇㅇㅇㅇ과	A	6	84.1	25.1	35	24.0	
ㅇㅇㅇㅇㅇㅇ과	A	7	83.8	23.8	35	25.0	
ㅇㅇㅇㅇㅇㅇㅇㅇ과	A	8	82.7	25.8	35	21.9	
ㅇㅇㅇㅇ과	A	9	81.2	24.3	35	21.9	
ㅇㅇㅇㅇ과	A	10	80.9	22.6	35	23.3	
ㅇㅇㅇㅇ과	A	11	80.5	24.0	35	21.5	
ㅇㅇㅇㅇ과	A	12	80.3	21.7	35	23.6	
ㅇㅇㅇㅇㅇ과	A	13	80.1	28.9	28	23.2	
ㅇㅇㅇㅇ과	B	14	76.8	18.0	35	23.8	
ㅇㅇㅇㅇㅇㅇ과	B	15	76.3	16.3	35	25.0	상대평가 결과 하위 3개학과 - 구조조정 대상학과(1차년도)
ㅇㅇㅇㅇ과	B	16	71.7	33.8	22.8	15.1	상대평가 결과 하위 3개학과 - 구조조정 대상학과(1차년도)
ㅇㅇㅇㅇ과	C	17	69.1	12.6	35	21.5	상대평가 결과 하위 3개학과 - 구조조정 대상학과(1차년도)
ㅇㅇㅇㅇㅇㅇㅇㅇ과	C	18	66.0	21.2	29.2	15.6	2019학년도 구조조정 완료 (2018년 폐과 승인)

자료 : 도립대학교 제출자료 재구성

그런데 도립대학교(교무기획처)는 2019. 1. 14. 개최된 위원회에서 상정된 안과 다르게 하위 3개 학과로 2019학년도부터 폐과 승인을 받아 구조조정이 완료된 ㅇㅇㅇㅇㅇㅇㅇㅇ과를 포함하여 ㅇㅇㅇㅇ과, ㅇㅇㅇㅇ과를 지정하면서 하위 4순위인 ㅇㅇㅇㅇㅇㅇ과를 제외하였고 ㅇㅇㅇㅇㅇㅇㅇㅇ과, ㅇㅇㅇㅇ과, ㅇㅇㅇㅇ과를 1차년도 학과구조조정 대상으로 의결하였는데도, 위원회 의결안에 대하여 의견 제시없이 의결안대로 폐과 승인을 받은 ㅇㅇㅇㅇㅇㅇㅇㅇ과, ㅇㅇㅇㅇ

8) 도립대학교 ㅇㅇㅇㅇㅇ-000(2000.0.00.), 2000학년도 ㅇㅇㅇ ㅇㅇㅇㅇㅇㅇㅇ ㅇㅇ자료 - (ㅇㅇㅇ) ㅇㅇㅇ - (ㅇㅇㅇ장) ㅇㅇㅇ - (ㅇㅇㅇㅇㅇ장) ㅇㅇㅇ - (ㅇㅇ) ㅇㅇㅇ

과, ○○○○○과를 하위 3개 학과로 수정·지정[9]하였다.

또한 2018. 2. 12. 교육부로부터 폐과 승인을 통보받아 구조조정이 완료된 학과인 ○○○○○○○○○과를 학과 구조조정 대상으로 부당 편입하면서 하위 4순위인 ○○○○○○○과를 학과 구조조정에서 제외되도록 업무를 방치하였다.

2. 학과평가에 편제미완성 학과(○○○○○과) 부당 평가

가. 관계법령(판단근거)

「학과평가규정」 제4조에 따르면 학과평가 대상은 도립대학교 학칙 제4조를 대상으로 하되 신설학과 또는 편제가 완성되지 않은[10](2년제는 2년, 3년제는 3년) 경우(이하 “편제미완성 학과”라고 한다)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학과평가규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본 대학 학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는 교무기획처장, 입학학생처장, 취업지원센터장, 교수협의회 의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구성인원은 9인 이상 11인 이내로 하며 위원장은 교무기획처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에 따르면 위원장은 학과평가 결과를 지체없이 총장에게 보고한 후 해당학과에 결과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도립대학교는 「학과구조조정규정」에 따라 학과평가를 할 때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 편제미완성 학과 등은 제외하여 평가를 하여야 하고 규정을 준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도립대학교(교무기획처)는 2019학년도 학과를 평가하면서 「학과평가규정」에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 편제미완성 학과는 평가에서 제외하여야 하는데도 ○○의 부당한 지시[11](지시일은 정확히 확인할 수 없음)로 규

9) 도립대학교 ○○○○실-000(2000.0.00.), 2000학년도 제0차 ○○○○○○○○ ○○ 보고
- (○○○) ○○○ - (○○○○) 출장- (○○○○○○) ○○○ - (○○) ○○○

10) 편제는 학교 수업연한을 의미하며, 전문대학 편제(수업연한)는 2~3년제며 수업연한 변경(2년제→3년제) 등으로 모든 학년 정원이 완성되지 않은 학과임

11) 2000. 0. 00. ○○○○○ 회의 시 ○○○○○○○이 제안설명을 하면서 ○○(○○○) 지시로 ○○○○○를 학과평가에 포함하고 평가 결과를 상정하게 되었음을 설명하였고, ○○도 지시한 사실을 인정

정을 위반하여 편제미완성 학과 등을 제외하지 않은 채 부적정한 평가를 하였고, 2020. 1. 17. 2019학년도 학과를 평가한 결과에 대하여 2020년 제1차 학과평가위원회에 심의하는 안을 수립하면서 편제미완성 학과인 ○○○○○과 등을 포함한 18개 학과에 대하여 [표 3] “2020년 학과평가 결과 현황(2019학년도 평가)”과 같이 하위 4순위 ○○○○○○○과를 제외한 채 ○○○○○과, ○○○○○과, ○○○○○○과를 하위 3개 학과로 지정하고 구조조정 대상학과로 지정하는 내용으로 총장 결재[12]를 받아 관련 규정을 위반한 채 평가된 부당한 결과를 위원회에 상정하였다.

[표 3] 2020년 학과평가 결과 현황(2019학년도 평가)

학과	평가 결과	순위 (내림차순)	지표점수				조치시항
			합계	취업률 (40%)	신입생 충원율 (35%)	재학생 충원율 (25%)	
○○○○○과	A	1	93.8	33.8	35.0	25.0	
○○○○○과	A	2	93.3	40.0	35.0	18.3	
○○○○○○과	A	3	91.6	31.6	35.0	25.0	
○○○○○○○과	A	4	90.4	36.0	35.0	19.4	
○○○○○○○과	A	5	88.3	28.3	35.0	25.0	
○○○○○과	A	6	87.1	27.1	35.0	25.0	
○○○○○○○○○과	A	7	85.2	25.2	35.0	25.0	
○○○○○과	A	8	83.2	24.0	35.0	24.2	
○○○○○과	A	9	82.1	22.1	35.0	25.0	
○○○○○과	A	10	81.1	31.8	31.5	17.8	
○○○○○○과	A	11	80.0	23.5	35.0	21.5	(신설학과)
○○○○○○○과	B	12	78.6	30.6	29.2	18.8	
○○○○○○○과	B	13	77.7	18.1	35.0	24.6	
○○○○○○과	B	14	73.8	28.9	25.7	19.2	
○○○○○○○과	B	15	72.9	26.7	30.0	16.2	
○○○○○○○과	C	16	69.2	10.7	35.0	23.5	상대평가 결과 하위 3개학과 - 구조조정 대상학과(1차년도)
○○○○○○○○○○과	C	17	68.2	24.0	26.0	18.2	상대평가 결과 하위 3개학과 - 구조조정 대상학과(1차년도)
○○○○○과	C	18	60.0	13.3	31.5	15.2	상대평가 결과 하위 3개학과 - 편제미완성 학과로 유예

자료 : 도립대학교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2020. 1. 20. 개최된 위원회에서는 규정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상정된 안대로 편제미완성 학과인 ○○○○○과를 포함하여 ○○○○○○○○○과, ○○○

12) 도립대학교 ○○○○○실-000(2000.0.00.), 2000년 제0차 ○○○○○○○○ 심의자료 - (○○○○) ○○○○ - (○○○○○) 대체휴무 - (○○○○○○○) ○○○○ - (○○) ○○○

ㅇㅇㅇ과를 하위 3개 학과로 지정하면서 1차년도 구조조정 대상 학과로 관리하도록 하면서 하위 4순위 ㅇㅇㅇㅇㅇㅇ과가 제외되도록 의결하였다.

그리고 2020. 1. 28. 2020년 제1차 교무위원회에 심의하는 안을 수립하면서 의안번호 제2019-3호로 2018학년도와 2019학년도 2개년도 동안 상대평가 결과 하위 3개 학과에 포함된 공연음악과의 구조조정을 유예하는 안을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ㅇㅇ 결재[13]를 받아 상정하였고, 2020. 1. 28에 개최된 교무위원회에서 ㅇㅇㅇㅇㅇ장이 제안설명을 하면서 규정에 따르면 편제미완성 학과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되지만 ㅇㅇ(ㅇㅇㅇ)의 요청이 있어 평가를 실시하게 되었음을 설명하였고, 위원장(ㅇㅇ ㅇㅇㅇ)이 담당부서로부터 ㅇㅇㅇㅇ과는 학과평가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하였으나, ㅇㅇ(ㅇㅇㅇ)이 요청하여 학과평가를 한 것이라고 설명한 후 ㅇㅇㅇㅇㅇ에 대한 구조조정을 유예하도록 의결하였다.

또한 2021. 2. 9. 2020학년도 학과를 평가한 결과에 대하여 2021년 제4차 위원회에 심의하는 안을 수립하면서 [표 4] “2021년 학과평가 결과 현황(2020학년도 평가)”과 같이 2021년에는 평가 결과 하위 3개 학과로 ㅇㅇㅇㅇㅇㅇ과, ㅇㅇㅇㅇㅇㅇㅇㅇㅇ과, ㅇㅇㅇㅇㅇ과를 지정하여 상정[14]하였고, 그 결과 위 3개 학과가 하위 3개 학과로 의결하였다.

[표 4] 2021년 학과평가 결과 현황(2020학년도 평가)

학과	평가 결과	순위 (내림차순)	지표점수				조치시항
			합계	취업률 (40%)	신입생 충원율 (35%)	재학생 충원율 (25%)	
ㅇㅇㅇㅇㅇㅇ과	A	1	95.5	36.0	35.0	24.5	
ㅇㅇㅇㅇ과	A	2	93.0	33.0	35.0	25.0	
ㅇㅇㅇㅇㅇㅇ과	A	3	92.8	32.8	35.0	25.0	
ㅇㅇㅇㅇ과	A	4	90.0	30.0	35.0	25.0	
ㅇㅇㅇㅇㅇㅇ과	A	5	87.1	30.4	35.0	21.7	
ㅇㅇㅇㅇㅇㅇ과	A	6	85.4	25.4	35.0	25.0	
ㅇㅇㅇㅇ과	A	7	85.2	26.7	35.0	23.5	
ㅇㅇㅇㅇ과	A	8	83.5	32.0	35.0	16.5	
ㅇㅇㅇㅇ과	B	9	78.5	22.0	35.0	21.5	
ㅇㅇㅇㅇㅇ과	B	10	76.5	18.5	35.0	23.0	
ㅇㅇㅇㅇㅇ과	B	11	76.0	17.2	35.0	23.8	

13) 도립대학교 ㅇㅇㅇㅇㅇ-000(2000. 0. 00.), 2000년 제0차 ㅇㅇㅇㅇㅇ ㅇㅇㅇㅇ - (ㅇㅇㅇㅇㅇㅇㅇ) ㅇㅇㅇ - (ㅇㅇㅇㅇㅇㅇㅇ) ㅇㅇㅇ - (ㅇㅇ) ㅇㅇㅇ

14) 도립대학교 ㅇㅇㅇㅇㅇ-000(2000.0.00.). 2000학년도 제0차 ㅇㅇㅇㅇㅇㅇㅇ ㅇㅇㅇㅇ

학과	평가 결과	순위 (내림차순)	지표점수				조치시항
			합계	취업률 (40%)	신입생 충원율 (35%)	재학생 충원율 (25%)	
○○○○○과	B	12	74.2	32.0	26.3	15.9	
○○○○○○○과	B	13	73.8	16.2	35.0	22.6	
○○○○○과	B	14	72.5	26.3	26.1	20.1	
○○○○○○○○○과	B	14	72.5	28.0	25.7	18.8	
○○○○○○과	B	16	72.4	29.2	28.0	15.2	상대평가 결과 하위 3개학과 - 구조조정 대상학과(1차년도)
○○○○○○○○○○과	B	17	70.6	28.2	27.0	15.4	상대평가 결과 하위 3개학과 - 구조조정 대상학과(1차년도)
○○○○○○○과	C	18	67.8	25.7	27.0	15.1	상대평가 결과 하위 3개학과 - 구조조정 대상학과(1차년도)

자료 : 도립대학교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2019. 1월부터 2021. 2월까지 [표 5] “학과평가결과 상대평가 하위 3개 학과 부당 지정 현황”과 같이 2020년에 ○○○○○○○과(45명), 2021년에 ○○○○○○○과(35명)가 구조조정 대상인데도 적시에 검토되지 못한 채 2022년에서야 ○○○○○○○과를 폐지하는 승인을 받았고 ○○○○○○○과는 2022. 10. 5. 감사일 현재까지도 검토조차 되지 않고 있고, 도립대학교 신입생 충원율이 2019년 95%에서 2021년 83%로 하락되었으며 교육부의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서 탈락되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국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표 5] 학과평가결과 상대평가 하위 3개 학과 부당 평가 현황(2019. 1월~2021. 2월)

평가연월	도립대의 부적정 평가	정당한 평가	부당 평가사유
2000.00.	○○○○○○○○○과 ○○○○○과 ○○○○○과	○○○○○과 ○○○○○과 ○○○○○○○과	- 2018년 폐과승인 받은 ○○○○○○○○○과를 구조조정 대상으로 지정 - 하위 3개학과 변경(○○○○○○○과 제외됨)
2000.00.	○○○○○과 ○○○○○○○○○○○과 ○○○○○○○과[15]	○○○○○○○○○○○과 ○○○○○○○과 ○○○○○○○과	- ○○○○○과(편제미완성 학과)를 부당 평가 - 하위 3개 학과 변경(○○○○○○○과 제외됨) - ○○○○○○○과 폐지 대상
2000.00.	○○○○○○○과 ○○○○○○○○○○○과 ○○○○○○과		- ○○○○○○○과 폐지 대상

자료 : 도립대학교 제출자료 재구성

3. 신입생 충원율 70%미만 학과(○○○○○과)에 대한 학과구조조정 부당 처리

15) ○○○○○○○과 : (2018학년도 평가) B등급 (2019학년도 평가) C등급
○○○○○○○과 : (2018학년도 평가) B등급 (2019학년도 평가) C등급
○○○○○○○○○○○과 : (2019학년도 평가) B등급 (2020학년도 평가) B등급

가. 관계법령(판단근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따르면 법 제32조에 따른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원격대학 및 각종학교를 포함하되, 대학원 및 대학원대학을 제외한다)의 학생정원은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하여 학칙이 정하는 모집단위(이하 “모집단위”라 한다)별로 학칙으로 정하되, 「대학설립·운영 규정」에 따른 교사, 교지, 교원 및 수익용 기본재산에 따라 정해지는 학생수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르면 공립대학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다.

또한 「학과구조조정규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학과 평가등급별 결과 (별표1)에 따라 교육부의 학년도별 전문대학 학생정원 조정 시기에 맞춰서 학과 구조조정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2018. 11. 16. 개정된 「학과구조조정규정」 제3조 제2항에 따르면 신입생 충원율이 70% 미만인 경우, 상대평가결과 2개년 연속 하위 3개 학과 포함된 학과(B등급 이상 학과 당해 연도 유예)인 경우에는 평가연도에 구조조정 결정을 원칙으로 하고,부칙에 이 규정은 발령일인 2018. 11. 30.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산업수요 및 대학발전 차원에서 존치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총장을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유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학과구조조정규정」 (별표1)에 따르면 학과평가 결과 신입생 충원율 70%미만인 학과는 당해연도 구조조정을 시행하도록 조치하고, 평가결과 하위 3개 학과인 1차년도 학과 경쟁력 강화 계획서를 제출받고 2개년 연속 하위 3개학과인 경우에는 학과 구조조정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학과평가규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본 대학 학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는 교무기획처장, 입학생처장, 취업지원센터장, 교수협의회의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구성인원은 9인 이상 11인 이내로 하며 위원장은 교무기획처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에 따르면 위원장은 학과평가 결과를 지체없이 총장에게 보고한 후 해당학과에 결과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도립대학교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도립대학교의 정원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에는 도지사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하고, 2018. 11. 30.부터 신입생 충원율이 70% 미만인 경우에는 지역산업수요 및 대학발전 차원에 존치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외에는 당해연도 구조조정에 해당되므로 2018년 신입생 충원율이 70% 미만인 경우에는 2018년에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도립대학교(교무기획처)는 2018. 11. 29. 2020학년도 학과 및 학생정원(안)에 대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면서 ○○○○○과가 2018학년도 신입생 충원율 65%로 「학과구조조정규정」 제2항에 따른 구조조정 대상학과에 해당된다는 내용을 누락한 채 2020학년도에는 현행으로 유지하는 내용으로 ○○○의 결재를 받아 2018. 12. 17. ○○부에 2020학년도 학생정원 조정계획은 없음으로 제출하였다.

또한 2019. 1. 11. 2019학년도 제1차 위원회에 상정하면서 ○○○○○과는 「학과구조조정규정」 제3조 제2항 및 부칙에 따라 규정 시행일인 2018. 11. 30.부터 신입생 충원율이 70% 미만인 학과는 평가년도에 구조조정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과의 2018학년도 신입생 충원율은 65%로 구조조정에 해당되나 2018. 11. 16. 「학과구조조정규정」이 개정되어 ○○○○○과의 폐과를 유예하는 내용으로 ○○ 결재[16]를 받아 위원회에 부당하게 상정하였다.

그리고 2019. 1. 14. 위원회에서는 부당하게 상정된 심의 안대로 2018. 11. 16. 개정된 규정(신입생 충원율 70% 미만)을 ○○○○○과에 소급 적용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한 후, ○○○○○과의 구조조정을 유예시키도록 의결하였다.

그로 인하여 ○○○○○과(신입생 40명)를 2019년 구조조정 대상에서 부당하게 제외시켜 2022년에서야 폐지 승인을 받아 도립대학교의 경쟁력이 저하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16) 도립대학교 ○○○○○실-000(2000.0.00.), 2000학년도 제0차 ○○○○○○○○ ○○자료

4. 업무담당자의 부당 업무 처리

ㅇㅇㅇ은 2000. 0. 0.부터 2021. 0. 0.까지 도립대학교 ㅇㅇ으로 재직하면서 학과평가 및 학과구조조정 업무를 총괄하였다.

1) 폐과승인을 받은 학과(ㅇㅇㅇㅇㅇㅇㅇㅇ과)를 구조조정학과로 부당 편입

위 사람은 「학과구조조정규정」 제2조에 따르면 이 규정은 학과의 폐지 및 통·폐합, 입학정원 조정 등에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학과구조조정규정」에 따라 학과 평가 후 하위 3개 학과를 지정하여 학과 구조조정을 결정할 시에는 교육부로부터 폐과승인을 받은 학과는 학과 구조조정이 완료된 학과에 해당되어 학과의 폐지 및 통·폐합 등 학과구조조정을 할 수 없으므로 학과 평가에 따른 구조조정 학과로 관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 2019. 1. 11. 2018학년도 학과평가 결과에 대하여 2019학년도 제1차 학과평가위원회에 심의하면서 [표 6] “2019년 학과평가 결과 현황(2018학년도 평가)”과 같이 2018. 2. 12. ㅇㅇ부로부터 폐과 승인[17]을 받은 ㅇㅇㅇㅇㅇㅇㅇㅇ과는 2019학년도 구조조정 완료로 관리하면서 상대평가 하위 3개 학과에서 제외하면서 ㅇㅇㅇㅇ과, ㅇㅇㅇㅇ과, ㅇㅇㅇㅇㅇㅇ과를 하위 3개 학과 지정 및 학과 구조조정 대상으로 관리하면서 1차년도 학과 경쟁력 강화 계획서를 제출받도록 총장 결재를 받아 학과평가위원회에 상정하였고, 그 후 2019. 1. 14. 학과평가위원회에서 상정 안과 다르게 하위 3개 학과로 2018. 2. 12. 폐과 승인을 받은 ㅇㅇㅇㅇㅇㅇㅇ과, ㅇㅇㅇㅇ과, ㅇㅇㅇㅇ과를 지정하면서 하위 4순위인 ㅇㅇㅇㅇㅇㅇ과를 제외하도록 의결하였는데 아무런 조치없이 ㅇㅇㅇㅇㅇㅇㅇㅇ과를 구조조정 학과로 부당 편입하여 관리하면서 하위 4순위인 ㅇㅇㅇㅇㅇㅇ과가 구조조정에서 제외되도록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였다.

[표 6] 2019년 학과평가 결과 현황(2018학년도 평가)

학과	평가 결과	순위 (내림차순)	지표점수				조치사항
			합계	취업률 (40%)	신입생 충원율 (35%)	재학생 충원율 (25%)	
ㅇㅇㅇㅇ과	A	1	91.1	31.1	35	25.0	

17) ㅇㅇ부 ㅇㅇㅇㅇㅇㅇ과-0000(2000.0.00.), 2000학년도 ㅇㅇㅇㅇ ㅇㅇㅇㅇ 통보(전남도립대)

학과	평가 결과	순위 (내림차순)	지표점수				조치사항
			합계	취업률 (40%)	신입생 충원율 (35%)	재학생 충원율 (25%)	
○○○○○○과	A	2	90.0	36.0	35	19.0	
○○○○○과	A	3	89.9	32.4	35	22.5	
○○○○과	A	4	89.3	29.3	35	25.0	
○○○○과	A	5	84.7	26.7	35	23.0	
○○○○○○과	A	6	84.1	25.1	35	24.0	
○○○○○○과	A	7	83.8	23.8	35	25.0	
○○○○○○○○○과	A	8	82.7	25.8	35	21.9	
○○○○과	A	9	81.2	24.3	35	21.9	
○○○○과	A	10	80.9	22.6	35	23.3	
○○○○과	A	11	80.5	24.0	35	21.5	
○○○○과	A	12	80.3	21.7	35	23.6	
○○○○○과	A	13	80.1	28.9	28	23.2	
○○○○과	B	14	76.8	18.0	35	23.8	
○○○○○○과	B	15	76.3	16.3	35	25.0	상대평가 결과 하위 3개학과 - 구조조정 대상학과(1차년도)
○○○○과	B	16	71.7	33.8	22.8	15.1	상대평가 결과 하위 3개학과 - 구조조정 대상학과(1차년도)
○○○○과	C	17	69.1	12.6	35	21.5	상대평가 결과 하위 3개학과 - 구조조정 대상학과(1차년도)
○○○○○○○○과	C	18	66.0	21.2	29.2	15.6	2019학년도 구조조정 완료 (2018년 폐과 승인)

자료 : 도립대학교 제출자료 재구성

2) 학과평가에 편제미완성 학과(○○○○과) 부당 평가

위 사람은 「학과평가규정」 제4조에 따르면 학과평가 대상은 도립대학교 학칙 제4조를 대상으로 하되 신설학과 또는 편제가 완성되지 않은[18](2년제는 2년, 3년제는 3년) 경우(이하 “편제미완성 학과”라고 한다)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어 「학과구조조정규정」에 따라 학과평가를 할 때에는 편제미완성 학과 등 규정에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 학과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하여 평가를 하여야 하고 규정을 준수하여 평가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 2019학년도 학과를 평가하면서 「학과평가규정」 제4조에 따라 편제미완성 학과 등 규정에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 학과를 제외하여 평가하여야 하는데도 ○○(○○○○)의 부당 지시[19](지시일은 정확히 확인할 수 없음)로 규정을 위반하여 편제미완성 학과 등을 제외하지 않은 채 평가하였고, 2020. 1. 17. 2019학년도 학과를 평가한 결과에 대하여 2020년 제1차 위원회에 심의하

18) 편제는 학교 수업연한을 의미하며, 전문대학 편제(수업연한)는 2~3년제며 수업연한 변경(2년제→3년제) 등으로 모든 학년 정원이 완성되지 않은 학과임

19) 2020. 1. 28. 교무위원회 회의 시 ○○○○○팀장이 제안설명을 하면서 ○○(○○○○) 지시로 ○○○○○과를 학과평가에 포함하고 평가 결과를 상정하게 되었음을 설명하였고, ○○도 지시한 사실을 인정

는 안을 수립하면서 편제미완성 학과인 ㅇㅇㅇㅇ과 등을 포함한 18개 학과에 대하여 [표 7] “2020년 학과평가 결과 현황(2019학년도 평가)”과 같이 상대평가 하위 4순위 ㅇㅇㅇㅇㅇㅇ과를 제외하여 ㅇㅇㅇㅇ과, ㅇㅇㅇㅇ과, ㅇㅇㅇㅇㅇㅇ과를 상대평가 하위 3개 학과로 지정하고 구조조정 대상학과로 지정하는 내용으로 ㅇㅇ 결재[20]를 받아 관련 규정을 위반한 채 평가된 부당한 결과를 위원회에 상정하였다.

[표 7] 2020년 학과평가 결과 현황(2019학년도 평가)

학과	평가 결과	순위 (내림차순)	지표점수				조치시항
			합계	취업률 (40%)	신입생 충원율 (35%)	재학생 충원율 (25%)	
ㅇㅇㅇㅇ과	A	1	93.8	33.8	35.0	25.0	
ㅇㅇㅇㅇ과	A	2	93.3	40.0	35.0	18.3	
ㅇㅇㅇㅇㅇ과	A	3	91.6	31.6	35.0	25.0	
ㅇㅇㅇㅇㅇㅇ과	A	4	90.4	36.0	35.0	19.4	
ㅇㅇㅇㅇㅇㅇ과	A	5	88.3	28.3	35.0	25.0	
ㅇㅇㅇㅇ과	A	6	87.1	27.1	35.0	25.0	
ㅇㅇㅇㅇㅇㅇㅇㅇ과	A	7	85.2	25.2	35.0	25.0	
ㅇㅇㅇㅇ과	A	8	83.2	24.0	35.0	24.2	
ㅇㅇㅇㅇ과	A	9	82.1	22.1	35.0	25.0	
ㅇㅇㅇㅇ과	A	10	81.1	31.8	31.5	17.8	
ㅇㅇㅇㅇㅇ과	A	11	80.0	23.5	35.0	21.5	(ㅇㅇ학과)
ㅇㅇㅇㅇㅇㅇ과	B	12	78.6	30.6	29.2	18.8	
ㅇㅇㅇㅇㅇㅇ과	B	13	77.7	18.1	35.0	24.6	
ㅇㅇㅇㅇㅇ과	B	14	73.8	28.9	25.7	19.2	
ㅇㅇㅇㅇㅇㅇ과	B	15	72.9	26.7	30.0	16.2	
ㅇㅇㅇㅇㅇㅇ과	C	16	69.2	10.7	35.0	23.5	상대평가 결과 하위 3개학과 - 구조조정 대상학과(1차년도)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과	C	17	68.2	24.0	26.0	18.2	상대평가 결과 하위 3개학과 - 구조조정 대상학과(1차년도)
ㅇㅇㅇㅇ과	C	18	60.0	13.3	31.5	15.2	상대평가 결과 하위 3개학과 - 편제미완성 학과로 유예

자료 : 도립대학교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2020. 1. 20. 개최된 위원회에서는 부당하게 상정된 안대로 편제미완성 학과인 ㅇㅇㅇㅇ과, ㅇㅇㅇㅇㅇㅇㅇㅇ과, ㅇㅇㅇㅇㅇㅇ과를 하위 3개 학과로 지정하면서 1차년도 구조조정 대상 학과로 관리하도록 하면서 하위 4번째 ㅇㅇㅇㅇㅇㅇ가 제외되도록 의결하였다.

3) 신입생 충원율 70%미만 학과(ㅇㅇㅇㅇ과)에 대한 학과구조조정 부당 처리

20) 도립대학교 ㅇㅇㅇㅇ실-000(2000.0.00.), 2000년 제1차 ㅇㅇㅇㅇㅇㅇㅇ 심의자료
- (기안자) ㅇㅇㅇ - (ㅇㅇㅇ장) 대체휴무 - (ㅇㅇㅇㅇㅇ장) ㅇㅇㅇ - (ㅇㅇ) ㅇㅇㅇ

위 사람은「고등교육법 시행령」제28조 제5항에 따르면 공립대학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는데도 2018. 11. 29. 2020학년도 학과 및 학생정원(안)에 대하여 ○○○○에게 보고하면서 2018학년도 신입생 충원율 65%로「학과구조조정규정」제2항에 따른 구조조정 대상학과에 해당된다는 내용을 누락한 채 2020학년도에는 현행으로 유지하는 내용으로 ○○○○의 결재를 받아 2018. 12. 17. 교육부에 2020학년도 학생정원 조정 계획은 없음으로 제출하였다.

또한 2019. 1. 11. 2019학년도 제1차 위원회에 상정[21]하면서 ○○○○○과는「학과구조조정규정」제3조 제2항 및 부칙에 따라 규정 개정일인 2018. 11. 30.부터 신입생 충원율이 70% 미만인 학과는 평가년도에 구조조정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과의 2018학년도 신입생 충원율은 65%로 구조조정에 해당되나 2018. 11. 16.「학과구조조정규정」이 개정되어 ○○○○○과의 폐과를 유예하는 내용으로 ○○ 결재를 받아 위원회에 부당한 내용으로 상정하여 2019. 1. 14. 위원회에 ○○○○○과 구조조정 유예를 의결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2019. 1월부터 2021. 2월까지 [표 8] “학과평가 및 학과구조조정 부당 현황”과 같이 2019년 ○○○○○과(40명) 2020년에 ○○○○○○○과(45명), 2021년에 ○○○○○○○과(35명)가 구조조정 대상인데도 적시에 검토되지 못한 채 2022년에서야 ○○○○○과, ○○○○○○○과를 폐지하는 승인을 받았고 ○○○○○○○과는 2022. 10. 5. 감사일 현재까지도 검토조차 되지 않고 있고, 도립대학교 신입생 충원율이 2019년 95%에서 2021년 83%로 하락되고 있어 교육부의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서 탈락되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국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결과까지 초래하였다.

[표 8] 학과평가 및 학과구조조정 부당 현황(2019.1월~2021.2월)

평가연월	도립대의 부적정 평가	정당한 평가	부당 사유
2019.01.	○○○○○○○○○과 ○○○○○과 ○○○○○과	○○○○○과 ○○○○○과 ○○○○○○○과(B등급)	- 신입생 충원률 70%미만인 ○○○○○과 폐지대상 - 2018년 폐과승인 받은 ○○○○○○○○○과를 구조조정 대상으로 지정 - 하위 3개학과 변경(○○○○○○○과 제외됨)

21) 도립대학교 ○○○○○실-000(2000.0.00.), 2000학년도 제0차 ○○○○○○○ ○○자료

평가연월	도립대의 부적정 평가	정당한 평가	부당 사유
2020.01.	○○○○과 ○○○○○○○과 ○○○○○○과(C등급)	○○○○○○○과(B등급) ○○○○○○과 ○○○○○○과(B등급)	- ○○○○과(편제미완성 학과)를 부당 평가 - 하위 3개학과 변경(○○○○○○과 제외됨) - ○○○○○○과 폐지 대상
2021.02.	○○○○○○과(C등급) ○○○○○○○과(B등급) ○○○○○과		- ○○○○○○과 폐지 대상

자료 : 도립대학교 제출자료 재구성

관계기관 의견 전남도립대학교는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징계요구 양정

학과평가 업무를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지시하고 학과구조조정을 부당하게 처리한 前 ○○ ○○○○의 행위는「지방공무원법」제48조에 위배 된 것으로「교원인사관리규정」제3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조치할 사항 **전남도립대학교 총장**은

① 2019학년도 학과 평가시「학과평가규정」을 위반하여 편제미완성 학과인 ○○○○과를 평가에 포함하도록 부당 지시하여 적시에 ○○○○○○○과에 대한 학과구조조정이 검토되지 못하게 한 점과 학과구조조정을 적시에 하지 못하여 신입생 충원율이 하락되어 교육부의 2021년 기본역량 평가에 탈락한 책임에 대하여 前 ○○ ○○○○을「교원인사관리규정」제38조에 따라 경징계하고,**(징계)**

② 앞으로 학과를 평가할 때에는「학과평가규정」을 준수하도록 평가하도록 하며, 그 결과에 따라 학과구조조정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전 라 남 도

주의·개선요구

제　　목　교원업적 평가 업무처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전남도립대학교(교무기획처)

내　　용

1. 업무개요

전남도립대학교(이하 “도립대학교”라고 한다)는 2019년부터 2022. 2월까지 「교원업적평가규정」에 따라 교원의 교육활동, 연구활동 등 전반적인 실적에 대하여 교원업적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교원의 승진임용, 재임용 및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지급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2. 교원의 연구활동 평가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근거)

「교원업적평가규정」 제2조에 따르면 교원업적이라 함은 교원의 교육활동, 연구활동, 봉사활동, 수범활동 및 대학발전 기여도 등에 관한 전반적인 실적이라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규정 제3조 제2항에 따르면 연구활동은 논문, 저서, 역저, 편저, 보고서, 단행본, 학회활동, 학술강연, 창작활동, 발표 및 전시회, 특허 등의 연구활동 등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규정 제5조에 따르면 평가는 연 1회 실시하며, 전년도의 3월 1일부터 그 다음해 2월 28일까지의 업적을 평가하며, 평가는 매년 1월부터 실시하고, 2월말까지 완료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아울러 같은 규정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연구활동의 논문실적 증빙을 위해

서는 논문실적시스템[1](KRIMS)에 등록[2]하고 논문표절검사 결과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규정 제10조에 따르면 [표 1] “교원업적평가표 평가영역 및 배점 현황”과 같이 [별표 1]의 교원업적평가표와 [별표 2]의 교원업적평가심사표의 세부 심사기준은 [별표 3]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교원업적평가 평정자료 2. 연구활동의 연구업적은 문제집 및 단순편저 제외한 전공분야의 공인된 출판 저서 및 창작집, 연구기간 6개월 이상의 지방정부·공공기관 및 산업체 수탁 연구보고서 등이며, 연구활동(24점)은 연구실적물의 양(12점)과 연구실적물의 질(12점)으로 점수를 부여하며 연구실적률 50% 미만은 연구실적물의 양과 질에서 각각 6점을 부여하되 논문표절검사 결과확인서 등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실적으로 불인정하도록 되어 있다.

[표 1] 교원업적평가표 평정영역 및 배점 현황

평정영역		평정항목	배점	비고
교육활동		강의, 학생지도	37	
연구활동		연구실적물의 양·질	24	
봉사활동		교내활동, 대외활동	14	
수범활동		교육자로서의 품위 및 제반법규 준수	5	
대학발전		대학발전 기여도, 대학홍보 기여도	20	
소 계			100	
가·감점	상벌	훈장, 표창, 징계 등	-5점~+3점	
	학과핵심지표평가점수	학과평가지표 결과 반영	-4점~+2점	

자료 : 도립대학교 제출자료 재구성

아울러 같은 규정 제13조에 따르면 평가결과는 교원의 승진임용, 재임용, 정년보장 임용 및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지급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립대학회계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르면 이 법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 중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학교에 대하여 적용하고 이 법은 다른 법률에 특

1) 한국연구재단에서 운영하는 한국연구자정보(Korean Reseacher Information) 사이트(www.kri.go.kr)로 교육부의 대학정보공시와 연동되는 시스템

2) 2020. 12. 21.부터 연구활동의 논문실적 증빙을 위하여 논문실적시스템(KRIMS)에 등록하도록 「교원업적평가 규정」 제9조 제1항을 개정(2018. 11. 16., 규정 제399호)

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로서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공립학교에 대하여 준용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르면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로서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공립학교에 대하여 이 규정을 준용할 때에는 “국립대학”은 “공립대학”으로 하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로, “교육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본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에 따르면 국립대학의 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80일 전까지 해당 국립대학의 대학회계 예산 편성에 관한 지침을, 개시 5일 전까지 국립대학의 대학회계 예산 집행에 관한 지침을 각각 정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립대학의 장이 대학회계 예산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지침을 정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매년 국립대학의 장에게 통보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교육부의 「국립대학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Ⅲ 행정사항 3.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관련 가이드라인 편에 따르면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최하위 등급을 부여받지 않도록 유의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도립대학교는 2018년부터 2022년 2월까지 [표 2] “논문실적시스템(KRIMS)에 등록된 논문 및 저서 현황” 및 [별표 1] “논문실적시스템(KRIMS)에 등록된 논문 및 저서 세부 명세”같이 2018년에는 58편, 2019년에는 47편, 2020년에는 60편, 2021년에는 63편, 2022. 2월까지 2편 등 총 230편이 논문실적시스템(KRIMS)에 등록·관리하고 있다.

[표 2] 논문실적시스템에 등록된 논문 및 저서 현황(2018년~2022. 2월까지)

총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 2월		
계	논문	저서	소계	논문	저서	소계	논문	저서	소계	논문	저서	소계	논문	저서	소계	논문	저서
230	194	36	58	40	18	47	40	7	60	52	8	63	60	3	2	2	0

자료 : 도립대학교 제출자료 재구성

따라서 도립대학교는 2019년부터 2022. 2월까지 매년 교원업적을 평가할 때

에는 「교원업적평가 규정」에 따라 논문표절검사 결과확인서를 제출받도록 하여야 하고, 수탁 연구보고서의 경우에는 6개월 이상 지방정부·공공기관 및 산업체로부터 수탁받은 연구보고서에 한하여 평가하여야 하고, 2021년부터는 논문실적시스템(KRIMS)에 등록되어 있는 논문 및 저서에 한하여 평가를 하여야 하며, 연구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국립대학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등에 따라 최하위 등급을 부여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도립대학교(교무기획처)는 2019년부터 2022. 2월까지 전임교원에 대상으로 교원업적평가를 실시하면서 2021년부터 논문실적시스템(KRIMS)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논문에 대하여 교원업적평가에서 제외하여야 하는데도 [표 3] “교원업적평가 시 연구활동 부적정 평가 현황” 및 [별표 2]부터 [별표 5]까지 “교원업적 연구활동 부적정 평가 명세”와 같이 평가하면서 논문실적시스템(KRIMS)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전임교원 5명의 논문 12편을 제외하지 않은 채 부적정하게 평가하였다.

[표 3] 교원업적평가 시 연구활동 부적정 평가 현황(2019년~2022. 2월까지)

평가실시일	평가대상 연도	평가대상	부적정 평가 현황	
			대상	부적정 평가 내용
계		176명	52명	▸ 논문실적시스템(KRIMS) 미등록 : 12편 (5명) ▸ 논문표절검사 결과 확인서 미제출 : 104편 (40명) ▸ 수탁연구보고서 미해당 : 30편 (8명) * (중복 1명) 논문표절검사 미제출 + 수탁연구보고서 미해당
2019.01.30.	2018학년도	전임교원 45명	11명	▸ 논문표절검사 결과 확인서 미제출 : 31편 (11명)
2020.01.30.	2019학년도	전임교원 45명	16명	▸ 논문표절검사 결과 확인서 미제출 : 25편 (14명) ▸ 수탁연구보고서 미해당 : 7편 (2명)
2021.02.17. ~2021.02.22.	2020학년도	전임교원 42명	14명	▸ 논문실적시스템(KRIMS) 미등록 : 12편 (5명) ▸ 논문표절검사 결과 확인서 미제출 : 26편 (6명) ▸ 수탁연구보고서 미해당 : 10편 (4명) * (중복 1명) 논문표절검사 미제출 + 수탁연구보고서 미해당
2022.02.16. ~2022.02.18	2021학년도	전임교원 44명	11명	▸ 논문표절검사 결과 확인서 미제출 : 22편 (9명) ▸ 수탁연구보고서 미해당 : 13편 (2명)

자료 : 도립대학교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관련 규정에 논문표절검사 결과 확인서 등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실적으로 불인정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2019년부터 2022. 2월까지 제출받은 논문

104편에 대하여 논문표절검사 결과 확인서를 제출하지도 않았는데도 평가에서 제외하지 않은 채 평가를 실시하였고, 연구기간 6개월 이상의 지방정부·공공기관 및 산업체 수탁 연구보고서에 해당하지 않는 고용노동부의 유니테크사업 일학습병행제 사업 등 재정지원사업 30건을 제외하지 않은 채 부적정하게 평가를 실시하였다.

한편 2022. 9. 26.부터 10. 5.까지 실시된 도립대학교 추가 감사기간 중 논문표절검사 결과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논문 104편에 대하여 논문표절검사결과를 제출하도록 하여 그 중 26편에 대하여 논문표절검사 결과를 제출받았다.

또한 논문표절검사 결과확인서 등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최하위 등급을 부여받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데도 2019년부터 2022년 2월까지 [표 4] “교원업적평가 시 연구활동 점수 부당 부여 현황”과 같이 2019년에 교원업적을 평가하면서 교수 ○○○가 연구실적이 없는데도 연구실적물의 양 6점과 연구실적물의 질 6점 총 12점을 부여하는 등 연구실적이 없는 총 13명의 교원에게 연구활동에 12점을 부여하여 부적정하게 평가하였다.

[표 4] 교원업적평가 시 연구활동 점수 부당 부여 현황(2019년~2022. 2월까지)

연번	성명	소속	평가연도 (평가 대상연도)				비고
			2019년 (2018학년도)	2020년 (2019학년도)	2021년 (2020학년도)	2022년 (2021학년도)	
합계	13명		6명	7명	8명	8명	일괄 12점 부여
1	○○○	유아교육과	-	-	연구실적 없음	연구실적 없음	
2	○○○	기계융합학과	연구실적 없음	-	-	-	
3	○○○	항공호텔관광과	-	연구실적 없음	-	-	(공모전 등 없음)
4	○○	공연음악과	-		연구실적 없음	-	
5	○○○	유아교육과	-	연구실적 없음	-	-	
6	○○○	소방안전관리과	-	연구실적 없음	연구실적 없음	연구실적 없음	
7	○○○	도예차문화과	연구실적 없음	-	연구실적 없음	연구실적 없음	(공모전 등 없음)
8	○○○	보건의료정보과	연구실적 없음	-	-	연구실적 없음	
9	○○○	교양과정부	연구실적 없음	연구실적 없음	-	연구실적 없음	
10	○○○	한옥건축과	연구실적 없음	연구실적 없음	연구실적 없음	연구실적 없음	(공모전 등 없음)
11	○○○	한옥건축과	연구실적 없음	연구실적 없음	연구실적 없음	연구실적 없음	(공모전 등 없음)
12	○○○	토목환경과	-	연구실적 없음	연구실적 없음	연구실적 없음	
13	○○○	사회복지과	-	-	연구실적 없음	-	

자료 : 도립대학교 제출자료 재구성

그로 인하여 교원업적 평가가 규정을 위반한 채 평가되어 과대 평가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2. 교원의 연구활동 평가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근거)

「교원업적평가규정」 제2조에 따르면 교원업적이라 함은 교원의 교육활동, 연구활동, 봉사활동, 수범활동 및 대학발전 기여도 등에 관한 전반적인 실적이라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규정 제5조에 따르면 평가는 연 1회 실시하며, 전년도의 3월 1일부터 그 다음해 2월 28일까지의 업적을 평가하며, 평가는 매년 1월부터 실시하고, 2월말까지 완료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규정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업적평가를 심사하기 위하여 교원업적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두도록 되어 있고, 제2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교무기획처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총장이 전임교원 중에서 위촉하는 위원 등 5인 이상 11인 이내로 구성하며, 제7항에 따르면 실적심사대상이 되는 교원은 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한편 도립대학교는 2019년부터 2022. 2월까지 교원업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전임교원 11명 이내의 위원회를 구성하고 전임교원 1명의 업적에 대하여 평가위원 3명이 평가를 하고 있다.

따라서 도립대학교는 매년 교원의 업적을 평가할 때는 「교원업적평가규정」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하되, 실적 심사대상이 되는 교원은 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하지 않도록 하여 공정한 심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도립대학교(교무기획처)는 2019년부터 2022. 2월까지 4차례 교원업적평가를 심사하면서 「교원업적평가규정」에 따라 전임교원 전원이 교원업적 평가대상에 해당되어 전임교원을 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할 수 없는데도, [표 5] “교원

업적평가위원회 부적정 구성 현황"과 같이 평가대상에 포함된 전임교원을 포함하여 최소 10명에서 최대 11명까지 위원회를 부적정하게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표 5] 교원업적평가위원회 부적정 구성 현황(2019년~2022. 3월)

심의일 (심의방법)	위원회 구성 현황	평가대상연도 (평가대상기간)	평가대상자
2019.01.30. (대면)	(11명) ○○○(위원장), ○○○, ○○○, ○○○, ○○○, ○○○, ○○○, ○○○, ○○○, ○○○	2018학년도 (2018.03.~2019.02.)	전임교원 45명 (교수 37, 부교수 8)
2020.01.30. (대면)	(11명) ○○○(위원장), ○○○, ○○○, ○○○, ○○○, ○○○, ○○○, ○○○, ○○○, ○○○	2019학년도 (2019.03.~2020.02.)	전임교원 45명 (교수 40, 부교수 3, 조교수 2)
2021.02.17. ~2021.02.22. (서면)	(11명) ○○○(위원장), ○○○, ○○○, ○○○, ○○○,○○○, ○○○, ○○○, ○○○, ○○○	2020학년도 (2020.03.~2021.02.)	전임교원 42명 (교수 39, 부교수 1, 조교수 2)
2022.02.16. ~2022.02.18. (서면)	(10명) ○○○(위원장), ○○○, ○○○, ○○○, ○○○, ○○○, ○○○, ○○○, ○○○, ○○○	2021학년도 (2021.03.~2022.02.)	전임교원 44명 (교수 39, 부교수 1, 조교수 2)

자료 : 도립대학교 제출자료 재구성

그로 인하여 규정을 위반하여 교원업적 평가 대상인 교원이 평가위원으로 선임되어 평가를 실시하여 공정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전남도립대학교는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전남도립대학교 총장**은

① 앞으로 교원업적을 평가할 때에는 「교원업적평가규정」을 준수하여 논문실적은 논문실적시스템(KRIMS)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논문표절검사 결과확인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만 평가하도록 하며, 논문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점수가 부여되지 않도록 교원업적평가 업무를 철저히 하고,**(주의)**

② 「교원업적평가규정」 제6조 제2항을 개정하여 교원업적 평가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외부전문가, 직원 등으로 교원업적평가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여 실적심사 대상 교원은 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제도상 개선)**

[별표 1] ~ [별표 5] 생 략

전 라 남 도

기관경고·경고요구

제 목 교육부의 2021년 일반재정지원대학 선정에 대한 소극 대응

관계기관(부서) 전남도립대학교(교무기획처)

경 고 대 상 자 ① 전남도립대학교 ○○○○○○○과 ○○ ○○○

② 전남도립대학교 ○○○○○○○과 ○○ ○○○

내 용

1. 업무개요

전남도립대학교(이하 “도립대학교”라고 한다)는 교육부의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Ⅰ유형(자율개선대학) 지원대학으로 선정되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8,768백만원[1]의 국비를 지원받았으나, 2021년 대학기본역량 진단 결과 일반재정지원 대학으로 선정되지 못하여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교육부의 대학혁신지원사업비 등 국비[2]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교육부의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 일반재정지원 대학으로 선정되지 못한 대학을 대상으로 평가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일반재정지원 추가대학에도 선정되지 못하여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일반재정지원 대학 추가 선정에 따른 국비[3]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

---

1) 총 8,768백만원(자율협약형 5,657백만원, 후진학선도형 3,111백만원)

2) 2021. 12월 교육부 ○○○○ ○○○○사업(2022.~2024.) 기본계획 시안 Ⅳ. 세부추진계획(안)
- 2022년 총 3,880억원으로 97개교 지원(1개교당 평균 40억원)

3) 교육부 ○○○○○○○과-935(2022. 3. 10.), 2022~2024년 추가선정 ○○○○○○○○ ○○○○○○○○○사업 지원계획 안내 - 2022년에는 총 140억원으로 7개교 지원(1개교당 평균 20억원)하고 2023년부터는 ○○○○ ○○○○ 사업에 포함하여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

○○ ○○○○는 2019. 3. 1.부터 2020. 2. 28.까지 ○○○○○실에 교육부의 대학 기본역량 진단 업무를 총괄하는 ○○○○○○장으로 근무하였고, 교수 ○○○○은 2020. 3. 1.부터 2021. 5. 31.까지 교육부의 대학 기본역량 진단 업무를 총괄하는 ○○○○○○(실)장으로 근무하였다.

2. 교육부의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 대한 소극 대응

가. 관계법령(판단근거)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 제3항에 따르면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인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상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라고 되어 있다.

그리고 2019. 11월 행정안전부의 소극행정 No! 적극행정, 국민이 행복합니다.(적극행정 면책·소극행정 사례집) 3. 소극행정 편에 부작위은 공무원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행해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을 의미하고 직무태만은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노력이나 주의의무를 기울이지 않고 업무를 부실·부당하게 처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다.

또한 교육부는 2019. 8. 13. 전국 대학에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기본계획(시안) 대학 의견수렴 개최 안내를 통보[4]하였고 같은 해 12. 5.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기본계획 및 진단 편람(시안) 설명회 안내를 통보[5]하면서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지표 배점[6]에 대하여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배점에 비해 전임교원 확보율의 배점을 8점 상향(7점→15점)하였으며 신입생·재학생 충

---

4) 교육부 ○○○○○○○과-10184(2019. 8. 13.), (○○○○) 2021년 ○○ ○○○○ ○○ ○○○○(시안) ○○ ○○○○ 개최 안내

5) 교육부 ○○○○○○○과-18308(2019. 12. 5.), ○○○○ 2021년 ○○ ○○○○ ○○ ○○○○ ○ ○○ ○○(시안) ○○회 안내

6) 정량지표(55점) : 학생충원율(20점), 교원확보율(15점), 졸업생취업률(10점), 교육비환원율(5점), 수업관리(5점)
정성지표(43점) : 교육과정운영(18점), 학생학습역량지원 등 학생지원(10점), 산학협력활동(4점), 수업평가(4점), 발전계획의성과(4점), 대학운영의 책무성(3점)

원율의 배점을 12점 상향(8점→20점)하여 교원 확보율과 학생 충원율의 비중이 높아진 점을 포함하여 [별표 1] 과 같이 “2021년도 전문대학 기본역량 진단 지표(안) 명세”를 통보하였다.

따라서 도립대학교는 2018년에 교육부의 대학 기본역량 진단을 받았고 3년 주기로 실시되어 2021년에 최근 3년간 자료[7]를 근거로 대학 기본역량 진단이 실시될 것을 미리 인지하고 있으므로, 정량 지표에서 배점 비중이 높아진 교원 확보율과 학생 충원율에 대한 점수를 높이기 위하여 「전라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 및 「학과평가규정」에 따라 학과 평가를 철저히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학과평가규정」을 준수하여 학과의 폐지 통·폐합, 입학정원 조정 등을 하는 등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편람」에 따라 진단 요소별로 면밀하게 분석하여 높은 점수를 받아 일반재정지원 대학으로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했다.

한편 도립대학교는 교육부로부터 2021. 8. 17. 총 285개교[8]에 대한 2021년 대학 기본역량을 진단하여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일반재정지원 대학을 선정하면서 총 233개교[9]를 선정하였다는 내용을 통보받았고, 도립대학교는 [표 1]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지표별 정량·정성 결과 현황”과 같이 선정된 대학의 권역 평균과 비교 시 정량 평가에서 0.000점이 낮은 점수를 받았고 정성평가에선 0.000점이 낮은 점수를 받아 총 0.000점을 낮게 받아 전국 7개 도립대학교[10]중에서 유일하게 탈락하게 되었다.

[표 1]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지표별 정량·정성 결과 현황

(단위 : 점)

구분	배점	도립대 점수(A)	○○○○ ○○○○[11](B)	차이(A-B)	주요감점 내용
	98	00.000	00.000	△0.000	
정량	55	00.000	00.000	△0.000	교원 확보율, 학생충원율, 졸업생 취업율
정성	43	00.000	00.000	△0.000	산학협력활동, 학생학습역량 지원

자료 : 도립대학교 제출자료 재구성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7) 정량지표는 최근 3년간 공시자료를 활용하며 2018년 진단 이후 3개년 자료를 활용하며 일부지표는 특성에 따라 기준 시점 상이
8) 총 285개교 대상(일반대학 161개교, 전문대학 134개교, 단 재정지원제한대학 18개교 제외)
9) 총 233개교 선정(일반대학 136개교, 전문대학 97개교)
10) ○○○○대학교, ○○○○대학교, ○○○○○○○대학, ○○○○○○○대학, ○○○○대학교, ○○○○대학교, ○○○○대학교
11) 권역 평균은 조치 권역(5대 권역)을 기준으로 도립대학교가 속한 권역의 평균

그런데 도립대학교(교무기획처)는 2019. 8. 13. 교육부로부터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기본계획(시안) 대학 의견수렴 개최 안내를 통보[12]받고도 2020. 7. 21.까지 약 11개월 동안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가 2020. 7. 22.에서야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대비를 목적으로 ○○ ○○○○○ ○○ ○○ 계획(안)을 수립[13]하면서 [표 2] “2020. 7. 22. 구성된 자체진단위원회 구성 현황”과 같이 ○○○○○○장 ○○○ 등 13명으로 구성된 자체진단위원회를 구성하였으나 단 1회도 자체진단위원회를 개최하지 않는 등 교육부 진단에 대한 대비를 전혀 하지 않아 업무를 태만히 하였다.

[표 2] 2020. 7. 22. 구성된 자체진단위원회 구성 현황

연번	구분	소속	직위	성명	연번	구분	소속	직위	성명
	13명				7	위원	대학혁신지원사업단	○○	○○○
1	위원장	교무기획처	○○	○○○	8	〃	유아교육과	○○	○○○
2	위원	사무국	○○	○○○	9	〃	기계융합학과	○○	○○○
3	〃	입학학생처	○○	○○○	10	〃	소방안전관리과	○○	○○○
4	〃	취업지원센터	○○○	○○○	11	〃	자동차학과	○○	○○○
5	〃	산학협력단	○○	○○○	12	〃	전라남도의회	○○○	○○○
6	〃	도서관	○○	○○○	13	〃	광주전남연구원	○○○	○○○

자료 : 도립대학교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2021. 3. 16. 2021년 ○○○○ ○○○○ ○○○○ ○○계획(안)을 수립[14]하면서 2020. 7. 22.에 구성된 자체진단위원회가 있는데도 아무런 사유없이 [표 3] “2021. 3. 16. 구성된 자체진단위원회 위원회 구성 현황”과 같이 ○○○○ 단장 ○○○ 등 10명으로 구성된 자체진단위원회를 중복하여 구성하였고, [표 4] “진단보고서 준비위원회 및 정량값 입력팀”을 구성하여 ○○○○처 ○○○ 등 11명으로 진단보고서 준비위원회로 하여금 정량평가를 준비하도록 하였고, ○○○○처 ○○○ 등 6명으로 구성된 정량값 입력팀으로 하여금 정량값만을 입력하도록 하는 등 교육부의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의 정량지표 요소인 전임교원 확보를 위한 교원수 조정, 신입생·재학생 충원율 조정 등에 대한 조치 계획은

12) ○○부 ○○○○○○○과-10184(2019. 8. 13.), (○○○○) 2021년 ○○ ○○○○ ○○ ○○○○(시안) ○○ ○○○○ ○○ 안내

13) 도립대학교 ○○○○처-305(2020. 7. 22.), 2021년 ○○○○○○○○ ○○계획(안)
(기안자) ○○○ ○○○ - ○○○○○장 ○○○ - ○○ ○○○

14) 도립대학교 ○○○○처-1649(2021. 3. 16.), 2021년 ○○○○○○○○ ○○○○ ○○계획(안)
(기안자) ○○○○○장 ○○○ - ○○○○○장 ○○○ - ○○ ○○○

전혀 수립하지 않았으며 정량지료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등 업무를 태만히 하였다.

[표 3] 2021. 3. 16. 구성된 자체진단위원회 구성 현황

연번	구분	소속	직위	성명	연번	구분	소속	직위	성명
	10명				6	위원	평생교육원	○○	○○○
1	위원장	산학협력단	○○	○○○	7	〃	드론기계학과	○○	○○○
2	진단관	교무기획처	○○	○○○	8	〃	항공호텔관광과	○○	○○○
3	위원	입학학생처	○○	○○○	9	〃	기획정보팀	○○	○○○
4	〃	취업지원센터	○○○	○○○	10	〃	전라남도의회	○○○	○○○
5	〃	도서관	○○	○○○			이하여백		

자료 : 도립대학교 제출자료 재구성

[표 4] 진단보고서 준비위원회 및 정량값 입력팀 구성 현황(2021. 3. 16.구성)

연번	구분	업무내용	소속	성명	비고
	진단보고서 준비위원	11명			
1	〃	진단업무기획 및 운영	교무기획처	○○○	정량분야 준비
2	〃	교육과정운영	〃	○○○	
3	〃	학생학습역량지원	〃	○○○	
4	〃	대학발전계획	〃	○○○	
5	〃	대학운영의 책무성	사무국	○○○	
6	〃	취창업지원	취업지원센터	○○○	
7	〃	진로심리상담지원	〃	○○○	
8	〃	산학협력구축, 운영	산학협력단	○○○	
9	〃	산학협력활동 개선 및 환류	〃	○○○	
10	〃	편집 및 디자인	〃	○○○	
11	〃	편집 및 디자인	〃	○○○	
	정량값 입력팀	5명			
1	〃	전임교원 확보율	교무기획처	○○○	정량값 입력
2	〃	교원 확보율, 수업관리 및 학생평가	〃	○○○	
3	〃	재학생 충원율	〃	○○○	
4	〃	교육비 환원율	사무국	○○○	
5	〃	신입생 충원율	입학학생처	○○○	
6	〃	졸업생 취업률, 유지취업률	취업지원센터	○○○	

자료 : 도립대학교 제출자료 재구성

특히 교육부의 대학 기본역량 진단 최종 진단 결과에 따르면 [표 5]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지표별 평가 결과(요약) 현황” 및 [별표 2]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지표별 평가결과 명세”와 같이 선정된 대학의 권역 평균과 비교 시 도립대학교의 교원 확보율 점수는 0.000점이 낮고 신입생·재학생 충원율 점수는 0.000점이 낮으며 졸업생 취업률·유지취업율 점수는 0.000점이 낮아 정량분야 5개 지표 중 3개 지표의 점수가 낮아 0.000점이 낮았다.

한편 교육부의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편람」 Ⅳ. 진단 지표에 따르면 전임교원 확보율의 평가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전임교원수를 전임교원 배정정원으로 나눈 값으로 평가[15]하도록 되어 있다.

[표 5]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지표별 평가 결과(요약) 현황

(단위 : 점)

구분	진단 지표	배점	도립대(A)	선정대학 권역평균[16](B)	차이(A-B)	주요감점 내용
	총계	98	00.000	00.000	△0.000	
정량	**소계**	**55**	**00.000**	**00.000**	**△0.000**	
	▸ 교원 확보율	15	00.000	00.000	△0.000	(전임교원 확보율)
	▸ 교육비 환원율	5	0.000	0.000	0.000	
	▸ 수업 관리 및 학생 평가	5	0.000	0.000	0.000	
	▸ 학생 충원율	20	00.000	00.000	△0.000	(신입생 충원율, 재학생 충원율)
	▸ 졸업생 취업률	10	0.000	0.000	△0.000	(유지 취업률)
정성	**소계**	**43**	**00.000**	**00.000**	**△0.000**	
	▸ 대학 구성원 참여·소통	3	0.000	0.000	0.000	
	▸ 교육과정 운영	18	00.000	00.000	△0.000	(현장중심전공 교육과정 체제 구축 및 운영)
	▸ 산학협력 활동	4	0.000	0.000	△0.000	(산학협력 지원체계 구축, 성과)
	▸ 특성화 계획 등 발전계획	2	0.000	0.000	0.000	
	▸ 자율지표	2	0.000	0.000	-	
	▸ 수업 관리 및 학생 평가	4	0.000	0.000	0.00	
	▸ 학생 학습역량 지원	4	0.000	0.000	△0.000	(학생학습역량 지원체계 구축, 실적)
	▸ 진로·심리상담 지원	3	0.000	0.000	△0.000	
	▸ 취·창업 지원	3	0.000	0.000	0.000	

자료 : 도립대학교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전라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제2조에 따르면 도립대학교의 전임교원 배정정원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53명으로 되어 있는 반면 도립대학교 전임교원수는 2019년 45명, 2020년 44명, 2021년 44명으로 [표 6] “도립대학교 전임교원 확보 현황”과 같이 전임교원 수 대비 전임교원 배정정원은 적게는 8명, 많게는 9명이 많은 정원으로 되어 있다.

15) 국·공립대 전임교원 확보율 점수 산출방법

< 연도별 점수 >

- 전임교원 확보율 연도별 국공립대 만점 기준 이상 대학: 9점
- 전임교원 확보율 연도별 국공립대 만점 기준 미만 대학: 9점 × (해당대학값÷연도별 국·공립대 만점기준)

< 최종 점수 > (2019년 점수+2020년 점수+2021년 점수) ÷ 3

< 연도별 전임교원 확보율 산출방법 > [전임교원수(명) ÷ 전임교원 배정정원(명)] ×100

16) 권역 평균은 조치 권역(5대 권역)을 기준으로 도립대학교가 속한 권역의 평균

[표 6] 도립대학교 전임교원 확보 현황(2019년~2021년)

(단위 : 명)

연도	전임교원 배정정원(A)	전임교원 현황(B)				비고(B-A)
		계	교수	부교수	조교수	
2019	53	45	35	8	2	△8
2020	53	44	39	3	2	△9
2021	53	44	39	1	4	△9

자료 : 도립대학교 제출자료 재구성

그런데 도립대학교(교무기획처)는 2021년 ○○ ○○○○ ○○에 대비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의 전임교원 수 조정 등을 하여야 했는데도, 평가대상 기간에 전임교원 정원을 조정하지 않고 있다가 교원 확보율 정량평가점수가 선정대학 권역 평균보다 0.000점을 낮게 평가받았으며, 2021년 ○○○○○○ ○○에서 탈락된 후에야 2022. 3. 31.「전라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상 전임교원 배정정원을 00명에서 00명으로 0명을 감원하는 뒤늦은 조치를 하였다.

또한 신입생 충원율[17] 및 재학생 충원율[18]에 대한 진단은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편람」 Ⅳ. 진단 지표에 따라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평가되므로, 「학과평가규정」을 준수하여 학과 평가를 철저히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학과구조조정규정」을 준수하여 학과의 폐지 통·폐합, 입학정원 조정 등을 하여 신입생·재학생 수가 확보되도록 하여야 했는데도, 2019년부터 2021년까지 [표 7] “ 학과평가 및 학과구조조정 부당 현황”과 같이 학과평가 및 학과구조조정을 부당하게 처리하였고, 2019년부터 2021년까지 [표 8] “도립대학교 신입생 등록현황”과 같이 입학정원을 전혀 조정하지 않아 신입생 등록률은 2019년 95.0%, 2020년 91.8%, 2021년도 83.0%로 계속 하락하고 있었고, [표 9] “도립대학교 재학생 충원 현황”과 같이 재학생 충원율도 2019년 83.5%, 2020년 83.9%, 2021년도 77.1%로 하락하여 정량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표 7] 학과평가 및 학과구조조정 부당 현황(2019.1월~2021.2월)

17) 신입생 충원율 산출방법
- 신입생 충원율 비수도권별 만점 기준 이상 대학 : 12점
- 신입생 충원율 비수도권별 만점 기준 미만 대학 : 12점×(해당대학3년평균/비수도권만점기준)

18) 재학생 충원율 산충방법
- 재학생 충원율 비수도권별 만점 기준 이상 대학 : 8점
- 재학생 충원율 비수도권별 만점 기준 미만 대학 : 8점×(해당대학3년평균/비수도권만점기준)

평가연월	도립대의 부적정 평가	정당한 평가	부당 사유
2019.1.	○○○○○○○○○과 ○○○○○과 ○○○○○과	○○○○○과 ○○○○○과 ○○○○○○○과(B등급)	- 신입생 충원률 70%미만인 ○○○○○과 폐지대상 - '18년 폐과승인 받은 ○○○○○○○○○과를 구조조정 대상으로 지정 - 하위 3개학과 변경(○○○○○○○과 제외됨)
2020.1.	○○○○○과 ○○○○○○○○과 ○○○○○○○과(C등급)	○○○○○○○○과(B등급) ○○○○○○○과 ○○○○○○○과(B등급)	- 공연음악과(편제미완성 학과)를 부당 평가 - 하위 3개학과 변경(○○○○○○○과 제외됨)₩ - ○○○○○○○과 폐지 대상
2021.2.	○○○○○○○과(C등급) ○○○○○○○○과(B등급) ○○○○○○과		- ○○○○○○○과 폐지 대상

자료 : 도립대학교 제출자료 재구성

[표 8] 도립대학교 신입생 등록현황(2019~2021년)

(단위 : 명, %)

2019년			2020년			2021년		
입학정원	등록인원	등록률	입학정원	등록인원	등록률	입학정원	등록인원	등록률
705	670	95.0	705	647	91.8	705	585	83.0

자료 : 도립대학교 제출자료 재구성(매년 3월 1일 기준)

[표 9] 도립대학교 재학생 충원현황(2019~2021년)

(단위 : 명, %)

2019년			2020년			2021년		
학생정원	충원수	충원율	학생정원	충원수	충원율	학생정원	충원수	충원율
1,510	1,261	83.5	1.505	1.262	83.9	1.515	1.168	77.1

자료 : 도립대학교 제출자료 재구성(매년 4월 1일 기준)

그리고 2020년부터 2021년까지 [표 10] "전국 도립대학교 입학경쟁률및 신입생·재학생 충원율 현황"과 같이 2021년도 ○○○○○○○교 등 6개 도립대의 평균 입학경쟁률은 1:4.2이며, 신입생 충원율은 97.8%인 반면 도립대학교의 입학경쟁률은 1:2.2, 신입생 충원율은 83%에 불과한데도 입학생·재학생 충원을 위한 특별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업무를 태만히 하였다.

[표 10] 전국 도립대학교 입학경쟁률 및 신입생·재학생 충원율 현황(2020~2021년)

학 교		2020년				2021년			
		입학 정원	입학 경쟁률	신입생 충원율(%)	재학생 충원율(%)	입학 정원	입학 경쟁률	신입생 충원율(%)	재학생 충원율(%)
전남도립대학교		705	3.3	91.8	77.3	705	2.2	83.0	71.4
6개 대학 평균			6.1	99.9	88.9		4.2	97.8	83.9
	○○○○○대학교	312	5.5	100	87.1	312	3.5	100	80.3
	○○○○○○○대학	405	4.2	100	90.2	387	4.0	100	88.9
	○○○○○○○대학	375	4.9	100	90.3	375	3.5	100	91.4
	○○○○○대학교	364	5.3	100	83.7	364	3.7	92.9	79.7
	○○○○○대학교	456	7.2	100	94.8	456	5.6	98.0	83.0
	○○○○○대학교	410	9.4	99.3	87.6	410	4.9	95.9	80.4

자료 : 도립대학교 제출자료 재구성

한편 도립대학교(교무기획처)는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의 평가기간 동안 학생 정원조정 등 학생 충원율에 대한 정량 지표의 점수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가 교육부의 대학 기본역량 진단기간에 해당되지 않는 2021. 3. 23. 2022학년도 입학정원 705명에서 60명을 감원하여 645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교육부의 승인[19]을 받았고, 2023학년도 입학정원 645명에서 195명을 감원하여 450명으로 조정하는 승인[20]을 2022. 3. 31. 받았다.

그로 인하여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지표별 평가결과 선정대학 권역 평균은 00.000점인데 도립대학교는 정량지표에서 0.000점과 정성지표에서 0.000점이 낮아 총 0.000점이 낮은 00.000점을 받았고, 특히 적시에 전임교원 배정 정원, 신입생 정원을 조정하지 않아 타 대학과 비교하여 정량지표에서 저조한 점수를 받아 교육부로부터 일반재정지원 대학으로 선정되지 못하여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교육부의 대학혁신지원사업비 등 약 000억원을 지원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3. 교육부의 2021년 일반재정지원 대학 추가선정에 대한 소극 대응

가. 관계법령(판단근거)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19) 교육부 ○○○○○○○과-0000(2021.3.23.), 2022학년도 학생정원 조정 결과 통보(전남도립대)
20) 교육부 ○○○○○○○과-0000(2022.3.31.), 2023학년도 학생정원 조정 결과 통보(전남도립대)

또한「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2조 제3항에 따르면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인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상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라고 되어 있다.

그리고 2019. 11월 행정안전부의 소극행정 No! 적극행정, 국민이 행복합니다.(적극행정 면책·소극행정 사례집) 3. 소극행정 편에 부작위은 공무원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행해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을 의미하고 직무태만은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노력이나 주의의무를 기울이지 않고 업무를 부실·부당하게 처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다.

한편 교육부는 2022. 1. 4. 교육부의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 일반재정지원 대학으로 선정되지 못한 대학을 대상으로 일반재정지원 추가 선정계획을 통보[21]하면서 2022. 3월 말까지 대학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였고, 지표 비중은 정량지표 60점과 정성지표 40점이며 정량지표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학생충원율(28점), 교원확보율(17점), 졸업생 취업률(10점), 교육비 환원율(5점)에 대하여 평가하며 정성지표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교양교육과정, 전공 교육과정, 교수·학습방법을 중심으로 교육혁신전략을 평가할 계획임을 통보하였으며, 2022. 1. 27. 교육부 주관으로 일반재정지원 대학 추가 선정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22]하였고, 2022. 2. 11. 일반재정지원대학 추가 선정 평가 편람을 통보하였다.

따라서 도립대학교는 교육부의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 일반재정지원 대학으로 선정되지 못하여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대학혁신지원사업비 등을 지원받지 못하므로 금회 실시되는 교육부의 일반재정지원 추가에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했고, 특히 교육부의 일반재정지원 대학 추가 평가항목 중에서 정량 평가는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평가 항목과 연계되어 신입생·재학생 충원율, 교원 확보율 등 정량 평가 지표를 보완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하여 교

21) 교육부 ○○○○○○○과-00(2000. 0. 0.), 2022년~2024년 일반재정지원대학 추가 선정 계획 알림
22) 일반재정지원 대학 추가 선정 설명회 참석
- 2000. 0. 00.(○) 00:00 / 서울 ○○○2 ○○○○ ○○○○○ / ○○○○○장 ○○○, ○○○장 ○○○

육혁신전략 분야인 정성평가 평가지표에 맞춰 지표별로 면밀히 분석하여 높은 점수를 받아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했다.

한편 교육부는 2022. 6. 3. 2022년 일반재정지원 대학 추가 선정 결과를 통보하면서 전문대학 7개교[23]를 포함하여 총 13개교[24]를 선정하여 통보하였고, 도립대학교는 [표 11] “도립대학교 일반재정지원대학 추가 선정 결과 요소별 결과 현황”과 같이 정량분야 60점 중 00.0000점을 받고, 정성분야 40점 중 00.000점을 받아 총 00.000점을 획득하는 데 그쳐 교육부의 일반재정지원 대학 추가선정 대상에서 탈락하였다.

[표 11] 도립대학교 일반재정지원대학 추가 선정 결과 요소별 결과 현황

(단위 : 점)

구분	항목	평가지표	배점	획득점수	비고
		총계	100	00.000	
정량[25]	교육여건	소계	60	00.000	
		▸ 신입생 충원율	16	00.000	
		▸ 재학생 충원율	12	00.000	
		▸ 교원 확보율	17	00.000	
		▸ 교육비 환원율	5	0.000	
		▸ 졸업생 취업률	10	0.000	
정성	교육혁신전략	소계	40	00.000	
		▸ 대학교육혁신방향 및 전략	12	00.000	
		▸ 직업기초 및 교양교육과정 혁신	10	0.000	
		▸ 현장중심의 전공교육과정 혁신	18	00.000	

자료 : 도립대학교 제출자료 재구성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도립대학교(교무기획처)는 2022. 1. 4. 교육부로부터 일반재정지원 추가 선정계획을 통보받은 후 2022. 2. 15. 교육부에 일반재정지원대학 추가선정 평가 신청서를 제출한 것 이외에는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가 2022. 3. 8.에서야 정성평가 분야인 교육혁신전략 3개 항목에 대비를 목적으로 [표 12] “교육혁신추진위원회 구성 현황”과 같이 도서관장 ○○○ 교수 등 6명으로 구성한 후 2022. 3. 8.부터 2022. 4. 20까지 약 35일간만 준비하여 교육부에 평가 자료를 제출하는 등 교육부의 평가 업무 준비를 태만히 하였다.

23) ○○○○○○교, ○○○○교, ○○○○교, ○○○○교, ○○○○교, ○○○○○○교, ○○○○○○○○교
24) 총 52개교 대학(일반대학 25개교, 전문대학 27개교) / 총 13개교 선정(일반대학 6개교, 전문대학 7개교)
25) 정량평가 시 2개 지표 만점 충족시 0.3점 가점, 3개 지표 만점 충족시 0.6점 가점이 부여되나 도립대학교는 가점 없음

[표 12] 2022. 3. 8. 구성된 교육혁신추진위원회 구성 현황

연번	구분	소속	직위	성명	연번	구분	소속	직위	성명
	6명				4	위원	취업지원센터	○○장	○○○
1	위원장	도서관	○장	○○○	5	〃	산학협력단	○장	○○○
2	위원	교무기획처	○장	○○○	6	〃	산업디자인과	○장	○○○
3	〃	입학학생처	○장	○○○			이 하 여 백		

자료 : 도립대학교 제출자료 재구성

이에 대하여 정성분야의 3개 항목에 대한 ○○ ○○○의 의견은 [표 13] “2021년 ○○○○○○○○○ ○○ ○○ ○○○○ ○○ ○○○ 의견 현황”과 같이 평가자료의 준비 미흡으로 인한 연차별 계획없이 구체성 부족, 연계성 및 도출 과정 설명 부족, 업무 위주로 나열되어 체계성 파악 어려움, 지표명과 지표 구성 내용의 정합성이 떨어진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표 13] 도립대학교 ○○○○○○○○ ○○ ○○ ○○○○ ○○ ○○○ ○○의견(요약)

정성평가 지표	지표평가단 종합의견 요약
▸ 대학교육혁신방향 및 전략	생 략
▸ 직업기초 및 교양교육과정 혁신	생 략
▸ 현장중심의 전공교육과정 혁신	생 략

자료 : 도립대학교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교육부의 일반재정지원 대학 추가선정에 선정된 대학의 평균 점수는 약 00점[26]인데 비해 도립대학교는 정량분야 00.000점, 정성분야 00.000점으로 총 00.000점을 받아 약 0.0점이 낮은 점수를 받았고, 지표평가단으로부터 정성지표 평가에 대한 준비 미흡이라는 지적을 받는 등 정성지표 소극대응으로 인하여 추가 선정에서도 탈락되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교육부의 대학혁신지원사업비

26) 도립대학교 감사기간 동안 ○○부의 ○○○○○○ ○○ ○○ 선정된 7개 ○○대학의 점수를 유선으로 확인한 결과 약 00점 정도이며 정량·정성분야에 대한 구체적 점수는 미공개함

등 약 000억원[27]을 지원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전남도립대학교는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전남도립대학교 총장**에게 전남도립대학교에 대하여 교육부의 「대학 기본역량 진단」 등 재정적인 지원을 받는 평가에서 평가 항목을 세밀히 분석하여 평가기간 중에 관련 업무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아 전국 7개 도립대학교 중에서 유일하게 국비지원에서 탈락되어 경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기관경고)**

[별표 1] 생 략
[별표 2] 생 략

27) 2022년 평균 00억원, 2023년부터 2024년까지 평균 00억원

전 라 남 도
경 고 요 구

제　　목 책임시수 미달 교원 징계 및 부당 전보

관계기관(부서) 전남도립대학교(교무기획처)

경 고 대 상 자 전남도립대학교 ○○ ○○○

내　　용

1. 업무개요

전남도립대학교(이하 “도립대학교”라고 한다)는 「학칙 시행세칙」에 규정되어 있는 책임시수를 준수하지 않은 교원에 대하여 「책임시수 미준수 전임교원 제재 지침」에 따라 제재 조치를 하고 있다.

○○ ○○○은 2010. 00. 0.부터 2022. 00. 0. 감사일 현재까지 도립대학교 교수로 근무하고 있다.

2. 징계 등 제재 미조치

도립대학교는 2021년 2학기 ○○○○○과 ○○ ○○○(이하 “○○○”이라 한다)이 담당한 ○○○○○○○○○○(2학년), ○○○○○○○○○(1학년), ○○○○○○○○(1학년) 과목이 수강을 신청한 학생이 없이 폐강되어 책임시수를 준수하지 못한 ○○○○○과 ○○○에 대하여 2021. 00. 00. 징계에 상정하였으나 부결되었다.

가. 관계법령(판단근거)

「학칙 시행세칙」 제20조 제1항에 따르면 전임교원의 주당 책임시수는 9시간

으로 되어 있다.

또한「책임시수 미준수 전임교원 제재 지침」제2조에 따르면 해당년도 교육과정 편성시 책임시수를 충족하지 못하였거나, 책임시수를 만족하는 교육과정을 개설하였지만 개설강좌가 폐강된 경우, 책임시수 미달 교원은 책임시수 보충계획을 수립하여 총장에게 제출하고 다음 학년도까지 미달 시간을 보충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지침에 따르면 책임시수 미달 교원에 대하여는 [별표] “책임시수 미준수 전임교원에 대한 제재 조치”에서 정한 제재조치를 [표 1] “책임시수 미달 산출 공식 및 제재 조치 현황”과 같이 취하고,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유서를 제출받아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재 여부를 판단하도록 되어 있다.

[표 1] 책임시수 미달 산출 공식 및 제재 조치 현황

구 분	내용
책임시수 미달 산출 공식	○ 학기 단위로 책임시수를 적용하여 다음 공식에 의하여 개인별 미달시간을 산출 ○ 산출 공식 : (책임시수×15주) - (실제 강의시수×15주)
책임시수 미달 시간수에 따른 제재 조치	○ 학기당 미충족 시수 - 45시간 이하 : 주의 / 45시간 초과 90시간 이하 : 경고 / 90시간 초과 : 징계 ○ 1년 단위(최초 책임시수 미달학기 포함 2학기) - 연속하여 주의 2회 : 경고 / 연속하여 경고 1회 포함 제재 : 징계 ○ 2년 단위(최초 책임시수 미달학기 포함 4학기) - 주의 2회 : 경고 / 경고 1회 포함 제재 : 징계

자료 : 도립대학교 제출자료 재구성

한편 ○○○○○○과 ○○○○은 2000년 0학기에 본인이 담당한 ○○○○○○○○○○(2학년), ○○○○○○○○○(1학년), ○○○○○○○○(1학년) 과목에 대하여 수강 신청한 학생이 없이 폐강되어 2000년 0학기 전임교원의 주당 책임시수인 주 9시간, 총 135시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도립대학교는 책임시수를 준수하지 못한 전임교원에 대하여 그 사유별로 주의, 경고, 징계처분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학기당 90시간을 초과하여 충족하지 못한 교원에 대하여 징계하여야 하며, 책임시수 보충계획을 수립하여 총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다음 학년도까지 계획대로 미달 시간을 보

충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도립대학교(교무기획처)는 2021. 00. 0. ○○○○으로부터 2022년 1학기에 주 00시간 총 000시간의 책임시수 보충계획서와 복무관리 계획을 제출[28] 당시 교수연구 계획분야에서 제출일보다 먼저 수료한 2021. 5. 13.부터 2021. 10. 22.까지 ○○○○○○○○○협의회 주관의 인터넷 강의[29] 수료증 등 3건을 포함한 부적정한 계획서를 제출받았는데도 검토를 소홀히 하여 연수계획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하지 않는 등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또한 2021. 00. 00. 2021학년도 제0차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책임시수를 미준수한 ○○○에 대하여 징계(안)을 상정할 당시, 징계심의 유보 또는 연기하거나 수사와 별개로 징계절차 심의가 가능하다는 설명을 하지 않은 채 ○○○이 ○○들을 고소하여 수사 중에 있다는 사유로 이를 부결하였다.

그리고 2021. 00. 00. ○○○○으로부터 제출받은 책임시수 보충 및 복무관리 계획에 대하여 2022. 10. 5. 감사일 현재까지도 학생지도 계획이나 신입생 합격자 상담 계획에 따른 구체적인 실적이나 이행실태를 확인하지 않고 있다.

그로 인하여 책임시수를 준수하지 않는 교원에 대하여 수사 중이라는 사유로 실효성 있는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아 교원의 자질이 저하되고 책임시수 미준수 교원에 대한 제재에 관한 관련 지침이 무력화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3. 교양과정부로 전보 임용 부적정

도립대학교는 2000. 00. 00. 책임시수를 미준수한 ○○○을 ○○○○○○○에서 교무기획처 ○○○○○로 전보하였다.

가. 관계법령(판단근거)

「학과구조조정규정」 제5조에 따르면 총장은 매년 실시하는 학과평가결과에

---

28) 교무기획처에 제출한 공문 참조 : ○○○○○○○○ ○○○○ ○○○○○ 제출 / ○○○○○과-000(2000. 00. 0.)

29) 강의내용 : ①학습자 중심의 다양한 ○○○○ 러닝 수업 설계와 운영 방법(2021. 5. 13. 3시간), ②PPT 및 ○○○○○○○ 채널을 이용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 제작 및 활용(2021. 8. 19. 3시간), ③(온라인해외연수) ○○○○교육 분석 활용 방안과 개인 맞춤형 학습 과정(2021. 10. 22. 3시간)

따라 학과구조조정(폐지)을 확정한 경우 소속 학과의 전임교원을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공과 유사한 학과 또는 교무기획처 등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학칙」 제29조의2에 따르면 총장은 교양교과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교무기획처 소관으로 교양과정부를 두고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교양과정부운영규정」 제3조와 4조에 따르면 교양과정부는 학과구조조정에 따라 교무기획처로 배치된 전임교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도립대학교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학과평가결과에 따라 학과구조조정(폐지)을 확정한 경우에 한하여 소속 학과의 전임교원을 전공과 유사한 학과 또는 교무기획처 소관 교양과정부 등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도립대학교(교무기획처)는 「학과구조조정규정」에 따라 학과평가결과에 따라 학과구조조정(폐지)을 확정한 경우에만 소속 학과의 전임교원을 교무기획처 또는 교무기획처 소관 교양과정부 등으로 전보하도록 되어 있고, ○○○○○과[30]는 2021년도 학과구조조정(폐지)에 해당되지 않아 ○○○을 교무기획처 소관 ○○○○○ 등을 전보할 수 없는데도 2000. 00. 00. 책임시수를 미달한 ○○○을 ○○○○○과 ○○에서 교무기획처 소관 ○○○○부로 부당하게 전보 임용[31]하였다.

그로 인하여 책임시수를 미준수한 교원에 대해 규정을 위반한 채 ○○○○부로 부적정하게 전보하여 인사상 특혜를 주었고 ○○○○부의 질을 저하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4. 산학협력중점교원 임명 부적정

도립대학교는 2000. 0. 00. 책임시수를 미준수하고 ○○○○부로 부당 전보한 ○○○을 2000. 0. 0.부터 2000. 0. 00.까지 ○○○○○○교수로 지정하였다.

---

30) ○○○○○과는 2000. 3. 31. 교육부로부터 2000학년도 폐과 승인을 받음
31) 교무기획처-0000(2000. 00. 00.)

가. 관계법령(판단근거)

「전남도립대학교 산학협력중점교원 운영 규정」 제2조 제2항에 따르면 산학협력중점교원이란 산업체 경력자로서 산학협력을 통한 교육, 연구, 취·창업지원 활동을 중점으로 추진하고, 산학협력 실적 중심으로 평가받는 교원이라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규정 제7조에 따르면 지정형 산학협력중점교원을 희망하는 전임교원은 매 학년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지정형 산학협력중점교원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등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교무기획처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규정 제8조에 따르면 총장은 신청자의 신청자의 산학협력 활동 계획의 적정성, 본교 교원 운영의 적정성, 기타 산학협력중점교원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참조하여 전임교원 중에서 산학협력 교원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규정 제13조 등에 따르면 산학협력중점교원은 산학협력 교육 및 연구, 취업 및 창업 지원, 정책기획 및 봉사 등 산학협력 중점업무를 추진하고, 비전임 산학협력중점교원이 산학협력 실적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면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학칙 시행세칙」 제20조에 전임교원의 주당 책임시수는 9시간으로 하고, 보직교수인 산학협력중점교원의 주당 책임시수는 3시간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도립대학교는 산학협력중점교원을 희망하는 전임교원으로부터 매 학년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무기획처로 제출받아야 하고, 산학협력 교육 및 연구, 취업 및 창업 지원, 정책기획 및 봉사 등 산학협력 중점업무를 추진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도립대학교(교무기획처)는 전임교원이 2022년 1학기에 산학협력중점교원을 희망할 경우에는 다음 학년도 개시 3개월 전인 2021년 11월까지 신청서를 제출받아야 하는데도, ○○○으로부터 규정에서 정해진 접수 기한을 36일이

도과된 2022. 1. 6.에서야 신청서를 접수받아 2022. 3. 1.자로 산학협력중점교원[32]으로 부당 임명하였다.

또한 2022. 2. 25. ○○○을 산학협력중점교원으로 지정한 이후 2022. 3. 1.부터 2022. 8. 31.까지 산학협력 활동실적이 전혀 없는데도 산학협력중점교원을 면직하거나 산학협력 활동을 이행하도록 독려 등을 하지 않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그로 인하여 책임시수를 미준수한 교수 ○○○을 책임시수가 적은 보직으로 임명하여[표 2] “책임시수 보충계획 대비 실적현황”과 같이 2021. 11. 1. ○○○으로부터 제출받은 제출시수 보충계획서상 총 책임시수 000시간이 아닌 00시간만 준수하도록 하게 하여 2000년 0학기 총 000시간의 책임시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되어 효율적인 학사관리를 저해하였다.

[표 2] 책임시수 보충계획 대비 실적 현황

구분	책임시수 보충계획상 책임시수		산학협력중점교원 임명 이후 책임시수		미충족 시간 (A-B)
	주 책임시수	총 시간(A)	주 책임시수	총 시간(B)	
2000년 0학기	00	000	0	00	000시간

자료 : 도립대학교 제출자료 재구성

관계기관 의견 전남도립대학교는 감사결과에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전남도립대학교 총장**은 부적절한 책임시수 보충 계획서를 제출하고, 계획한 책임시수를 달성하지 못했으며, 산학협력중점교수로 선정되었으나 활동실적이 전무한 교수 ○○○을 경고하시기 바랍니다.**(경고)**

32) 산학협력중점교수 지정 계획(교수기획처-0000, 2022. 0. 00.)

전 라 남 도

징계·주의요구·통보

제 목 **「교원업적평가규정」부당 운영 및 제규정 관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전남도립대학교(교무기획처), 전남도립대학교(사무국)

징 계 대 상 자 전남도립대학교 ○○○○○○○과 ○○ ○○○

징 계 의 종 류 **경징계**

주 의 대 상 자 전남도립대학교 ○○ ○○○

내 용

1. 업무개요

전남도립대학교(이하 “도립대학교”라고 한다)는 「규정류 관리 규정」에 따라 [표 1] “규정 제·개정 및 폐지 현황”과 같이 2019년부터 2022년 8월까지 147건의 규정과 지침을 제·개정 또는 폐지하여 관리하고 있고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등 법령에 따라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영역별 지급액 등 관련 사항은 소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표 1] 규정 제·개정 및 폐지 현황(2019년~2022. 8월)

(단위 : 건)

구분	제 정	개 정	폐 지	비 고
합 계	120	22	5	
학 칙	21	-	-	
규 정	96	20	5	
지 침	3	2	-	

자료 : 도립대학교 제출자료 재구성

교수 ○○○는 2000. 0. 0.부터 2000. 0. 00.까지 ○○○○실에서 「교원업적평가규정」 제·개정을 총괄하는 ○○○○○장으로 근무하였고, ○○ ○○○는 2000. 0. 0.부터 2022. 10. 5. 감사일 현재까지 「교원업적평가규정」,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지급규정」 등 도립대학교의 제규정을 총괄하는 ○○으로 재직하고 있다.

2.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등급·지급율 등 규정 개정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근거)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립대학회계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르면 이 법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 중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학교에 대하여 적용하고,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로서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공립학교에 대하여 준용하며 이 경우 “국립대학”은 “공립대학”으로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로 본다고 되어 있다.

또한 「국립대학회계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르면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로서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공립학교에 대하여 이 규정을 준용할 때에는 국립대학”은 “공립대학”으로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로, “교육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본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국립대학회계법」 제28조에 따르면 국립대학의 장은 소속 교직원에게 대학회계의 재원으로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등을 위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국립대학회계법 시행규칙」 제22조 제6항에 따르면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을 지급에 따른 실적의 인정 기간 및 인정 방법, 영역별 지급액, 지급시기 등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의 지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과 제2항에 따른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대학의 장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도립대학교는 2018. 11. 29. 도립대학교 구조개편 방안을 수립하면서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이하 “교연비”라고 한다) 등급을 다등급화(3→5등급), 등급간 차등 지급율 확대(5%→22%), 개인별 취업·입시지도 결과를 20% 신설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의 결재를 받았다.

한편 도립대학교는 2019. 5. 13. 2019년 제2차 교수회에서 심의하는 안을 수립하면서 「교원업적평가규정」 제13조의2 제2항 교연비 각 등급별 차를 (1안) 5% 범위내로 한다 (2안) 2.5% 범위내로 한다는 2개의 지급(안) 중에서 변경·심의하는 내용으로 ○○ 결재[1]를 받아 상정하였고, 2019. 5. 13. 개최된 교수회에서 (2안)2.5%로 변경하는 안으로 의결하여 「교원업적평가규정」 제13조의2 제2항 교연비 각 등급별 차를 당초 S등급(140%), A등급(120%), B등급(100%), C등급(80%), D등급(60%)에서 S등급(105%), A등급(102.5%), B등급(100%), C등급(97.5%), D등급(95%)로 변경하도록 하는 교수회의 결과보고에 대한 결재[2]를 하였다.

또한 2019. 4. 23. 2019년 교연비 지급계획을 수립[3]하면서 전임교원 45명에게 교연비 각 등급별 차를 S등급(140%), A등급(120%), B등급(100%), C등급(80%), D등급(60%)으로 하여 지급하도록 할 계획으로 2019학년도 교연비 활동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공문으로 통보하였고, 2020. 1. 2. 2019학년도 교연비 지급실적을 제출[4]하도록 하면서 2019년 교연비 각 등급별 차를 S등급(105%), A등급(102.5%), B(100%), C등급(97.5%), D등급(95%)로 지급한다고 각 학과장에게 통보하였다.

그리고 2018. 11. 16.「교원업적평가규정」 제13조의2 제1항을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지급의 지급은 당해연도 평가결과에 따라 S,A,B,C,D 등급으로 구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차등지급하도록 하고, 제2항을 교연비 등급별 지급금액은 B등급을 기준으로 하며, 각 등급별 차는 20%~25% 범위내로 한다고 개정하

---

1) 도립대학교 ○○○○실-0000(2000.0.00.), 2019학년도 제0차 ○○회 심의자료
- (기안) ○○○ - (○○○○○장) ○○○ - (○○) ○○○
2) 도립대학교 ○○○○실-0000(2000.0.00.), 2019학년도 제0차 ○○회 결과보고
- (기안) ○○○ - (○○○○○장) ○○○ - (○○) ○○○
3) 도립대학교 ○○○○실-0000(2000.0.00.), 2019년 ○○·○○ ○ ○○○○○ ○○○○○ 제출요청
- (기안) ○○○ - (○○○○○장) ○○○
4) 도립대학교 ○○○○실-0(2000.0.0., 2019학년도 ○○·○○ 및 ○○○○비 ○○ ○○ 제출
- (기안) ○○○ - (○○○○○장) ○○○

였다.

아울러 2021. 8. 26.「교원업적평가규정」 제13조의2 제1항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지급의 지급은 당해연도 평가결과에 따라 S,A,B,C 등급으로 구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차등지급하도록 하고, 제2항을 교연비 각 등급별 차는 5% 범위내로 한다고 개정하였다.

또한「규정류 관리 규정」제6조 제1항에 따르면 제규정의 제정 및 제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입안은 규정별 소관부서에서 작성하며, 반드시 주관부서로 송부·검토를 거치도록 되어 있고, 제7조에 따르면 제규정 제정 및 개·폐 절차도는 [별표 1]과 같고 제규정의 제정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하며 의결된 제규정안은 총장의 결재를 얻어 확정하여 공포·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도립대학교는「국립대학회계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교연비 지급실적의 인정 기간, 인정 방법, 영역별 지급액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도지사와 협의한 규정을 정하여야 하고, 규정이 필요한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소관부서에서「교원업적평가규정」개정사항에 대한 입안을 작성하고 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포, 시행하여 제규정의 개정 절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도립대학교(교무기획처)는 2000. 00. 00. ○○○○에게 보고된 교연비 각 등급별 차 22%를 변경할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와 협의를 하여야 하는데도 ○○○○와 협의없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채 2000. 0. 0. 교연비 등급별 차를 2.5%로 변경하는 지급계획을 부당하게 수립하였다.

또한 2019년 제2차 교수회에서 교연비 등급별 차를 2.5%로 의결한 후 의결된 내용으로 교연비 등급별 차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관부서인 교무기획처에서 2018. 11. 16.에 개정된「교원업적평가규정」제13조2 제2항의 교연비 지급규정에 대한 개정(안)을 입안하고 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공포 등을 통해 규정을 개정한 후에 변경하여야 하는데도, 규정 개정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2020. 1. 2. 2019학년도 교연비 지급 실적을 제출[5]하도록 결재하여 교연비 등급

별 차를 2.5%로 부당 변경하였다.

그리고 2021. 8. 26.「교원업적평가규정」제13조2의 교연비 지급 등급 및 교연비 등급별 차를 개정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도 2018. 11. 29. 이후 일절 보고없이 2021. 8. 17. 교무위원회에 교연비 등급을 5등급에서 4등급으로 하고, 등급별 차를 20%~25%범위에서 5%범위로 축소하는 안을 상정하여 의결한 후 [표 2] "「교원업적평가규정」제13조의2(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지급 개정 현황"과 같이 2021. 8. 26.「교원업적평가규정」제13조2의 교연비 지급 규정을 교연비 등급을 5등급에서 4등급으로 하고, 등급별 차를 20%~25%범위에서 5%범위로 축소하도록 개정하였다.

[표 2]「교원업적평가규정」제13조의2(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지급) 개정 현황

<table>
<tr><th>현 행</th><th>개 정</th></tr>
<tr><td>제13조의2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지급) ①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의 지급은 당해연도 평가결과에 따라 S, A, B, C, D 등급으로 구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차등지급한다.
② 등급별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분포비율은 아래표와 같다.
<table>
<tr><th>구분 \ 등급</th><th>S</th><th>A</th><th>B</th><th>C</th><th>D</th><th>비고</th></tr>
<tr><td>교원대비 등급분포비율(%)</td><td>10</td><td>25</td><td>30</td><td>25</td><td>10</td><td></td></tr>
<tr><td>< 삭 제 ></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 지급금액은 B등급을 기준으로 하며, 각 등급별 차는 20%~25% 범위내로 한다.</td><td>제13조의2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지급) ①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의 지급은 당해연도 평가결과에 따라 S, A, B, C 등급으로 구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차등지급한다.
② 등급별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분포비율은 아래표와 같다.
<table>
<tr><th>구분 \ 등급</th><th>S</th><th>A</th><th>B</th><th>C</th><th>비고</th></tr>
<tr><td>교원대비 등급분포비율(%)</td><td>10</td><td>40</td><td>40</td><td>10</td><td></td></tr>
<tr><td>< 삭 제 ></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 지급금액은 B등급을 기준으로 하며, 각 등급별 차는 5% 범위 내로 한다.</td></tr>
</table>

자료 : 도립대학교 제출자료 재구성

아울러 교연비 인정방법 등 세부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라 ○○○와 협의하여 정하여 하는데도 ○○○와 협의없이 2022. 4. 13. 2022학년도 제1차 교무위원회[6]에서「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지급규정」제8조(평가원칙)의 취업ㆍ입시 교원별 개인실적 영역은 반드시 20% 이상 반영하여야 하도록 하는 단서조항을 삭제하도록 의결하고 2022. 4. 25. [표 3]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지급규정 제8조(평가원칙) 개정 현황"과 같이 규정을 부적정하게 개정하였다.

5) 도립대학교 ○○○○○-0(2000.0.0., 2019학년도 ○○·○○ ○ ○○○○○ ○○ ○○ 제출
6) 2000. 0. 00. 개최, 의안번호 제2000-00호「○○·○○ ○ ○○○○○ ○○규정」개정(안)

[표 3]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지급규정 제8조(평가원칙) 개정 현황

현 행	개 정 안
제8조(평가원칙) ① (생 략) ② 평가영역은 교육, 연구, 학생지도, 취업·입시 교원별 개인실적 영역으로 한다. 단, 취업·입시 교원별 개인실적 영역은 반드시 20% 이상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평가원칙) ① (현행과 같음) ② ---------- ---------- ----------. (단서 삭제)

자료 : 도립대학교 제출자료 재구성

그로 인하여 법령을 준수하지 않은 채 자의적으로 규정을 개정하여 도립대학교의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3. 교수수업 평가 규정 부적정

도립대학교는 교원의 교수방법 개선과 양질의 수업 풍토 조성을 위하여 매년 교수의 강의 및 실험·실습에 대한 평가를 추진하고 있다.

가. 관계법령(판단근거)

「교수수업평가에 관한 운영규정」 제1조에 따르면 교원의 교수방법 개선과 양질의 수업 풍토의 조성을 위하여 교수의 강의 및 실험·실습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시행하고, 강의평가의 방법은 교수자체평가와 학생에 의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규정 제2조에 따르면 강의평가의 방법은 [별표 1]과 같이 '교수자체평가' 및 [별표 2]과 같이 '학생에 의한 평가'로 하도록 되어 있고, 제8조에 따르면 외래교원은 강의평가 결과 평균 60점에 미달하는 경우 다음 학기 강의에서 배제함을 원칙으로 하고, 수업(강의) 평가의 결과에 따라 교원의 교수학습법에 대한 개선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양질의 수업 풍토를 조성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별표] "전국 도립대학교 강의(수업) 평가 현황"과 같이 「○○○○○○○교 강의평가 운영규정」 제8조에 따르면 총장은 매학기 강의평가 하위 10% 평가를 받은 교원에 대해 강의개선 계획서를 징구하되 환산점수 75점 이상일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고, 강의평가 결과 연속 2회 이상 하위 10% 평가(환산점

수 75점 미만)를 받은 경우 전임교원 및 초빙교원은 강의개선 계획서를 제출하고 교수학습 강화를 위한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겸임교원 및 강사의 경우 재임용 시 부적합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교 강의평가 운영규정」 제7조에 따르면 총장은 전임교원 강의평가 결과를 수업·교육환경 개선자료 및 교원·학과평가에 반영할 수 있고, 매 학기 하위 10% 평가를 받은 전임교원, 겸임교원 및 강사에 대해 강의개선계획서를 징구하되 환산점수 80점 이상일 경우에는 제외하며, 매 학년도 기준 2회 연속 하위 10% 범위에 포함된 경우 전임교원은 강의개선 강의계획서를 제출하고 교수학습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를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고, 겸임교원 및 강사의 경우 다음 학기 강의부터 2년간 임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도립대학교는 교원의 교수방법 개선과 양질의 수업 풍토의 조성을 위하여 강의평가 결과가 낮은 전임교원, 겸임교원 및 강사 등 모든 강사에 대하여 강의개선 강의계획서를 제출하고 교수학습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를 반드시 이수하도록 하여야 하고, 일정 점수 이하 낮은 수업평가 결과를 받은 전임교원에 대한 징계를 포함한 제재 방안을 검토하여 강의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도립대학교(교무기획처)는 강의평가 결과 60점에 미달하는 외래교원에 대하여만 다음 학기 강의에서 배제되게 하고 있는 반면 2022. 10. 5. 감사일 현재까지 수업평가 결과가 일정 점수 이하의 낮은 점수를 받은 전임교원에 대한 제재 방안에 규정이 검토되지 않고 있다.

또한 [표 4] “강의평가(만족도) 학기별 평균점수 현황”과 같이 2019학년도부터 2022학년도 1학기까지 전체 교원의 평가 결과 평균점수는 91.2로, 규정에 따른 평가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있는 기준 점수인 60점보다 31.2점이 높아 실질적으로 제재 할 수 있는 기준점수를 상향하여 평가의 신뢰성을 확보해야 하는데도 방치하고 있다.

[표 4] 강의평가(만족도) 학기별 평균점수 현황

(단위 : 점)

구분	계(평균)	전임교원	외래교원	강사
계(평균)	91.2	00.0	00.0	00.0
2022년 1학기	92.7	00.0	00.0	00.0
2021년 2학기	92.4	00.0	00.0	00.0
2021년 1학기	91.4	00.0	00.0	00.0
2020년 2학기	91.7	00.0	00.0	00.0
2020년 1학기	90.3	00.0	00.0	00.0
2019년 2학기	90.8	00.0	00.0	00.0
2019년 1학기	89.3	00.0	00.0	00.0

자료 : 도립대학교 제출자료 재구성

그로 인하여 제재기준 점수가 낮아 제제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없고, 수업평가 결과가 낮은 전임교원에 대한 제재 조치가 없어 양질의 수업으로 개선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4. 대학회계직원 근무성적평정 규정 운영 부적정

도립대학교 2019. 5. 20. 2019년 제5차 교무위원회에서 「전남도립대학교 대학회계직원 규정」(이하 “대학회계직원 규정” 이라 한다)을 개정하면서 대학회계직원 근무성적은 부서장이 평정하도록 하였고 총장이 확인하는 절차를 삭제하였다.

가. 관계법령(판단근거)

「대학회계직원 규정」 제14조에 따르면 평정대상의 근무성적은 부서장이 평정하고, 근무성적평정결과는 승진임용 및 성과상여금 결정의 자료로 활용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5조에 따르면 평정자는 평정대상 공무원의 바로 위 상급·상위 감독자 또는 차상급·차상위 감독자 중에서, 확인자는 평정자의 바로 위 상급·상위 감독자 또는 차상급·차상위 감독자 중에서 임용권자가 지정하고, 평정자의 바로 위 상급·상위 감독자가 없는 경우에는 확인자를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임용권자는 확인자가 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대학회계직원 규정」 제5조 등에 따르면 대학회계직원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사무국장이 되고, 교무기획처장, 입학학생처장, 취업지원센터장, 교수협의회의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 위원은 교수협의회에서 추천한 1인을 포함하여 사무국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표 5] “전국 도립대학교 대학회계직원 평정 규정 현황”과 같이 「ㅇㅇㅇㅇㅇㅇ교 대학회계직원 근무성적 평정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르면 평정자는 처, 국, 단의 주무과장(팀장)으로 하고 처장, 국장, 단장이 확인자가 되도록 되어 있고, 「ㅇㅇㅇㅇㅇㅇㅇ교 대학회계직원 규정」 제21조에 따르면 평정자는 소속 부서장이고 확인자는 총장으로 되어 있다.

[표 5] 전국 도립대학교 대학회계직원 평정 규정 현황

구분	관련 규정	평정자 및 확인자 현황
전남도립대학교	「대학회계직원 규정」 제14조	평정자 부서장 / 확인자 없음
ㅇㅇㅇㅇㅇㅇ교	「대학회계직원 규정」 제21조	평정자 부서장 / 확인자 총장
ㅇㅇㅇㅇㅇㅇ교	「대학회계직원 근무성적 평정에 관한 규정」 제3조	평정자 주무과장(팀장) / 확인자 처·국· 단장
ㅇㅇㅇㅇㅇㅇ교	「대학회계직원 인사관리규정」 제17조	평정자 / 확인자 별도
ㅇㅇㅇㅇㅇㅇ대학	「대학회계직원 인사 규정」 제16조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및 「경상남도 5급 이하 근무성적 평정 업무처리지침」 준용
ㅇㅇㅇㅇㅇㅇ대학	「대학회계직원 인사 규정」 제14조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및 「경상남도 5급 이하 근무성적 평정 업무처리지침」 준용
ㅇㅇㅇㅇㅇㅇ교	「대학회계직원 규정」 제15조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5조 준용

자료 : 0ㅇ ㅇㅇㅇㅇ교 제출자료 재구성

따라서 도립대학교는 대학회계직원의 승진임용 및 성과상여금 결정의 자료로 중요하게 활용되는 근무성적평정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을 준용하여 평정자와 확인자를 지정하여 공정하게 평가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도립대학교(사무국)는 대학회계직원의 근무성적이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을 준용하여 평정자, 확인자가 평정하여 공정한 평정이 되도록 하여야 하는데도 2019. 5. 20. 규정을 개정하면서 확인자의 평정 절차를 부적정하게 삭제하여 2019. 5. 21.부터 2022. 10. 5. 감사일 현재까지 부서장인 평정자의 단독 평정으로만 대학회계직원의 승진임용 및 성과상여금 등이 결정되고 있어 근무평정

업무가 부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사무국을 제외한 교무기획처, 입학학생처, 취업지원센터 등 대부분의 부서의 장이 교수 중에서 해당 보직으로 임명받은 교수들이고, 대학회계직원 인사위원회는 [표 6] “대학회계직원 인사위원회 구성 명세”와 같이 7명의 위원 중 사무국장을 제외한 6명이 모두 교수들로 구성되어 있어 결과적으로 교수들이 대학회계직원의 인사권을 사실상 통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6] 도립대학교 대학회계직원 인사위원회 구성 현황

구 분	직 책	성 명	소	비 고
당연직 (5명)	○○○장	○○○	○○국	
	○○○○○장	○○○	○○○○처	
	○○○○○장	○○○	○○○○처	
	○○○○○○장	○○○	○○○○센터	
	○○○○○장	○○○	○○○○과 교수	
일반직 (2명)	교수	○○○	○○○○○과 교수	
	교수	○○○	○○○○○○과 교수	

자료 : 도립대학교 제출자료 재구성

그로 인하여 교수들로 임명된 부서장이 대학회계직원들의 인사권을 장악하여 직원을 통제할 수 있는 우려를 초래하였다.

3. 업무담당자의 부당 업무 처리

○○○는 2000. 0. 0.부터 2000. 0. 00. 도립대학교 ○○○○○장으로 근무하였다.

1)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등급·지급율 등 규정 개정 부적정

○○○는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각 등급간 지급율을 2.5%로 변경하면서 2018. 11. 29. 도지사에게 보고된 교연비 각 등급별 차 22%를 변경 시에는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와 협의를 하여야 하는데도 ○○○와 협의없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채 2020. 1. 2. 교연비 등급별 차를 2.5%로 변경하는 지급계획을 부당하게 수립하였다.

또한 2019년 제2차 교수회에서 교연비 등급별 차를 2.5%로 의결한 후 의결된 내용으로 교연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2018. 11. 16.에 개정된 「교원업

적평가규정」 제13조2 제2항의 교연비 각 등급별 차는 20%~25%로 한다는 규정을 관련 규정에 따라 개정(안)을 입안하고 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공포 등을 통해 규정을 개정한 후에 변경하여야 하는데도, 규정 개정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2020. 1. 2. 2019학년도 교연비 지급 실적을 제출하도록 하면서 교연비 등급별 차를 2.5%로 부당 변경하였다.

그로 인하여 2018. 11. 16. 개정된 「교원업적평가규정」 제13조2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교연비 각 등급별 20%~25%를 ○○○의 협의없이 2.5%로 변경하였고, 교수회에서 의결된 안에 대한 규정 개정 절차없이 변경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전남도립대학교는 감사결과에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징계요구 양정 ○○○와 협의 없이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각 등급간 지급율을 변경하여 지급계획을 수립하고, 규정 개정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를 부당하게 지급한 ○○○의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 위배 된 것으로 「교원인사관리규정」 제3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

조치할 사항 **전남도립대학교 총장**은

① 제규정 제정 및 개·폐 절차를 위반하여 「교원업적평가규정」 제13조2 제1항에 대한 개정절차 없이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의 등급간 차등 지급율을 2.5%로 적용한 당시 책임자인 ○○○○○○장 ○○○를 경징계하시기 바랍니다.**(징계)**
※ ○○○에 대하여 1, 3, 5, 7번을 통합하여 1건으로 「교원인사관리규정」 제38조에 따라 경징계 요구

② 강의평가결과 점수가 낮은 전임교원에 대하여 실효성 있는 징계 방안을 강구하고, 외부심사위원 등을 포함하여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강의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며, 대학회계직원에 대한 근무성적을 공정하게 평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통보)**

③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지급 등급 및 등급간 지급율 규정을 ○○○와 협의 없이 개정한 現 ○○(○○○)을 주의처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주의)**

[별표] 생　략

전 라 남 도

시정요구·통보

제　　목 교수회 및 대학평의원회 운영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전남도립대학교(교무기획처)

내　　용

1. 업무개요

전남도립대학교(이하 “도립대학교”라고 한다)는 「학칙」에 따라 학칙의 제·개정 등 주요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 등을 위하여 [표 1] “도립대학교 학칙 제·개정 등 주요사항 심의·의결 기구 현황”과 같이 교수회, 대학평의원회 등을 운영하고 있다.

[표 1] 도립대학교 학칙 제·개정 등 주요사항 심의·의결 기구 현황

구분	교수회	대학평의원회	교무위원회
근거		고등교육법 제19조의2	
학칙	제68조의 2	제67조	제70조
내용	1. 학칙의 신설·변경에 관한 사항 2.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1. 대학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4.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사항	1. 제 규정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2. 입학, 졸업에 관한 사항 3. 시험 및 사정에 관한 사항 4. 대학교 운영의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5. 교수회의 위임을 받은 사항 6. 교육과정 정책에 관한 자문 사항 7.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기능	심의·의결	자문, 심의	심의·의결

자료 : 도립대학교 제출자료 재구성

2. 교수회 운영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근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6호에 따르면 교수회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을 학칙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학칙」제68조에 따르면 본 대학교에 교수회를 두며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서 조직한다고 되어 있고, 제68조의2에 따르면 교수회는 대학교 운영에 관하여 학칙의 신설·변경에 관한 사항, 기타 총장이 부의사항을 사항을 의결하도록 되어 있고, 제79조에 따르면 사전 예고 절차를 거친 학칙 제·개정안은 교수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다.

한편「고등교육법」제19조2에 따르면 학교는 대학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교육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학칙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직원과 학생 등으로 구성하는 대학평의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학칙」제67조에 따르면「고등교육법」제19조의2에 따라 대학평의원회를 두고 대학발전 계획에 관한 사항,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교육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학과구조조정규정」제3조에 따르면 신입생 충원율이 70%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연도에 구조조정 결정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규정 제4조에 따르면 학과의 구조조정에 관한 사항은 교무기획처에서 발의하여 교무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최종 결정은 교수회의에서 심의·의결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표 2] “전국 도립대학교 학칙 제·개정 권한 현황”과 같이 ○○○○○○교, ○○○○○○○○학, ○○○○○○○교, ○○○○○○○교는 교수회에 학칙 제·개정에 대한 권한이 전혀 없고, ○○○○○○○○학과 ○○○○○○○교는 교수회에서 심의하여 대학평의원회에서 최종 결정하는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고,「강원도립대학교 교수회 운영규정」제5조에 따르면 교수회의 심의사항으로 교수 및 연구, 학생지도, 장학 및 후생, 학과간의 조정을 요하는 사항,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고 되어 있다.

[표 2] 전국 도립대학교 학칙 제·개정 권한 현황

구분	대학평의원회	교수회	비고
○○○○대학교	○	심의·의결(신설·변경)	교수회 최종 의결
○○○○대학교	○	×	대학평의원회 최종 권한
○○○○○○○대학	○	×	대학평의원회 최종 권한
○○○○○○○대학	○	심의(변경사항)	대학평의원회 최종 권한
○○○○대학교	○	×	대학평의원회 최종 권한
○○○○대학교	○	심의(제·개정)	대학평의원회 최종 권한
○○○○대학교	○	×	대학평의원회 최종 권한

자료 : 7개 도립대학교 조사자료 재구성 (○ : 심의 또는 실질적 의결 권한 부여 / × : 근거 조항 없음)

따라서 도립대학교는 상위 법령에 심의·의결이 없는 교수회에 과도한 권한이 부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고등교육법」에 교원, 직원, 조교 및 학생 등 학교조직의 구성단위를 대표하여 구성된 대학평의원회에서 학칙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교육에 중요한 사항을 사항으로 학칙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대학평의원회에서 학칙의 제·개정 등 학교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의결하도록 검토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도립대학교(교무기획처)는 학칙 제·개정을 추진하면서 상위 법령에서 심의·의결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위임 규정이 없는데도 「학칙」에 교수회의 심의·의결을 받도록 하는 규정을 제정하여 교수회에 심의·의결을 받도록 한 후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평의원에서 원안 심의만을 받도록 하고 있고, 학칙외 제규정 제·개정안에 대해서도 교수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어 부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다.

또한 학과구조조정 사항에 대한 최종 결정을 교수회에서 의결하도록 하여 2000. 0. 00.에 개최된 2000학년도 제0차 교수회에서 신입생충원율 70% 미만인 ○○○○○○과에 대하여 2022학년도부터 신입생 모집을 중단하여 폐과 결정을 하여야 하는데도 2022학년도 학과 구조개편 추가(안) 심의의 건을 부당하게 부결시키는 등 도립대학교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설치 학과의 구조조정을 저해하였다.

그로 인하여 교수회에 과도한 권한이 부여되어 학칙 제·개정 등 과도한 권

한을 위임하여 법령에 따라 설치된 대학평의원회의 운영을 무력화시켜 도립대학교의 발전을 저해할 우려를 초래하였다.

3. 대학평의원회 운영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근거)

「고등교육법」 제19조2에 따르면 학교는 대학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교육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학칙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직원과 학생 등으로 구성하는 대학평의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대학평의원회는 11명의 이상의 평의원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교원, 직원, 조교 및 학생 중에서 각각의 구성단위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이 경우 어느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전체 평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다.

또한 「학칙」 제67조에 따르면 고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라 대학평의원회를 두고 대학발전 계획에 관한 사항,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교육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고, 대학평의원회는 11명으로 구성하며, 전임교원 대표 5명, 직원 대표 2명, 조교 대표 1명, 재학생 대표 1명, 졸업생 대표 1명 및 전라남도 희망인재육성과장을 총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으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으며, 대학평의원회의 회의일시, 장소, 발언 요지 및 결정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표 3] “전국 도립대학교 평의원회 구성 현황”과 같이 ○○ ○○○○교의 평의원회 총원은 적게는 11명 많게는 1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와 ○○○○대는 대학의 구성단위인 직원, 조교, 학생이 각각 2명 이상 포함하여 학교의 최고 자문·심의·의결기관에서 각 구성단위의 의견을 공정하게 수렴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있다.

[표 3] 전국 도립대학교 평의원회 구성 현황

구분	총원	교원	직원	조교	학생	기타
○○○○대학교	11	5 (45.5%)	2	1	1	2
○○○○대학교	12	5 (41.6%)	2	2	3	-
○○○○○○○대학	16	7 (43.7%)	3	1	2	3*(총장포함)
○○○○○○○대학	11	4 (36.3%)	2	1	2	2
○○○○대학교	11	5 (45.5%)	3	1	1	1
○○○○대학교	13	5 (38.4%)	3	1	3	1
○○○○대학교	11	4 (36.3%)	2	2	2	1

자료 : 7개 도립대학교 조사자료 재구성

따라서 도립대학교는 대학평의원회를 구성하면서 조교, 학생이 각 1명으로 구성되어 있어 조교·학생 구성원이 불참하게 되면 관련 조직의 의견이 미반영될 수 있으므로 조교·학생의 구성 인원을 증원시키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하고, 임기가 만료된 위원은 신규로 위촉하여야 하며, 대학평의원회의 결정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하는 등 관련업무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도립대학교(교무기획처)는 2022. 10. 5. 감사일 현재 [표 4] “도립대학교 대학평의원회 구성 현황”와 같이 교수 5명, 직원 2명, 조교 1명, 학생 1명, 동문 1명, 전남도 1명으로 총 11명으로 대학평의원회를 구성하고 있어 교수가 전체 평의원의 45.5%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교를 제외한 ○○○○○○교 등 5개 도립대학교의 교수비율은 최소 36.3%, 최대 43.7%를 차지하고 있어 도립대학교의 대학평의원회가 교수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또한 조교, 학생 등이 각각 1명으로 구성되어 있어 대학평의원회 회의 시 불참할 경우 해당 구성단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없도록 구성되어 대학평의원회 회의에 조교, 학생단위의 위원이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단위의 의견을 반영할 수 없는데도 2022. 10. 5. 감사일 현재까지 검토하지 않고 있다.

[표 4] 도립대학교 대학평의원회 구성 현황

구분	구성단위	성 명	주 요 경 력	비고
의장	교수	○○○	○○○○과 학과장, ○○○○○ ○장	

부의장	직원	○○○	전남도립대학교 ○○○○처	
위원	교수	○○○	○○○○과 ○○장	
〃	교수	○○○	○○○○○○과 교수	
〃	교수	○○○	○○○○○○과 교수	
〃	교수	○○○	○○○○○○○과 교수	
〃	직원	○○○	전남도립대학교 ○○○	
〃	조교	○○○	○○○○○○○과 ○○	
〃	학생	○○○	도립대학교 ○○○○장	
동문	기타	○○○	도립대학교 ○○○○장	
전남도	기타	○○○	전라남도 ○○○○○○○장	

자료 : 도립대학교 제출자료 재구성

그리고 위원인 ○○○, ○○○, ○○○, ○○○, ○○○, ○○○ 등 위원 6명은 2000년부터 2022. 10. 5. 감사일 현재까지 임기 2년을 초과하여 위촉하고 있으나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아울러 2019년부터 2022. 10. 5. 감사일 현재까지 [표 5] “대학평의원회 회의록 공개 현황”과 같이 12회에 걸쳐 대학평의원회가 개최 되었으나, 2021년도 2차 대학평의원회 회의부터 5회 동안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가 2022. 9. 26.부터 10. 5.까지 도립대학교 추가 감사기간 동안 지적을 받자 2022. 10. 5. 도립대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표 5] 대학평의원회 회의록 공개 현황

구분		개최일	회의록 공개일	회의록 공개장소	비고
2019년	1차	2019. 02. 28.	2019. 02. 28.	홈페이지(정보공개)	
	2차	2019. 09. 03.	2019. 04. 25.	홈페이지(정보공개)	
	3차	2019. 12. 04.	2019. 05. 28.	홈페이지(정보공개)	
	4차	2019. 12. 24.	2019. 12. 24.	홈페이지(정보공개)	
2020년	1차	2020. 12. 14.	2020. 12. 21.	홈페이지(정보공개)	
	2차	2021. 02. 22.	2021. 02. 22.	홈페이지(정보공개)	
2021년	1차	2021. 03. 17.	2021. 03. 17.	홈페이지(정보공개)	
	2차	2021. 09. 07.	2022. 10. 05.	홈페이지(정보공개)	
	3차	2021. 11. 22.	2022. 10. 05.	홈페이지(정보공개)	
	4차	2022. 01. 12.	2022. 10. 05.	홈페이지(정보공개)	
	5차	2022. 02. 25.	2022. 10. 05.		서면회의
2022년	1차	2022. 07. 22.	2022. 10. 05.	홈페이지(정보공개)	

자료 : 도립대학교 제출자료 재구성

관계기관 의견　　전남도립대학교는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전남도립대학교 총장**은

① 타 도립대학교와 같이 도립대학교 교수회의 학칙 제·개정에 대한 심의·의결 권한을 삭제하는 등 '교수회'의 규정을 개정하고, 도립대학교의 대학평의원회 구성단위의 비율 등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고,**(통보)**

② 앞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대학평의원회 회의록을 공개하고, 임기가 만료된 대학평의원회의 위원은 교체 위촉하시기 바랍니다.**(시정)**

전 라 남 도

징계·경고·주의요구·통보

제 목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지급 평가 업무 부당 처리**

관계기관(부서) 전남도립대학교(교무기획처), 전라남도(희망인재육성과)

징 계 대 상 자 전남도립대학교 ○○○○○○○과 ○○ ○○○

징 계 의 종 류 경징계

경 고 대 상 자 전남도립대학교 ○○○○○○○과 ○○ ○○○

내 용

1. 업무개요

전남도립대학교(이하 “도립대학교”라고 한다)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대학에 근무하는 교원을 대상으로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을 위해 교육, 연구, 학생지도, 취업·입시 영역을 구분하여 계획서를 제출받고 그 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여 1,621,632천원[1]의 예산을 지급하였다.

○○ ○○○○은 2000. 0. 0.부터 2000. 0. 00.까지 ○○○○○처에서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지급 평가 업무를 총괄하는 ○○○○○○장으로 근무하였고 ○○ ○○○는 2000. 0. 0.부터 2000. 0. 00.까지 ○○○○○○에서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지급 평가 업무를 총괄하는 ○○○○○○장으로 근무하였다.

2.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평가 지표 운영 부적정

1) (2018년) 411,840,000원, (2019년) 411,840,000원, (2020년) 386,113,700원, (2021년) 411,839,090원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립대학회계법”이라 한다) 제28조 제1항에 따르면 국립대학의 장은 소속 교직원에게 대학회계의 재원으로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등을 위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국립대학회계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에 따르면 국립대학의 장은 법 제28조에 따른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등을 위한 비용(이하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라고 한다)을 교직원에게 지급할 때에는 교육·연구·학생지도 등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담당 업무 실적을 기준으로 각 영역별 지급 기준을 정하여야 하고 교육·연구·학생지도 등을 위한 계획서와 그 계획서에 따른 실적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개인별로 차등지급하여야 하며 통상의 업무 수행은 실적으로 인정해서는 아니되고 급여보조성 경비로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국립대학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3.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관련 가이드라인 [2] 정의에 따르면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은 교직원의 특정한 활동 수행에 대한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사업비 성격의 비용이라고 되어 있다.

또한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지급규정」 제10조 제3항에 따르면 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계획서 및 성과물에 대해서는 「교원업적평가규정」 제13조의2(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지급)의 제2항 등급분포비율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학칙 시행세칙」 제2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르면 전임교원의 주당 책임시수는 9시간이고 교무기획처장, 입학학생처장, 취업지원센터장, 산학협력단장 등은 3시간, 도서관장, 생활관장 등은 6시간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교원업적평가규정」 제3조 제2항에 따르면 “연구활동”은 논문, 저서, 역저, 편저, 보고서, 단행본, 학회활동, 학술강연, 창작활동, 발표 및 전시회, 특허

등의 연구활동 등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교원업적평가규정」 제13조에 따르면 교원업적 평가결과는 교원의 승진임용, 재임용, 정년보장 임용 및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지급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교육부 「국립대학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3.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용 관련 가이드라인 [별첨 1]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지표설계시 유의사항에 따르면 [표 1]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지표설계시 유의사항”과 같이 단순 책임시수 이행 여부, 초과 강의료를 지급받고 있는 경우 이중지급, 단순 학회참가 등은 인정 불가하도록 되어 있다.

[표 1]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지표 설계 시 유의사항

영역	지표	유의 사항
교육	· 책임시수	▸ 단순 책임시수 이행 여부는 실적인정 불가, 책임시수 미달 시 감점 지표로는 운영 가능
	· 초과강의	▸ 초과강의료를 지급 받고 있는 경우 이중지급 으로 실적인정 불가
	· 교수법연수(참여)	▸ 단순참여는 실적 인정 불가, 실제 교육개선 활동으로 이어진 증빙자료 제출 시 인정 가능
	· 시민공개강좌 · 신입생 홍보 · 중·고생 특강	▸ 내부 학생지도와 관련 없는 지표로서 인정 불가 ※ 자유학기제, 고교연계 진로지도는 지표 설정 불가
	· 강의평가결과	▸ 개인별 강의평가점수를 활동실적으로 적용은 곤란하되, 보조지표(차등급)로 활용 가능
연구	· 학회참가	▸ 단순 학회참가는 인정 불가, 참석하여 별도의 역할을 수행한 경우 인정(좌장, 논문발표 등)
	· 정책연구과제	▸ 행정제도(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제도 등) 개선 과제를 공모절차 거쳐 추진
	· 외부연구과제 · 외부사업	▸ 외부연구과제 및 사업은 신청만으로는 인정불가하고, 실제 과제 선정 및 사업비 수주가 된 경우 인정 가능
학생지도	· 학생안전지도	▸ 상시적인 지도는 인정 불가, 교내 대규모 행사 등 특별히 안전지도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운영 ※ 유치원생, 초등생, 중·고생대상 교내·외 행사안전지도 실적인정 불가
	· 학과별임용률 · 학과별취업률 · 전임교원강의율 · 강의 및 상담 자료업로드	▸ 직접적인 실적 인정 지표로는 불가, 개인별 실적을 보완하는 지표로써 운영

자료 : 교육부「2021학년도 국립대학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내용 재구성(2018~2021년 내용변경 없음)

그리고 같은 지침 3.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관련 가이드라인 ⑪ 유의

사항에 따르면 대학별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은 해당 대학의 교직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하고 동일한 기준과 실적에 대해 동일 비용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특정인(총장, 보직자) 및 교원과 직원을 구분하여 지표를 별도로 설정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교직원의 통상적인 업무수행은 실적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급여보조성 경비와 같은 비용으로 지급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아울러 교육부는 도립대학교에 2017. 1. 18.에 '2017학년도 교육, 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관련 가이드라인 안내[2]'로 별도의 공문을 발송하고 2018년부터 2022년까지는 매년 '국립대학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안내[3]' 공문을 시행하면서 붙임 문서에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관련 가이드라인'을 첨부하고 동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계획을 수립한 후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도립대학교(교무기획처)는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을 지급을 위한 평가 지표를 설정 할 때는 「국립대학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과 「교원업적평가규정」에 따라 교원 실적에 대하여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개인별로 차등 지급하여야 하고 통상의 업무 수행은 실적으로 인정해서는 아니되고 급여보조성 경비로 지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교육영역은 단순 책임시수 이행 여부, 초과 강의료를 지급받고 있는 경우 이중으로 지급되지 않도록 지표를 설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연구활동은 논문, 저서, 역저, 편저, 보고서, 단행본, 학회활동, 학술강연, 창작활동, 발표 및 전시회, 특허 등에 한하여 실적을 인정받도록 지표 설정을 하여야 한다.

또한 특정인(총장, 보직자) 및 교원에게 공통된 지표를 적용하고 동일한 기

---

2) ○○부 ○○○○과-000(2000. 0. 00.) 2000학년도 ○○·○○ 및 ○○○○ ○○○○ ○○○○○ 안내
담당자 ○○○장 ○○○, 관리자 ○○○○○장 ○○○

3) ○○부 ○○○○○○과-0000(2000. 0. 00.) 2000학년도 ○○○○○○○○○○○○○○○○(○) 안내
○○부 ○○○○○○과-0000(2000. 00. 00.) 2000학년도 ○○○○○○ ○○○○ ○○○○ 안내
○○부 ○○○○○○과-0000(2000. 00. 00.) 2000학년도 ○○○○○○ ○○○○ ○○○○ 안내
○○부 ○○○○○○과-0000(2000. 00. 0.) 2000학년도 ○○○○○○ ○○○○ ○○○○ 안내
○○부 ○○○○○○과-0000(2000. 0. 0.) 2000학년도 ○○○○○○ ○○○○ ○○○○ 안내

준과 실적에 대해 동일 비용을 지급해야 하며 교육부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관련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계획을 수립한 후 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도립대학교(교무기획처)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별표 1] "도립대학교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평가지표 부적정 명세"와 같이 교육영역은 단순 책임시수, 초과 강의료 이중지급, 강의계획서 제출, 1학기내 시험실시 등을 평가지표로 설정하는 등 통상적인 업무 수행을 실적으로 인정하고 있고, 책임시수가 부족한 경우(1~3시간, 4시간 이상)에는 감점 지표로 운영하여야 하는데도 책임시수가 1 ~ 3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6점을 부여하고 4시간 이상이 부족한 경우에는 4점을 부여하는 등 평가 지표를 부적정하게 설정하였다.

또한 연구영역은 논문, 저서, 역저 등 연구활동 외의 학회 및 협회의 이사, 지부장, 연구관련 학회 단순 참석, MOU 체결, 기술지도 등 연구활동과 무관한 항목을 평가 지표로 설정하고 점수를 부당하게 배정하였다.

그리고 학생지도영역은 취업·입시 교원별 개인실적 영역에서 교원별 신입생 충원율 및 교원별 취업률 실적을 평가항목으로 인정하고 있는데도 학생지도영역에서 학과별 신입생 충원률 및 학과 취업률 실적을 평가항목으로 인정하도록 하여 직접적인 실적이 없는데도 실적이 없는 교수들에게도 부당한 점수를 부여되도록 하였다.

또한 ○○에게는 교원과 공통된 지표를 적용하여 실적심사를 거쳐 지급하여야 하는데도 전임교수와는 다른 1개 분야의 학생지도영역을 별도의 지표로 적용하고 전임교원과는 차별된 비용을 지급하였으며 ○○ 교수에게는 2점부터 10점까지 별도의 가점을 부적정하게 부여하여 특혜를 제공하는 등 교육부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관련 가이드라인'을 위반하여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하였다.

한편 도립대학교(교무기획처)는 2022년에도 [별표 1] "도립대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평가지표 부적정 명세"와 같이 평가 지표를 부적정하게 설정[4]하고

총장 및 전임교원 44명에게 선급금[5] 000,000,000원을 [별표 2] “2022년도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선급금 지급 현황”과 같이 지급하였다.

그로 인하여 교원의 업무실적이 과대하게 부풀려지고 교원 평가시 보직교수에게 특혜를 부여하는 등 투명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였다.

3.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지급 등 부당

(1)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지급 계획 협의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국립대학회계법」 제2조 제2항에 따르면 이 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로서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공립학교에 대하여 준용한다고 되어 있고 이 경우 “국립대학”은 “공립대학”으로,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로 본다고 되어 있다.

또한 「국립대학회계법 시행규칙」 제22조 제6항에 따르면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실적의 인정 기간 및 인정 방법, 영역별 지급액, 지급시기 등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의 지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과 제2항에 따른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대학의 장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2021학년도 국립대학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3.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관련 가이드라인 6 지급기준 마련에 따르면 총장은 실적인정 기간 및 방법, 영역별 지급액, 지급시기 등 비용 지급을 위한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지급 계획을 정함에 있어 교육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하고 확정된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 계획에 의한 영역별 프로그램,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개인별 지급계획서를 신청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도립대학교(교무기획처)는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을 위한

---

4) ○○○○○-0000(2000. 0. 00.) 2000학년도 ○○·○○ ○ ○○○○○ ○○○○○ ○○ ○○

5) ○○○○○-0000(2000. 0. 00.) 2000학년도 ○○·○○ ○ ○○○○○ ○○○ ○○

평가 지표를 설정 할 때는 「국립대학회계법 시행규칙」과 「국립대학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의 지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 등 지급 계획을 정할 때는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하고 협의 후 확정된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 계획에 의한 영역별 프로그램,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전임교원별별 지급계획서를 신청받아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도립대학교(교무기획처)는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지급 계획을 정함에 있어 매년 도지사의 협의를 받아야 하고 확정된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 계획에 의한 영역별 프로그램,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데도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단 1회도 도지사의 협의를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부당하게 시행하였다.

(2)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지급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국립대학회계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르면 국립대학의 장은 법 제28조에 따른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등을 위한 비용을 교직원에게 지급할 때는 계획서와 그 계획서에 따른 실적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개인별로 차등지급하고 통상의 업무 수행은 실적으로 인정해서는 아니되며 급여보조성 경비로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2021학년도 국립대학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3.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관련 가이드라인 ⑪ 유의사항에 따르면 대학별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은 해당 대학의 교직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하고 동일한 기준과 실적에 대해 동일 비용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특정인(총장, 보직자) 및 교원과 직원을 구분하여 지표를 별도로 설정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교직원의 통상적인 업무수행은 실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유의사항에 따르면 총장은 지표별 단가를 산정함에 있어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최하위 등급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단가를 산정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이에 해당하는 지표별 단가는 수정·보완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2018. 11. 16. 개정된 「교원업적평가규정」 제13조의2 제1항에 따르면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의 지급은 당해연도 평가결과에 따라 S, A, B, C, D 등급으로 구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차등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규정 제13조의2 제2항에 따르면 등급별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분포비율은 아래 표와 같다고 되어 있고 지급금액은 B등급을 기준으로 하며, 각 등급별 차는 20 ~ 25% 범위내로 한다고 되어 있다.

구분 \ 등급	S	A	B	C	D	비고
교원대비 등급 분포 비율(%)	10	25	30	25	10	

또한 '도립대학교 구조개편 방안'[6] 2 학과 구조조정 규정 강화(안)에 따르면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지급기준 및 등급비율 개정은 '다등급화(3 → 5등급) 및 등급간 차등 지급율 확대(5% → 22%)'하고 '개인별 취업·입시지도 결과를 20% 적용 기준 신설'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2021. 8. 26. 개정된 같은 규정 제13조의2 제1항에 따르면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지급은 당해연도 평가결과에 따라 S, A, B, C 등급으로 구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차등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규정 제13조의2 제2항에 따르면 등급별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분포비율은 아래 표와 같다고 되어 있고 지급금액은 B등급을 기준으로 하며, 각 등급별 차는 5% 범위내로 한다고 되어 있다.

구분 \ 등급	S	A	B	C	비고
교원대비 등급 분포 비율(%)	10	40	40	10	

한편 교육부 「2022학년도 국립대학회계 예산집행 기본지침」 1.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 가이드라인 11 유의사항에 따르면 총장이 법령 및 가이드라인을 위반하여 규정 및 계획 운영 시 차년도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예산의 5%를 삭감한다고 되어 있다.

6) ○○○○○-0000(2000. 00. 00.) ○○○○○ ○○○○ ○○(○○○ 결재일자 2000. 00. 00.)

따라서 도립대학교(교무기획처)는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등을 위한 비용을 교직원에게 지급할 때는 교직원에게 동일한 기준과 실적에 대해 동일 비용을 지급하여야 하고 총장 및 보직자와 교원에게 동일한 지표설정을 하여야 하며 통상의 업무 수행은 실적으로 인정해서는 안되고 급여보조성 경비로 지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최하위 등급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단가를 산정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지표별 단가가 부적정하게 반영되었을 때는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또한 당해연도 평가 결과에 따라 S, A, B, C, D 5등급으로 구분하고 지급금액은 B등급을 기준으로 하며 각 등급별 차는 22%로 하여야 한다.

그리고 2018. 11. 29. ○○○의 결재를 받은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지급기준 및 등급비율 다등급화(3 → 5등급) 및 등급간 차등 지급율 확대(5 → 22%)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관련 법률에 따라 ○○○의 협의를 거쳐서 변경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도립대학교(교무기획처)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별표 1] “도립대학교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평가지표 부적정 명세”와 같이 총장에게는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영역 중에서 신입생 등록률 및 신입생 등록활동 등을 평가항목으로한 학생지도영역 1개 분야만 평가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위반하여 별도의 지표를 설정하고 별도의 지급 기준을 설정하였으며 보직교수에게 2점에서 10점까지 별도의 가점을 부당하게 부여하였다.

또한 비용 지급을 할 때는 개인별로 차등 지급하지 않고 [별표 3]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등급별 차등 지급 부적정 명세(2000. 0. 00. 기준)”과 같이 등급별로 차등 지급하여 실적이 없는 최하위 등급자도 비용을 지급받아 급여보조성 경비와 같은 비용으로 지급되도록 관련 업무를 부적정하게 하였다.

그리고 전임교수에게는 통상의 업무수행은 실적으로 인정해서는 안되는 주당 평균 담당 수업 시수, 주당 평균 수업일수 분포 등을 평가항목에 설정하여

실적으로 인정받게 하고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최하위 등급을 설정하여 단가를 산정하는 등 2018년부터 2021년까지 [표 2]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부적정 지급 현황”, [별표 4]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 부적정 세부 명세”와 같이 교수 36명에게 총 000,000,000원을 과다 집행하였으며 해당 지표별 단가가 반영되었을 때는 수정·보완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방치하여 관련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였다.

[표 2]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부적정 지급 현황

(단위 : 천원)

대상	합계	2018			2019				2020				2021			
		교육 영역	연구 영역	학생 지도 영역	교육 영역	연구 영역	학생 지도 영역	취업·입시 영역	교육 영역	연구 영역	학생지도영역	취업·입시 영역	교육 영역	연구 영역	학생 지도 영역	취업·입시 영역
36명	000,000	00,000	0,000	00,000	00,000	0,000	0,000	0,000	00,000	0,000	00,000	0,000	00,000	00,000	0,000	0,000

자료 : 도립대학교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지급 계획을 정함에 있어 매년 도지사의 협의를 받아야 하고 확정된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 계획에 의한 영역별 프로그램,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개인별 지급계획서를 신청받아야 하는데도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단 1회도 도지사의 협의를 받지 않고 자체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부당하게 시행하였다.

그리고 2018. 11. 29. ‘도립대학교 구조개편 방안’에 ‘다등급화(3 → 5등급) 및 등급간 차등 지급율 확대(5% → 22%)’하겠다는 ㅇㅇㅇ의 결재를 받았는데도 결재 내용을 반영하지 않은 채 ‘당초의 2018학년도 계획 기준[7]을 그대로 적용하여 추진한다’는 내용으로 내부공문[8]을 시행 후 [표 4] “2018년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등급별 구분 현황”과 같이 평가를 3등급으로 하고 등급간 격차는 5%로 차등 지급하여 업무를 부당하게 추진하였다.

또한 2019년과 2020년에는 5등급으로 구분하였으나 등급간 격차는 22%를 적용하지 않고 2.5%로 부당하게 적용하였다.

아울러 2021년에는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지급기준 및 등급비율을 [표

7) ㅇㅇㅇㅇㅇ-0000(2000. 0. 0.) 2000학년도 ㅇㅇ·ㅇㅇ ㅇ ㅇㅇㅇㅇ ㅇㅇ ㅇㅇㅇ ㅇㅇ 요청

8) ㅇㅇㅇㅇㅇ-00(2000. 0. 0.) ‘2000학년도 ㅇㅇ·ㅇㅇ ㅇ ㅇㅇㅇㅇㅇ ㅇㅇ ㅇㅇ 제출’

5] “2021년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등급별 구분 현황”과 같이 5등급에서 4등급으로 구분하고 등급간 격차는 22%에서 5% 범위 내로 조정하여 ‘2021년도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지급 계획’을 시행하면서 ○○○○의 협의를 거치지 않고 업무를 부당하게 추진하였다.

[표 4] 2018년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등급별 구분 현황

지급대상 구분	합계	S	A	B
총장	1	1명(100%)		
전임교원	45	5명(10%)	35명(80%)	5명(10%)

자료 : 도립대학교 제출자료 재구성

[표 5] 2021년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등급별 구분 현황

구분 \ 등급	S	A	B	C
교원대비 등급분포비율(%)	10	40	40	10

자료 : 도립대학교 제출자료 재구성(「교원업적평가규정」 개정 2021. 8. 26. 규정 제532호)

그로 인하여 사업을 목적을 달성할 수 없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000,000,000원의 예산이 과다하게 집행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4.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국립대학회계예산편성 기본지침」 3.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관련 가이드라인 7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총장은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을 위한 실적을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해 교내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하고 구성은 모든 직종(교원, 직원, 조교)이 참여 가능하도록 하며 영역(교육, 연구, 학생지도)별로 구성이 가능하지만 동일 직종만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도립대학교는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을 위한 실적을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동일 직종만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도립대학교(교무기획처)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을 위한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면서 [표 6]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심사위원회 심의 의결서 현황(2021년 기준)”과 같이 심사 대상자인 도립대학교에 재직 중 교수로만 구성·운영하여 관련 업무를 부적정하게 하였다.

[표 6]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심사위원회 심의 의결서 현황(2021년 기준)

심의일자	2022. 0. 00.(ㅇ) 15:00
장 소	ㅇㅇㅇㅇㅇ 세미나실
참 석	위원장 : ㅇㅇㅇ 위 원 :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심의안건	(제2000-0호) 2000학년도 ㅇㅇ·ㅇㅇ ㅇ ㅇㅇㅇㅇㅇㅇ ㅇㅇ ㅇㅇ
심의결과	학생지도영역 중 학과 신입생충원율 실적 60% 미만은 4점으로 하고 ㅇㅇㅇ 교수, ㅇㅇㅇ 교수 건은 교무기획처에서 규정 검토하여 집행 여부 결정

자료 : 도립대학교 제출자료 재구성

한편 타 대학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 심사위원 구성 현황에 대하여 추가 감사기간 중에 조사한 결과 [표 7] “타 대학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심사위원 구성 현황”과 같이 심사의 투명성과 진정성을 높이기 위해 학생위원과 외부위원을 영입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7] 타 대학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심사위원 구성

대학명	위원회 구분	위원회 역할		학생위원	위원 구성 현황		
					총인원	학생위원	외부위원
ㅇㅇㅇㅇ교	총괄운영위원회	예산, 계획 승인 등		x	7~8명	x	x
	대학심사위원회	실적 심사	단과대학	○	5~10명	30%	1명
	본부,직부속기관 심사위원회	실적 심사	본부 및 부속기관	○	5~12명	30%	1명
ㅇㅇㅇㅇ교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심사위원회	예산, 계획 승인, 실적심사 등		○	10명	3명(30%)	1명
ㅇㅇㅇㅇ교	비용지급심사위원회	예산, 계획 승인 등		○	13명	4명(30%)	1명
	실무심사위원회	실적 심사	단과대학	○	5~15명 이내	30%	1명
ㅇㅇㅇㅇ교	총괄심사위원회	예산, 계획 승인 등		○	10명	3명(30%)	1명
	영역별심사위원회	실적 심사	영역별 소위원회	○	10명	3명(30%)	1명
	평가단위별평가위원회	실적 심사	단과대학	○	10명	3명(30%)	1명
ㅇㅇㅇㅇ교	총괄심사위원회	예산, 계획 승인 등		○	10명	3명(30%)	1명

대학명	위원회 구분	위원회 역할		학생위원	위원 구성 현황		
					총인원	학생위원	외부위원
	단과대학심사위원회	실적 심사	단과대학	○	5~10명 이내	30%	1명
	실무소위원회	실적 심사	본부 및 부속기관	○	7명 이내	30%	1명
○○○○교	비용심사위원회	예산, 계획 승인 등		○	18명	6명(30%)	1명
	분과별심사위원회	실적 심사	영역별 소위원회	○	6명	2명(30%)	1명
	단과대학위원회	실적 심사	단과대학	x	-	x	x
○○○○교	심사위원회	예산, 계획 승인 등		○	12명	4명(30%)	1명
	영역별운영위원회	실적 심사	교육, 연구, 학생지도	○	10명	3명(30%)	1명
○○○○교	교육연구및학생지도비 등 심사위원회	예산, 계획 승인 등		○	13명	4명(30%)	1명
	평가단위심사위원회	실적 심사	본부, 부속기관, 단과대학	○	6명 이상	30%	1명

자료 : ○○○○○○○교 2022학년도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계획(안) '참조' 재구성

※ 교육부 가이드라인 미준수 시 교연비 예산액 5%감액

그로 인하여 투명하고 객관적인 실적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였다.

5. 자체점검 체크리스트 활용·점검·보완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국립대학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3.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관련 가이드라인 별첨 4에 각 대학은 자체점검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지급계획을 수정·보완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도립대학교는 가이드라인 별첨 4에 따라 자체점검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자체점검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보완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도립대학교(교무기획처)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지급 평가 업무를 하면서 [표 8] "자체 점검 체크리스트 현황"과 같이 자체점검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자체점검 및 보완 업무를 하여야 하는데도 4년간 자체점검 및 보완 업무를 한차례도 하지 않고 관련 업무를 방치하였다.

[표 8] 자체 점검 체크리스트 현황

연번	주요 내용	자체점검결과		주요 보완 내용
		준수	보완필요	
1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교육부령과 가이드라인에 따른 절차와 내용을 준수하였는지?			
2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였는지?			
3	교육부-국립대학 합동 워크숍, 담당자 회의, 대학별 컨설팅 등 교육부-대학 간 협업 과정 및 그 결과를 계획에 충분히 반영하였는지?			
4	교직원에게 동일한 원칙과 동일한 기준에 따라 동일한 비용을 지급하도록 계획을 수립하였는지?			
5	대학의 재정 여건, 지급 기준 및 실적, 지표별 단가 등을 고려하여 총 지급 예산 및 개인별 지급 한도액을 적정하게 편성하였는지?			
6	지표별 단가는 활동 내용 및 난이도, 전문성, 실적의 성격, 수반되는 비용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적 타당성이 있도록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정하였는지? ※ 가이드라인의 지표별 단가 산정 시 유의 사항 참고			
7	우수한 실적에 대하여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합리적으로 마련되어 있는지?			
8	모든 지표는 교육, 연구, 학생지도 등과 관련성이 있는지? ※ 교육, 연구, 학생지도 등과 무관한 지표가 있거나,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비용을 지급하기 위한 기준이 있는 경우 법령 위반임			
9	교내 교육, 연구, 학생지도 등 관련된 유사사업을 통합·운영토록 노력하였는지?			
10	대학의 '교육', '연구' 역량 강화 프로그램 및 학생의 진로, 취·창업 지원 등 '학생지도 등'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특화 프로그램 운영과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 계획을 연계하도록 노력하였는지?			
11	심사위원회는 공정한 심사가 가능하도록 구성되었는지?			
12	영역별 활동계획서는 행정 부담을 최소화를 고려하여 주요활동계획, 주요 실적 등이 포괄적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지?			
13	비용 지급을 위한 지급 일정, 지급 절차, 지급 내역 관리, 환수 기준 및 방안, 부서별 기능 및 역할 분담 등이 체계적으로 설계되어 있는지?			
14	교직원의 교육, 연구, 학생지도 등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연수 프로그램 운영 지원, 인력풀(pool) 관리 등 방안도 고려되었는지?			
15	한 지표 실적으로 중복 실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표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지?			
16	기타 대학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체 점검한 내용 (자율적으로 작성하여 활용 가능)			

자료 : 도립대학교 제출자료 재구성

그로 인하여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지급을 위한 타당한 지표 설정이 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였다.

6. 업무담당자의 부당한 업무 처리

○○○은 2000. 0. 0.부터 2000. 0. 00.까지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지급 및 평가 업무를 총괄하는 ○○○○○○장으로 근무하였다.

(1)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평가 지표 부적정

○○○은 '2000. 0. 0. 2000학년도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활동계획서 제출

요청’ 공문과 ‘2000. 0. 00. 2000학년도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활동계획서 제출 요청’ 공문을 시행하면서 전임교원의 평가항목 중 교육영역은 단순책임시수, 초과강의료 이중지급, 강의계획서 제출, 1학기내 시험실시 등을 평가지표로 설정하여 통상의 업무수행을 부당하게 실적으로 인정하고 책임시수가 부족한 경우는 감점지표로 운영하여야 하는데도 1시간부터 3시간이 부족하면 6점을 부여하고 4시간 이상이 부족한 경우는 4점을 부당하게 부여하였다.

또한 연구영역은 학회 및 협회의 이사, 지부장, 연구관련 학회 단순 참석, MOU 체결, 기술지도 등 연구활동과 무관한 항목을 평가지표로 설정하고 점수를 배정하였으며 학생지도영역은 취업·입시 교원별 개인실적 영역에서 교원별 신입생 충원율 및 교원별 취업률 실적을 평가항목으로 인정하였는데도 학생지도영역에서 학과별 신입생 충원률 및 학과 취업률 실적을 평가항목으로 설정하여 실적이 없는 교수에게도 점수를 부여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교수에게는 2점부터 10점까지 별도의 가점을 영역별로 중복하여 부당하게 특혜를 부여하였다.

또한 ○○에게는 전임교원과 공통된 지표를 적용하지 않고 학생지도영역 분야에 별도의 평가 지표를 부당하게 적용하여 평가하는 등 대학 교직원의 특정한 활동 수행에 대한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사업비 성격의 비용을 급여보조성 경비로 지급하도록 하여 관련 업무를 위법하게 처리하였다.

그로 인하여 교원의 업무실적이 과대하게 부풀려지고 개인별 실적에 따른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였다.

(2)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평가 지급 부적정

○○○은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지급 계획을 정할 때는 사전에 ○○○의 협의를 받아야 하고 등급간 격차는 22%로 하여야 하는데도 협의를 받지 않고 등급간 격차는 2.5%를 적용하여 자의적으로 2020학년도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지급 계획을 수립·시행하였으며 2000. 0. 00.과 2000. 0. 00.에 ‘2000학년도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용’ 선급금과 후급금으로 00명에게 000,000천원을 지급하면서 00명에게 00,000천원을 부적정하게 과다지급하였다.

그로 인하여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였다.

(3)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부적정

○○○은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을 위한 실적을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해 교내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모든 직종(교원, 직원, 조교)이 참여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는데도 2000. 0. 00. 심사 대상자인 교수 9명(○○○, ○○○, ○○○, ○○○, ○○○, ○○○, ○○○, ○○○, ○○○)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

그로 인하여 실적심사가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였다.

(4) 자체점검 체크리스트 활용·점검·보완 부적정

○○○은 2000. 0. 0.부터 2000. 0. 00.까지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지급 평가 업무를 총괄하면서 자체점검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자체 점검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할 때는 보완하여야 하는데도 자체점검 및 보완업무를 한 차례도 하지 않고 관련 업무를 방치하였다.

그로 인하여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지급을 위한 타당한 지표 설정이 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전남도립대학교는 감사결과에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징계요구 양정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지급 평가 업무에 대해 부적정하게 처리한 ○○ ○○○의 행위는「지방공무원법」제48조에 위배 된 것으로 전남도립대학교「교원인사관리규정」제3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조치할 사항 **전남도립대학교 총장**은

①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평가 지표 설정 및 비용 지급, 관련 법령 등을 위반하여 지급된 비용의 환수처리,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자체점검·보완 등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 ○○○을 「교원인사관리규정」 제38조에 따라 경징계 하고,**(징계)**

※ ○○○에 대하여 3, 7번을 통합하여 1건으로 「교원인사관리규정」 제38조에 따라 경징계 요구

②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관련 업무는 사전에 도지사와 협의하는 등 관련 법령 및 「2022학년도 국립대학회계 예산집행 기본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시행하도록 하며,**(주의)**

③ 희망인재육성과에서는 「2022학년도 국립대학회계 예산집행 기본지침」에 따라 총장이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교육부 가이드라인을 위반하여 대학규정 및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지급 계획 운영시 차년도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예산을 5% 삭감하고 자체점검 체크리스트를 활용·점검하여 관련 법령 및 교육부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통보)**

[별표 1] ~ [별표 4] 생 략

전 라 남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전임교원 겸직 및 외부강의등 복무관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전남도립대학교(교무기획처)

주 의 대 상 자 ① 전남도립대학교 ○○○○○과 ○○ ○○○

② 전남도립대학교 ○○○○○○○과 ○○ ○○○

③ 전남도립대학교 ○○○○○○○과 ○○ ○○○

④ 전남도립대학교 ○○○○○과 ○○ ○○○

⑤ 전남도립대학교 ○○○○○○과 ○○ ○○○

⑥ 전남도립대학교 ○○○○○과 ○○ ○○○

⑦ 전남도립대학교 ○○○○○과 ○○ ○○○

⑧ 전남도립대학교 ○○○○○○○과 ○○ ○○○

⑨ 전남도립대학교 ○○○○○과 ○○ ○○○

⑩ 전남도립대학교 ○○○○○과 ○○ ○○

내 용

1. 업무개요

전남도립대학교(이하 “도립대학교”라고 한다)는 2018년부터 2022. 10. 5. 감사일 현재까지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전라남도 공무원 행동강령」, 「전임교원복무규정」, 「연구년제 운영규정」 등에 따라 소속 교원의 겸직허가, 외부강의, 연구년제 운영 등 복무 관리를 하고 있다.

2. 전임교원 겸직허가 관리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공무원법」 제56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또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에 따르면 공무원이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5. 나. 겸직관련(외부강의) 및 「전라남도 공무원 겸직허가 운영지침」에 따르면 대학(교)의 시간강사·겸임교수 등으로 위촉되어 출강할 때, 대가의 유무 및 월간 강의 횟수와 관계없이 1월을 초과하여 지속적으로 출강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전 겸직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또한 도립대학교 「전임교원복무규정」 제5조에 따르면 전임교원은 본 대학 이외의 타 기관에 전속되는 직을 겸할 수 없으며, 연구 기관등의 비상임직으로의 위촉이 불가피한 때에는 사전에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교육공무원법」 제19조의2에 따르면 교수·부교수 및 조교수는 소속 학교의 장의 허가를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사외이사를 겸직할 수 있으며, 해당 사기업체로부터 받은 보수 전부를 소속학교의 장에게 다음 해 1월 31일까지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도립대학교(교무기획처)는 소속 전임교원이 대가의 유무 및 월간 강의 횟수와 관계없이 1개월을 초과하여 지속적으로 출강할 때 또는 타 기관에 전속되는 직을 겸할 때에는 총장의 겸직 허가를 받고 다른 직무를 겸하도록 하여야 하고, 전임교원은 총장의 겸직 허가를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사외이사를 겸할 때에는 해당 사기업체로부터 받은 보수 전부를 총장에게 다음 해 1월 31일까지 보고하도록 하여 소속 전임교원이 겸직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하며 겸직 허가를 받은 후 사기업체로부터 받은 보수 전부를 총장에게 다음 해 1월 31일까지 보고하도록 관리를 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도립대학교(교무기획처)는 ○○○○○과 ○○ ○○○○ 등 3명의 전임교원이[1] 2018. 1월부터 2022. 9월까지 [표 1] “전임교원 겸직 허가 현황”과 같이 총장의 겸직 허가없이 부적정하게 1개월을 초과하여 지속적으로 출강 등 다른 직무를 겸하고 있고, ○○○○○과 ○○ ○○○○는 겸직 허가[2]를 받았으나 2019. 1월부터 2022. 3월까지 사기업체로부터 받은 보수 0,000만원을 총장에게 보고하지 않는 등 소속 전임교원이 겸직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고 또는 겸직 허가를 받고 사기업체로부터 받은 보수를 총장에게 보고조차 하지 않고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복무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표 1] 전임교원 겸직 허가 현황(2018. 1. ~ 2022. 9월)

(단위 : 천원, 건)

연번	성명	직급	학과명	겸직허가 여부	겸직기관명 (출강처)	겸직 직위	겸직기간 (근무기간)	보수 (활동비)	비고
1	○○○	○○	○○○○과	×	○○○○교	출강	2022.06.07.~2022.07.22.	00,000	28회출강
2	○○○	○○	○○○○○○○과	×	○○○○○○○○교	출강	2020.09.01.~2020.12.31.	미신고	주당 3시간
3	○○○	○○○	○○○○○○○과	×	○○○○○○ ○○○○○○센터	센터장	2019.01.01.~2022.10.현재	00,000	월 20시간
4	○○○	○○	○○○○과	○	○○○㈜	사외이사 (비상근)	2018.01.01.~2022.03.31.	00,000	

자료 : 도립대학교 제출자료 재구성

1) 1개월을 초과하여 타교 출강(2명), ○○○○○○○○○○○○○○○○장(1명) 겸직(100인 미만 급식소를 대상으로 위생과 영양관리 등을 지원하는 ○○○○○○○○처 공모사업, 국비 50%, 도비 10%, 담양군비 40%)

2) 겸직 허가(기간) : ○○○(주)(2018.01.01.~2022.03.31.), 2018년도 보수(000만원)만 보고

그로 인하여 교수의 직무를 소홀히 하여 학생들에게 보장되어야 할 학습권이 침해될 우려와 관련 법령 및 복무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였다.

3. 전임교원 외부강의 등 신고에 대한 관리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 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 또는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3]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전라남도 공무원 행동강령」 제25조에 따르면 공무원이 강의·강연·기고 또는 세미나, 공청회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 또는 10일 이내에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도립대학교는 교원 등 소속직원이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청탁금지법」 및 「전라남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 또는 10일 이내에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신고하여야 하고, 도립대학교에서는 소속 직원이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 또는 1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복무관리를 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도립대학교(교무기획처)는 2018. 5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과 ○○○ 등 ○○ 총 6명이 [표 2] “전임교원 외부강의등 신고 지연 현황”과 같이 총 28건에 대하여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을 초과 또는 10일을 초과하여 최소 2일부터 최대 44일까지 지연 신고가 이루어져 관계 법령을 위반되고

3) 「전라남도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2020. 6. 4., 규칙 제3221호)
- 2020. 6. 4. 이전은 외부강의 등 신고를 사전에,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 신고. 외부강의 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신고대상이 아님.

있었으나 외부강의등 신고 지연에 대하여 복무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표 2] 전임교원 외부강의등 신고 지연 현황

연번	성명	강의일자	신고일자
합계	6명	28건	
1	○○○ (10건)	2018.05.14., 2018.05.21(2일)	2018.06.11.(19일 초과)
		2018.05.26.~05.27., 2018.06.02.~06.03.(4일)	2018.06.11.(6일 초과)
		2018.07.12.~13.(2일)	2018.07.30.(16일 초과)
		2019.11.29.	2019.12.24.(23일 초과)
		2019.12.17.	2019.12.24.(5일 초과)
2	○○○ (8건)	2018.07.18.~21.(4일)	2018.07.31.(8일 초과)
		2018.07.22.~25.(4일)	2018.07.31.(4일 초과)
3	○○○ (3건)	2019.07.10.	2019.07.18.(6일 초과)
		2019.09.07.	2019.10.24.(44일 초과)
		2019.09.19.	2019.10.24.(35일 초과)
4	○○○ (5건)	2019.07.22.	2019.08.01.(8일 초과)
		2019.10.25.	2019.10.31.(4일 초과)
		2020.03.03.	2020.03.14.(9일 초과)
		2020.03.06.	2020.03.14.(6일 초과)
		2020.03.05.	2020.03.14.(7일 초과)
5	○○○(1건)	2019.07.26.	2019.08.01.(4일 초과)
6	○○○(1건)	2021.06.01.	2021.07.05.(24일 초과)

자료 : 도립대학교 제출자료 재구성

4. 연구년제 교원 관리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연구년제 운영규정」 제2조에 따르면 연구년이란 연수학기와 산업체 연수학기를 포함하며 연구년교원(이하 “연구교원”이라 한다)이라 함은 본교에서 7년 이상 근무한 교원으로서 이 규정 제10조의 위원회에서 선정된 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되어 있다.

또한 「연구년제 운영규정」 제4조에 따르면 연구년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연구년 교원 신청서, [별표 2]의 연구계획서, [별표 3]의 연구년 교환서약서를 구비하여 교무기획처장에게 매년 11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

어 있다.

그리고 「연구년제 운영규정」 제8조 제5항에 따르면 연구 종료된 교원은 종료된 다음날로부터 30일 이내 결과보고서 [별표 5]의 연구년 결과보고서와 논문, 저서, 보고서를 별첨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6항에 따르면 제5항에도 불구하고 결과보고서 미제출 교원은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지급 시 연구영역 해당항목의 평가에 반영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도립대학교는 「연구년제 운영규정」 등 관련 규정 따라 연구교원으로 선정된 교원에 대하여 연구 종료된 다음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받고, 그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교원업적평가를 통해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지급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도립대학교(교무기획처)는 2000. 00. 00. ㅇㅇㅇㅇㅇ과 ㅇㅇ ㅇㅇ으로부터 논문 및 저술분야 연구 목적으로 연구년제를 신청[4]받고 2000. 0. 0.부터 2000. 0. 00.까지 연구년제 대상 교원으로 승인하여 통보[5]하였으며, 연구년제가 종료된 이후 2000. 0. 0. ㅇㅇ ㅇㅇ으로부터 ‘ㅇㅇㅇㅇㅇ ㅇ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이라는 논문을 도립대학교논문집 또는 학술지 수록할 예정이라는 내용으로 결과보고서를 제출[6]받고도, 2000. 0. 0. 제출받은 결과보고서와 다르게 2022. 10. 5. 감사일 현재까지 도립대학교 논문집 또는 학술지에 수록하지 않고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관계기관 의견 전남도립대학교는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

4) 도립대학교 ㅇㅇㅇㅇ과-000(2000.00.00.), 2000년 ㅇㅇㅇㅇㅇㅇ ㅇㅇㅇ ㅇㅇ

5) 도립대학교 ㅇㅇㅇㅇ처-0000(2000.00.00.), 2000학년도 ㅇㅇ ㅇㅇㅇㅇ ㅇㅇㅇ ㅇㅇ ㅇㅇ ㅇㅇ

6) 도립대학교 ㅇㅇㅇㅇ과-000(2000.0.0.), 2000학년도 ㅇㅇㅇㅇ ㅇㅇㅇㅇ ㅇㅇㅇㅇㅇ ㅇㅇ

조치할 사항　　**전남도립대학교 총장**은 겸직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한 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겸직 허가 후 겸직기관으로부터 받은 보수를 미보고한 ㅇㅇ ㅇㅇㅇ, 외부강의등 신고를 지연한 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연구년제 결과보고서에 제출된 논문을 논문집 등에 미수록한 ㅇㅇㅇㅇ에게 “주의”처분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전 라 남 도

경고요구·통보

제 목 ㅇ ㅇㅇ 병행사업 성과평가 업무처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전남도립대학교 산학협력단

경 고 대 상 자 ① 전남도립대학교 ㅇㅇㅇㅇㅇㅇ과 ㅇㅇ ㅇㅇㅇ

② 전남도립대학교 ㅇㅇㅇㅇㅇㅇ과 ㅇㅇ ㅇㅇㅇ

내 용

1. 업무개요

전남도립대학교(이하 “도립대학교”라고 한다) 산학협력단은 2021. 6월부터 7월까지 ㅇ ㅇㅇㅇㅇㅇ ㅇㅇㅇㅇㅇㅇ ㅇㅇㅇㅇ 등에 대하여 성과평가를 하여 [표 1] “성과급 지급현황”과 같이 ㅇㅇㅇ ㅇㅇ 등 15명에게 총 95,000천원의 성과급을 지급하였다.

[표 1] 성과급 지급 현황

(단위 : 천원)

사업명	대상자	직 책	평가등급	지급액	사업명	대상자	직 책	평가등급	지급액
계		17명		95,000	소계		9명		44,000
ㅇㅇㅇㅇ 사업[7]	소계	8명		51,000	ㅇㅇㅇㅇㅇㅇ 단계	ㅇㅇㅇ	사업단장	A+	00,000
	ㅇㅇㅇ	사업단장	S	00,000		ㅇㅇㅇ	총괄책임교수	A+	00,000
	ㅇㅇㅇ	총괄책임교수	S	00,000		ㅇㅇㅇ	초빙교수	C+	0,000
	ㅇㅇㅇ	초빙교수	C	0,000		ㅇㅇㅇ	겸임교수	C+	0,000
	ㅇㅇㅇ	겸임교수	C	0,000		ㅇㅇㅇ	참여조교	D+	0,000
	ㅇㅇㅇ	참여조교	D	0,000		ㅇㅇㅇ	책임연구원	D+	0,000
	ㅇㅇㅇ	책임연구원	C	0,000		ㅇㅇㅇ	연구원	D+	0,000
	ㅇ ㅇ	연구원	D	0,000		ㅇㅇㅇ	연구원	D+	0,000
	ㅇㅇㅇ	연구원	D	0,000		ㅇㅇㅇ	연구원	D+	0,000

자료 : 도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제출자료 재구성

7) ㅇㅇㅇㅇ부에서 지원하는 취업보장형 ㅇㅇ·ㅇㅇㅇ 통합교육 육성사업

○○ ○○○은 2000. 0월부터 2022. 10. 5. 감사일 현재까지 ○ ○○ ○○○○을 추진하면서 ○○○○ ○○ 관련 ○○○○회 ○○○과 ○○○○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 ○○○은 2000. 0월부터 2022. 10. 5. 감사일 현재까지 ○ ○○ ○○○○을 추진하면서 ○○○○ 사업 관련 ○○○○○ ○○이면서 총괄 ○○○○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전라남도 공무원 행동강령[8]」(이하 “공무원 행동강령”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공무원은 공무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학연, 지연, 종교, 직연[9]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등은 도지사에게 해당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제2항에 따르면 직무관련자 또는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공무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직무 참여의 일시중지,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직무 재배정, 전보 등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제5항에 따르면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나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따른 신고나 직무 참여의 일시중지,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직무 재배정, 전보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고, 제6항에 따르면 제5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확인·점검하도록 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대체하기 지극히 어려운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 경제발전 등 공익 증진을 이유로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공무원 행동강령」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알선·청탁, 금품 등의 수수,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등에 대하여 행동강령 위반여부가 분명

8) 전라남도 공무원 행동강령[전라남도 규칙 제3221호, 2020. 6. 4. 시행]
9) 직장 인연

하지 아니한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인 전라남도 감사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공무원 행동강령」제11조에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

또한 ○ ○○ ○○○○ 관련 성과급을 지급하기 위하여 평가를 할 때에는 사전에 평가대상자로부터 평가 관련 자료를 제출받은 후 평가를 진행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가 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고 바람직하다.

따라서 도립대학교 산학협력단은 ○ ○○○○○ ○○○○ 관련 전담인력 성과급을 지급을 위한 성과평가를 하는 경우 본인을 포함한 직연 등의 관계일 경우 평가 시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직무 재배치 등의 조치를 받아야 하며 행동강령 위반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전라남도 감사관)과 상담하여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평가자는 평가대상자로부터 평가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가 되도록 하여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1) ○○·○○○ ○○ ○○사업(○○○○) 분야 성과평가 업무처리 부적정

한편 도립대학교 산학협력단은 2021. 7월경 OFF-JT(현장 외 훈련) 훈련비 지급계획(안)을 ○○○ ○○장과 ○○○ ○○ 등이 각각 결재[10]하여 총장 결재를 받고, 성과평가를 하면서 성과평가 기준에 평가자는 ○○○[11]과 ○○○[12] ○○로 지정하였다.

그런데 도립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위 계획에 따라 성과평가자로 지정받은 ○○○과 ○○○은 [표 2] “평가자와 평가대상자 및 성과급 지급 현황”과 같이 평가 대상자인 본인들을 포함한 참여 교원 및 전담자 등 총 8명으로 본인이 평가

10) 문서등록일과 문서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음
○○자 : ○○, ○○○장 : ○○○, ○○○○○○장 : ○○○, ○○○○○장 : ○○○, ○○ : ○○○
11) ○○○ ○○○○ ○○○○○○장 이면서 ○○○○회 ○○○으로 평가자
12) ○○○ ○○○○ ○○○○자(○○○○)이면서 평가자(입회자)

자이면서 동시에 평가대상자인데도 도지사에게 신고하여 직무 재배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데도 상담 조치를 하지 않고 평가자가 본인을 부적정하게 성과평가하여 “S” 등급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지급받았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표 2] 평가자와 평가대상자 및 성과급 지급 현황

(단위 : 천원)

평가가와 평가대상			평가대상자 직책	평가등급	지급액	부적정 사항
평가자	평가대상	관계				
계			8명		51,000	
○○○ (평가자)	○○○	본인	사업단장	S	00,000	본인이 본인을 평가
	○○○	〃	총괄책임교수	S	00,000	본인이 본인을 평가
	○○○	직연관계	초빙교수	C	0,000	평가자와 직연관계
	○○○	〃	겸임교수	C	0,000	〃
	○○○	〃	참여조교	D	0,000	〃
○○○ (입회자)	○○○	〃	책임연구원	D	0,000	〃
	○ ○	〃	연구원	D	0,000	〃
	○○○	〃	연구원	D	0,000	〃

자료 : 도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평가자인 ○○○과 ○○○은 평가대상자 총 8명을 평가하면서 본인들을 제외한 6명에게 평가를 위한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지 않았고 본인이 관련 업무를 잘 안다는 사유 등으로 관련 시스템 등을 참고하여 임의로 부적정하게 평가하여 “C”에서 “D” 등급으로 성과평가를 하였다.

그로 인하여 본인이 본인을 평가하는 등 성과평가가 공정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2) ○○○ ○○○○ ○○○ ○○○ ○○ ○○ 성과평가 업무처리 부적정

한편 도립대학교 산학협력단은 2021. 7. 30.(공동훈련센터-000호) ○○○ ○○○○○ ○○○○○○ OFF-JT(현장 외 훈련) ○○○ 지급계획(안)을 ○○○ ○○장과 ○○○ ○○ 등이 각각 결재[13]하여 ○○ 결재를 받고, 성과평가를 하면서 성과평가 기준에 평가자를 ○○○[14], ○○○[15], ○○○[16]○○, ○○○[17]○○로 지정하였다.

13) ○○○ : ○○, ○○○장 : ○○○, ○○○○○○장 : ○○○, ○○○○○장 : ○○○, ○○ : ○○○
14) ○○○○○○○○○ 대표이사 ○○○○회 위원
15) ○○○○○ 대표이면서 ○○○○회 위원
16) ○○○ ○○○○ ○○○○○○장 이면서 ○○○○회 위원장으로 평가자
17) ○○○ ○○○○ ○○○○자○○○장) 이면서 평가자(입회자)

그런데 도립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위 사업의 성과 평가자로 지정받은 ○○○과 ○○○은 본 사업 운영위원회 위원이고 평가대상자인 ○○○과 ○○○과는 같은 위원회 동료관계이므로 [표 3] “평가자와 평가대상자 및 성과급 지급 현황”과 같이 직무관련성이 있어 도지사에게 신고하여 직무 재배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데도 상담 조치를 하지 않고 부적정하게 성과평가하여 “A+”등급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지급받았다.

또한 성과평가자료 지정받은 ○○○과 ○○○은 ○○○ 등 평가대상자 7명과는 직연관계인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부적정하게 성과평가를 하였다.

[표 3] 평가자와 평가대상자 및 성과급 지급 현황

(단위 : 천원)

평가가와 평가대상			평가대상자 직책	평가 등급	지급액	부적정 사항
평가자	평가대상	관계				
계			9명		44,000	
○○○[18]	○○○	운영위원회 단장과 위원 관계	사업단장	A+	00,000	운영위원회 위원이 위원장인 사업단장 평가
○○○	○○○	운영위원회 위원과 위원 관계	총괄책임교수	A+	00,000	운영위원회 위원이 동료 직원 평가
○○○ (평가자)	○○○	직연관계	초빙교수	C+	0,000	평가자와 직연관계 운영위원회 위원
	○○○	〃	겸임교수	C+	0,000	평가자와 직연관계
	○○○	〃	참여조교	D+	0,000	〃
○○○ (입회자)	○○○	〃	책임연구원	D+	0,000	〃
	○○○	〃	연구원	D+	0,000	〃
	○○○	〃	연구원	D+	0,000	〃
	○○○	〃	연구원	D+	0,000	〃

자료 : 도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평가자 ○○○, ○○○에게 평가대상자인 ○○○, ○○○에게 평가를 위한 증빙자료를 제출받지도 않았고, 평가자 ○○○, ○○○은 평가대상자 ○○○ 등 7명에게 평가를 위한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지 않았으며 서면회의[19]를 통해 부적정하게 임의판단하여 “C+”부터 “D+”등급으로 성과평가하였다.

그로 인하여 본인이 본인을 평가하는 등 성과평가가 공정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18) ○○○(○○○○○○○○○○대표), ○○○(○○○○○ 대표)
19) 코로나로 인한 대면 회의가 어렵다는 사유 등으로 서면회의를 개최함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도립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위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성과평가 시에 「전라남도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 등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해 도지사에게 신고 또는 전라남도 행동강령 책임관에게 상담하지 못하여 일어난 일로 관련 규정에 따른 정당한 업무 추진이었다고 주장하나,

그 당시 「전라남도 공무원 행동강령」 제3조와 제5조에 이 규칙의 적용범위에 도립대학교가 포함되어 있는 점, 공무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와 학연, 지연, 종교, 직연 등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서면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점,

그리고 같은 규칙 제34조와 제35조에는 그 당시 도립대학교의 행동강령 책임관은 전라남도 감사관으로 지정되어 있고, 행동강령 위반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조치할 사항 **전남도립대학교 산학협력단장**은

① 「전라남도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하여 ㅇ ㅇㅇ ㅇㅇㅇㅇ ㅇㅇ ㅇㅇㅇㅇ ㅇㅇ 및 ㅇㅇㅇ ㅇㅇㅇ ㅇㅇ ㅇㅇㅇㅇ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ㅇㅇ ㅇㅇㅇ, ㅇㅇ ㅇㅇㅇ을 경고하시고,(**경고**)

② 앞으로 성과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공무원 성과평가 기준」 등을 참고하여 합리적인 성과평가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통보**)

전 라 남 도
주 의 요 구

제　　목　ㅇㅇ실습실 구축공사 계약 업무처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전남도립대학교 산학협력단

내　　용

1. 업무개요

전남도립대학교(이하 “도립대학교”라고 한다) 산학협력단은 도립대학교 ㅇㅇㅇㅇㅇㅇ과 항공실습실 구축을 목적으로 ‘2019년 전남도립대학교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환경개선사업 ㅇㅇㅇㅇㅇㅇㅇ과 ㅇㅇ실습실 구축공사(이하 “ㅇㅇ실습실 구축공사”라고 한다)’을 2000. 0. 00. ㈜ㅇㅇㅇㅇ(ㅇㅇ 소재, 대표 ㅇㅇㅇ)와 203,880천원에 1인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2000. 0. 00.[20]에 완료하였다.

2. 전기 및 소방공사 무자격업체 설계 용역

1)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하였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와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전기공사업법」 제11조에 따르면 전기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제4조 제1항에 따라 소

20) 사업기간 : 2000. 0. 00.~2000. 0. 00.

방시설설계업을 등록한 자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과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소방시설을 설계하도록 되어 있다.

행정안전부「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별표 11]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편에 따르면 시설부대비는 기준요율에 의한 예산편성 범위 내에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고, 5. 시설부대경비(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에 3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건축부문 요율은 4.84%, 전기 4.38%, 소방 8.38%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도립대학교 산학렵력단은 2000. 00. 0. ○○실습실 구축공사 설계용역에 대하여 전기·소방공사를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로 하여금 설계용역을 하도록 분리 발주하여야 하고, 기준요율에 따라 설계 용역비를 산정하여 계약하도록 하여야 했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도립대학교 산학협력단은 2000 00. 0. ○○실습실 구축공사에 대한 설계용역을 발주면서 관련 규정에 따라 전기·소방공사는 분리 발주하여야 하는데도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21]에게 전기·소방공사를 포함하여 계약한 후 2000. 00. 00. 일괄 납품받아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였다.

또한 위 공사에 대한 설계를 발주하면서 [표 1] “설계용역비 산출 현황”과 같이 용역에 대한 단가를 산정한 후 설계를 발주하여야 하는데도 설계 용역비를 산정하지 않은 채 ㈜○○○○○로부터 4,500천원에 설계용역을 납품받았다.

[표 1] 설계용역비 산출현황

(단위 : 천원)

구분	당초 산출내역(A)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른 용역비 산출내역(B)		차이(A-B)
		금액	산출내역	
계	4,500	37,771		33,271
건축부문	4,500	10,387	추정금액 214,614 × 요율 4.84%	
전기부문		9,400	추정금액 214,614 × 요율 4.38%	
소방부문		17,984	추정금액 214,614 × 요율 8.38%	

제출 : 도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제출자료 재구성

21) 이번 감사 기간(2022. 9. 27.~2022. 10. 5.)동안 ㈜○○○○○를 선정한 경위를 확인한 결과 ○○○○○장(○○○○○)으로부터 해당 업체를 추천받았다고 진술

3. 과도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으로 계약체결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9조 제2항에 따라 재공고입찰을 할 때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조 제6항에 따르면 추정가격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에 따라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공사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는 100억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는 10억원으로 되어 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하 “계약 집행기준”이라 한다) 11장 입찰유의서 15. 재입찰과 재공고입찰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고, 재공고입찰 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또한 「계약 집행기준」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제2절 제한입찰의 범위와 구분에 따르면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종합공사 또는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전문공사, 전기·그 밖의 공사는 지역제한을 할 수 있고, <별표1> 특수한 기술·공법이 요구되는 추정가격 3억원 이상 전문·그 밖의 공사의 경우 해당 계약 목적물과 동일한 종류의 실적으로 제한할 수 있고 해당 계약목적물의 규모 또는 양의 1/3이내 단, 계약목적물의 특성, 안전성, 난이도 등 고려 규모 또는 양의 1/3 이상 1배 범위에서 최소 실적기준을 정할 수 있고, 실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특

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검사가 완료된 최근 10년 이내 실적으로 제한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7. 계약담당자 주의사항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입찰 및 계약 시 규모(양)로 제한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도 공사·용역·물품 규모의 1/3을 초과[22]하거나, 금액으로 제한하는 경우 추정가격의 1배를 초과하여 제한하는 사례, 현장설명 참가자에 한하여 투찰이 가능하도록 제한하는 사례 등은 금지해야 할 사항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도립대학교 산학협력단은 특수한 기술·공법이 요구되는 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실적제한을 하여야 하고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전문공사는 지역제한(전라남도)을 하여야 하며 공고 후 유찰되어 재공고입찰을 할 때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과 동일한 조건으로 입찰에 부쳐야 하고, 계약담당자가 금지해야 할 사항을 준수하여 공고하여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도립대학교 산학협력단은 2000. 00. 00. 위 공사의 입찰 공고(전남도립대학교 산학협력단 공고 제2019-00호)를 하면서 <별표1> 특수한 기술·공법이 요구되는 공사에 해당되지 않아 실적제한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는데도 우수한 업체를 선정한다는 사유로 실적제한과 지역제한(전라남도)을 동시에 충족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하도록 하여 과도하게 입찰 참가를 제한하였고 유찰되었다.

또한 실적제한[23]을 하면서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검사가 완료된 최근 10년 이내 실적으로 제한하여야 하는데도 10년 이내가 아닌 1년 이내 3억원과 3년 이내 10억원으로 과도하게 제한하였고, 현장설명회에 참여한 업체에 한하여 입찰에 참여하도록 하여 부적정하게 계약 업무를 처리하였다.

그리고 1차 유찰된 후 2000. 0. 0. 위 공사에 대하여 재공고입찰을 할 때 1차 공고와 동일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는데도 규정을 위반하여 1차 공

22) 예시)추정가격 4억원의 물품구매시 납품실적 10억원 이상 보유자로 입찰참가자격을 과다 제한한 사례
23) ① 최근 1년 이내 단일건의 교육기관(초,중,고,대)의 ○○실습실 구축 관련 300백만원 이상 실적, ② 최근 3년 이내 ○○실습실 구축 관련 1,000백만원 이상 누적 실적이 있는 업체(①, ②번 모두 충족하여야 함)

고와 다르게 지역제한(전라남도)을 삭제하고 실적제한만 1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하여 재공고 입찰을 하였고 ㈜ㅇㅇㅇㅇ(ㅇㅇ 소재) 1개 업체만 입찰에 참가하여 유찰되었다.

더욱이 2회 유찰 사유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차 공고와 재공고 입찰의 입찰참가자격이 동일한 경우로 유찰된 경우에 해당되는데도 2차 유찰을 사유로 2000. 0. 00. ㈜ㅇㅇㅇㅇ와 1인견적 수의계약을 부적정하게 체결하였다.

이로 인하여 전남지역에 ㅇㅇㅇㅇ공사업 등록업체가 000여개 이상인데도 과도한 실적제한으로 전남지역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ㅇㅇㅇㅇ와 수의계약을 할 수 밖에 없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4.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 업무처리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계약법」 제16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을 적절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감독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하게 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조 제6항에 따르면 감독을 하는 자는 감독조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검사를 하는 자는 검사조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1. 검사 편에 따르면 계약상대자가 공사를 완성한 때에는 그 사실을 준공신고서 등 서면으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계약담당자는 준공신고서 등을 통지받은 때에는 계약서, 설계서, 준공신고서 등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와 입회 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해야 하

며,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도립대학교 산학협력단은 ㅇㅇ실습실 구축공사 추진 시 감독공무원과 준공검사공무원을 지정하여 설계서 등에 따라 철저하게 검사하게 하여야 하고, 위임받은 감독공무원과 준공검사공무원은 설계서 등 내용대로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확인하도록 하여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도립대학교 산학협력단은 2000. 0. 00. ㅇㅇ실습실 구축공사를 추진하면서 계약담당자가 감독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관을 지정하는 절차 없이 ㅇㅇㅇㅇㅇㅇ과(前 ㅇㅇㅇㅇㅇㅇㅇ과)ㅇㅇ ㅇㅇㅇ가 감독공무원 란에 날인하였고 작성된 감독조서도 없이 부적정하게 감독업무를 처리하였다.

또한 2000. 0. 00. 계약상대자로부터 준공계를 접수받고도 계약담담자가 준공검사공무원 지정을 하지 않지 않았고 준공검사도 실시하지도 않은 채 같은 해 2. 25. 대가를 지급하여 업무 처리를 부적정하게 하였다.

그로 인하여 2000. 2. 25. 공사 대가지급 이후 탑승의자와 등받이 등 하자가 발생되어 2020. 3월말까지 보수하는 등 감독 및 준공업무가 부적정하게 처리되었다.

관계기관 의견 전남도립대학교 산학협력단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전남도립대학교 산학협력단장**은 공사 등 각종 계약 업무를 추진할 시에는「지방계약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공고하고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며 감독·준공검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전 라 남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출장명령 없이 외부강의등 근무지 이탈

관계기관(부서) 전남도립대학교(교무기획처)

내 용

1. 업무개요

전남도립대학교(이하 “도립대학교”라고 한다) 소속 교원은 공무와 관련된 외부강의 등은 「전임교원복무규정」 등에 따라 사전에 출장명령을 득한 후 출장을 하고 있다.

2. 출장명령 없이 외부강의 등 무단 출장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전임교원복무규정」 제22조에 따르면 교원이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사전에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총장의 명[1]을 받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상사의 명에 따라 정규 근무지 외의 장소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해당 공무 수행을 위해 전력을 다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도립대학교는 소속 교원이 공무의 목적으로 외부강의 등 출장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총장의 결재를 득한 후에 출장을 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1) 연·병가, 공가, 출장 등 허가 결재권자는 보직교수와 사무국장의 경우 총장으로 되어 있고, 전임교원의 경우 교무기획처장으로 되어있으며, 6급 이하 공무원 및 조교의 경우 각 소관 실국장으로 되어 있음

그런데 도립대학교(교무기획처)는 소속 교원이 공무의 목적으로 외부강의 등 출장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총장의 결재를 득한 후에 출장을 하도록 하여야 하는데도 2021. 4. 25.부터 2022. 8. 30.까지 [표] “출장명령 없이 외부강의 등 부적정 현황”과 같이 ○○○ ○○ 등 11명이 기간 중 66차례에 걸쳐 외부강의 등을 하면서 개인별로 적게는 1차례부터 많게는 31차례에 걸쳐 사전에 출장명령을 득하지 않은 채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하였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표] 출장명령 없이 외부강의 등 부적정 현황(2021. 4. 25. ~ 2022. 8. 30[2])

일련번호	직위	서명	외부강의 등 출장 건수	사전 출장명령 결재여부
계		11명	66	×
1	○○	○○○	1	×
2	〃	○○○	1	×
3	〃	○○○	4	×
4	〃	○○○	1	×
5	〃	○○○	15	×
6	〃	○○○	31	×
7	〃	○○○	1	×
8	〃	○ ○	1	×
9	〃	○○○	1	×
10	〃	○○○	9	×
11	〃	○○○	1	×

자료 : 도립대학교 제출자료 재구성

그로 인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출장명령을 받지 않고 근무지를 이탈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전남도립대학교는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전남도립대학교 총장**은 앞으로 전임교원이 공무와 관련한 외부강의 등 목적으로 출장을 하게 되는 경우 사전에 출장 명령을 득한 후 출장을 하도록 하여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2) 2021. 4. 25. 복무관리시스템이 개편(학사행정시스템 → 대학홈페이지 복무관리시스템)되어 기존 시스템으로는 출장 확인이 불가

[별표] 생 략

전 라 남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연구사업 회의비 및 연구수당 지급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전남도립대학교 산학협력단

내　　용

1. 업무개요

전남도립대학교(이하 “도립대학교”라고 한다) 산학협력단은 2019. 1월부터 2022. 9월까지 2000년도 ○○○○○○○○ ○○○○ ○○○○ ○○사업을 추진하면서 회의비를 지급하였고 2000. 0. 0.부터 같은 해 00. 00.까지 ○○○○○ ○○○○○ ○○○○○○○ ○○사업을 추진하면서 참여연구원에게 연구수당을 지급하였다.

2. 연구사업 회의비 지급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 ○○○○ ○○ ○○ ○○지침」 제14조의1에 따르면 외부기관(인사) 참석 없이 내부직원만 참여하는 경우 회의 관련 비용을 지급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도립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소속 내부직원만 참여하는 회의에 대하여는 회의에 수반되는 비용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도립대학교 산학협력단은 2000년도 ○○○○○○○○ ○○○○ ○○○○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2000. 0. 0.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총 5차례에 걸쳐

회의를 추진하면서 내부직원만 참석하게 되어 회의비를 지급할 수 없는데도 [표 1] “회의비 부적정 지급 현황” 및 [별표] “ㅇㅇㅇㅇㅇㅇㅇㅇ ㅇㅇㅇㅇ ㅇㅇㅇㅇ ㅇㅇ사업 회의록 스캔 명세”와 같이 총 5차례에 걸쳐 회의록에 ㅇㅇㅇ ㅇ ㅇ ㅇ ㅇㅇㅇ 등 외부기관 2명이 참석한 것처럼 회의비 지급요건을 충족시킨 후에 식대 622천원을 부적정하게 지급하였다.

[표 1] 회의비 부적정 지급 현황

(단위 : 천원)

회의일(장소)	회의록 회의참석자			외부기관 참석자 2명 서명 건 날짜별 필체 상이 여부	식대 지급액	비고
	계	내부	외부			
5건					622	
2000.00.00. (2학관 0000호)	4	2[1]	2[2]	○	90	
2000.00.00. (2학관 0000호)	6	4[3]	2[4]	○	161	
2000.00.00. (2학관 0000호)	6	4[5]	2[6]	○	152	
2000.00.00. (2학관 0000호)	3	1[7]	2[8]	○	50	
2000.00.00. (2학관 0000호)	6	4[9]	2[10]	○	169	

자료 : 도립대학교 제출자료 재구성

3. 연구수당 지급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6조 제5항에 따르면 참여연구자가 2명 이상인 경우 1인의 참여연구자에게 연구수당 총액의 70%를 초과하여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또한 「정부연구개발비 사용 Q&A 사례집」 2. 6.(연구수당)에 따르면 정산기간은 총 연구기간 또는 단계연구기간으로 3년에 걸친 단계연구기간의 과제인 경우 1년차에 2명, 2년과 3년차에 각 1명이 참여했더라도 결과적으로 1~3년차

1) 연구책임자 도립대학교 ㅇㅇ ㅇㅇㅇ, 연구보조원 ㅇㅇㅇ
2) (유)ㅇㅇ 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 ㅇㅇ ㅇㅇㅇ
3) 연구책임자 도립대학교 ㅇㅇ ㅇㅇㅇ, ㅇㅇ ㅇㅇㅇ, ㅇㅇㅇ, 연구보조원 ㅇㅇㅇ
4) (유)ㅇㅇ 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 ㅇㅇ ㅇㅇㅇ
5) 연구책임자 도립대학교 ㅇㅇ ㅇㅇㅇ, ㅇㅇ ㅇㅇㅇ, ㅇㅇ ㅇㅇㅇ, 연구보조원 ㅇㅇㅇ
6) (유)ㅇㅇ 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 ㅇㅇ ㅇㅇㅇ
7) 연구책임자 도립대학교 ㅇㅇ ㅇㅇㅇ
8) (유)ㅇㅇ 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 ㅇㅇ ㅇㅇㅇ
9) 연구책임자 도립대학교 ㅇㅇ ㅇㅇㅇ, ㅇㅇ ㅇㅇㅇ, ㅇㅇ ㅇㅇㅇ, 연구보조원 ㅇㅇㅇ
10) (유)ㅇㅇ 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 ㅇㅇ ㅇㅇㅇ

에 2명이상이 참여하게 되는 것이므로 참여 연구원 1명에게 연구수당 총액의 70%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도립대학교 산학협력단은 과제책임자와 공동연구원 각 1명씩 2명이 연구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동연구원 1명이 중도에 그만두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책임연구자 1인에게는 연구수당 총액의 70%를 초과하여 연구수당을 지급하지 않아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한편 도립대학교 산학협력단은 2000. 0. 0.부터 ○○○○○ ○○○○○ ○○○○○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2000. 0. 0. 과제책임자 ○○○○○○○과 ○○ ○○○(이하 “과제책임자”라 한다)에게 2,647천원을 지급하고 공동연구원 ○○○에게는 294천원을 지급하였고 같은 해 6월경(정확한 날짜는 알 수 없음) 공동연구원 ○○○이 그만두자 과제책임자 1인에게 2000. 00. 0. 연구수당 2,341천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도립대학교 산학협력단은 과제책임자에게 연구수당을 지급할 시에는 총액의 7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데도 [표 2] “연구수당 부적정 지급 현황”과 같이 ○○○○○○○과 ○○ ○○○에게 연구수당 총액 6,282천원의 70%에 해당하는 4,397천원에서 591천원이 초과된 4,988천원을 지급하였다.

[표 2] 연구수당 부적정 지급 현황

(단위 : 천원)

대상자		지급일	지급액(A)	1인 연구수당 총액(B)	과다 지급액 (B-A)	비고
직급	성명					
과제책임자	○○○	합계	4,988	4,397[11]	591	
		2000.00.00.	2,647			
		2000.00.00.	2,341			

자료 : 도립대학교 제출자료 재구성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11) 공동연구원 중도 퇴사로 인한 1인 연구수당으로 연구수당 6,282천원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전남도립대학교 산학협력단은 해당 연구개발사업이 적용 받는「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에 따르면 1인에게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최대 지급률이 90%여서 총 연구수당 중 70%를 조금 상회하여 연구수당 지급한 것이 부적정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한국연구재단에서 발간한「정부연구개발비 사용 Q&A 사례집」의 내용(1인에게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최대지급률은 총 연구수당의 70%까지)으로 지적한 것은 무리가 있다고 의견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피감사자가 의견한 내용을 살펴보면 해당 연구개발사업이 적용 받는「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제1장 1. 목적에서는「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제48조에 따라 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평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 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조에 따르면「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12)]」에 의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 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2-30호로 2022. 4. 26. 개정)」제1조에 따르면「국가연구개발혁신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확인서에 지적된 연구개발사업의 경우「국가연구개발혁신법」및 같은 법 시행령과「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2021.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적용을 받게 되며,

위 매뉴얼(179쪽)에 따르면 참여연구자가 2인 이상이었으나, 연구개발기간 중 중도 퇴직 등이 발생한 경우더라도 1인에게 총 연구수당의 70%이상을 지급할 수 없도록 하고 있도록 되어 있다.

12)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제정(법률 제17343호, 2020. 6. 9. 공포, 2021. 1. 1. 시행)됨에 따라 2021. 1. 1. 폐지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할 시 1인에게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최대 지급률은 90%이기 때문에 총 연구수당 중 70%를 조금 상회하여 연구수당을 지급한 것이 부적정하지 않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조치할 사항 **전남도립대학교 산학협력단장**은 앞으로 연구사업 관련 회의비를 부당하게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연구수당을 관련 기준에 맞게 지급하는 등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별표] 생　략

전 라 남 도

개 선 요 구

제　　목　자격증 취득자에 대한 장학금 지급 업무 처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전남도립대학교(입학학생처)

내　　용

1. 업무개요

전남도립대학교(이하 “도립대학교”라고 한다)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재학 중인 학생이 자격증을 취득할 경우 1등급 30만원, 2등급 20만원, 3등급 10만원의 기준을 정하여 [표 1] “자격취득에 따른 장학금 지급 현황”과 같이 총 647명에게 약 141백만원의 자격취득 장학금을 지급하였다.

[표 1] 자격취득에 따른 장학금 지급 현황

(단위 : 명, 천원)

지급시기	지급인원	지급액	지급시기	지급인원	지급액
총 계	657	141,500	2020년 2학기	176	36,800
2019년 1학기	91	16,200	2021년 1학기	62	15,400
2019년 2학기	112	22,700	2021년 2학기	89	20,900
2020년 1학기	56	12,300	2022년 1학기	71	17,200

자료 : 도립대학교 제출자료 재구성

2. 관계법령(판단기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학교 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 장학금지급 등 학생에 대한 재정보조에 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장학금지급규정」 제11조 및 같은 규정 [별표 2]에 따르면 자격취득에 따른 장학금 지급기준은 장학위원회에서 지정한 자격증 취득자이며 지급금액은

장학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2022. 9. 26.부터 10. 5.까지 도립대학교 추가 감사기간 동안 전국 ○○○○교의 자격증 취득 장학금 지급기준을 살펴본 바 [표 2] “○ ○○○○○교 자격증 취득 장학금 지급기준 현황”과 같이 ○○○○○○○교 등 4개 ○○○○○교는 자격증 취득 장학금 지급기준을 학칙에 기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표 2] ○ ○○○○○교 자격증 취득 장학금 지급기준 현황

대학명	학칙에 명시된 자격증 취득 장학금 지급기준	비 고
○○○○○○○교	전공관련 자격취득, 어학점수 우수자 등	
○○○○○○○○학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 [별표 2]에 해당하는 자격증 중 기술·기능분야 산업기사 이상 또는 서비스 분야 1급 취득 시 단, 전산회계운용사는 2급 이상 취득 시	
○○○○○○○○학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 [별표 2]에 해당하는 전공관련 자격증 중 기술·기능분야 산업기사 이상 또는 서비스 분야 1급 취득시	
○○○○○○○교	자격증 취득자 및 외국어 능력 우수자, 전국규모대회 입상자 등 (연 4개로 제한)	대학 홈페이지에 자격증의 종류 세부기준 안내

자료 : ○ ○○○○교 홈페이지 게시자료 재구성

따라서 도립대학교는 「고등교육법」 규정 및 타 도립대학교의 장학금 지급기준을 참고하여 「장학금지급규정」에 자격취득 장학금 지급기준이 되는 자격증의 종류를 정하여 자격증 취득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도립대학교(입학학생처)는 2019년부터 2022. 6월까지 자격취득 장학금 지급시마다 장학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자료에 자격취득 기준을 ① 1등급 산업기사에 준하는 국가공인자격증, ② 2등급 기능사에 준하는 국가공인자격증, ③ 3등급 위원회 결정이라는 기준만을 정한 채 취득자격증의 전공관련 여부, 국가공인자격증 및 위원회에서 결정하여야 할 자격증의 종류 및 기준을 정하지 않고 모든 자격증에 대하여 자격취득 장학금을 지급하였다.

또한 ○○○ ○○○○○ 1급, ○○○○○○○ 등 민간자격증을 취득한 학생이 자격취득 장학금을 신청하기만 하면 학업과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자격증을 취득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각 자격증에 대하여 장학금 10만원씩을 지급하였다.

그로 인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없이 장학위원회의 판단만으로 자격증 취득 장학금을 지급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전남도립대학교는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전남도립대학교 총장**은 「장학금지급규정」 제11조에 자격증의 종류 및 등급 등 자격증 취득에 따른 장학금의 지급 기준을 명시하도록 개정하시기 바랍니다.**(제도상 개선)**